

발간등록번호  
중앙회-2017-11

# 학교안전 중대사고 사례 연구집



학교안전공제중앙회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 연구진

- 책임연구원** 표석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예방사업팀장)
- 연구원** 이희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예방사업팀 대리)
- 자문위원** 김효철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농업인안전보건팀 농업연구사)  
(가나다순) 박상근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사무관)  
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팀장)  
양형모 (충주공업고등학교 교사)  
유병열 (서울교육대학교 도덕교육과 교수)  
이윤성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교수)  
임준규 (통계청 정책지표연구실 주무관)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팽주만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교육연구사)  
홍성남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 인 사 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1일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하여 최초로 법제화된 것으로,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각종 법령과 제도 및 정책이 마련되면서 이 법의 중요성과 함께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 사례 연구집은 법률 시행 이후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한 학교안전사고 중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사고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기술적(技術的).정량적(定量的) 통계 분석의 한계를 탈피하여, 심층적(深層的).정성적(定性的) 통계 분석을 실시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원인과 예방 대책 마련에 보다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조사 방법론으로 무과실책임주의에 기반한 학교안전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중대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사고 관련 정보를 기초로 그 원인과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이 연구가 학교에서 통지한 사고발생통지서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자료라는 부족한 자료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연구가 학교안전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시도된 새로운 도전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후속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부디 본 사례 연구집이 학교현장과 교육당국에 널리 전파되어 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과 함께 학교 관계자와 교육 당국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8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한창희



## 제1부 학교안전사고 조사 방법론

I. 학교안전사고 조사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	3
1. 로직트리 분석에 의한 원인 분석 .....	3
2. 학교안전시스템에 의한 원인 분석 .....	4
3. 로직트리 분석과 학교안전시스템 분석을 통한 예방정책의 제안 .....	5
II.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학교안전사고 원인분석과 예방모형이론 .....	5
1. 이론적 기초 .....	6
2.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	6
3. 무과실책임주의에 기반한 사고 발생 원인 모형 .....	7
4. 사고 발생 원인 모형 .....	8
5. 사고 예방 정책 모형 .....	10
6. 사례 연구집의 구성과 주요 내용 설명 .....	12

## 제2부 학교안전 중대사고 사례 분석

I. 안전기준 요인 .....	17
1. 병영체험활동으로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사망 (고등학교 2학년, 남) .....	18
2. 난간을 통해 교실로 들어가려다 추락하여 부상 (고등학교 2학년, 남) .....	19
II. 물적관리 요인 .....	21
1.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이마 및 손, 치아 부상 (초등학교 1학년, 여) .....	22
2.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 (초등학교 1학년, 남) .....	23
3. 등교 중 교통사고로 사망 (초등학교 1학년, 여) .....	24
4. 강당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 (초등학교 1학년, 여) .....	25
5.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 (초등학교 2학년, 여) .....	26



6. 강당 문에서 미끄러져 얼굴 부상 (초등학교 3학년, 남) .....	28
7. 실험 중 알코올램프가 넘어져 목과 가슴에 화상 (초등학교 4학년, 여) .....	29
8. 수련회에서 잠수놀이를 하던 중 부상 (초등학교 5학년, 남) .....	30
9. 체험활동으로 스키 타다 미끄러져 부상 (초등학교 6학년, 남) .....	31
10.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 (중학교 2학년, 남) .....	32
11. 낙마하여 머리 부상 (고등학교 1학년, 남) .....	33
12. 자전거로 하교하던 중 배수로에 빠져 비장파열 (고등학교 1학년, 남) .....	34
13. 등교 중 교통사고로 사망 및 부상 (고등학교 1학년, 여) .....	35
14. 창문에서 추락하여 뇌출혈 (고등학교 2학년, 여) .....	36
15.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부상 (고등학교 3학년, 남) .....	37
16. 난간에서 추락하여 부상 (고등학교 3학년, 남) .....	38
17.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고등학교 3학년, 남) .....	39
18. 창문에서 추락하여 부상 (고등학교 3학년, 남) .....	40
19. 학부모 명예교사가 나무의자 제작 중 눈 부상 (초등학교 학부모, 남) .....	41

### III. 인적관리 요인 .....43

1. 특별활동으로 물놀이를 하던 중 사망 (유치원, 여) .....	44
2. 체험학습으로 물놀이를 하던 중 사망 (초등학교 1학년, 남) .....	45
3. 방화벽셔터에 깔려 부상 (초등학교 2학년, 남) .....	46
4. 골프 시범 중 날아간 공에 맞아 부상 (초등학교 3학년, 남) .....	47
5. 천식으로 인한 의식불명 (초등학교 4학년, 남) .....	48
6. 실험 중 알코올 통이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사고 (중학교 1학년, 남) .....	49
7. 배드민턴을 치던 중 셔틀콕에 맞아 눈 부상 (중학교 1학년, 남) .....	50
8. 양궁 훈련 중 화살에 맞아 눈 부상 (중학교 1학년, 여) .....	51
9. 야구 방망이에 맞아 입술 열상 및 치아파절 (중학교 2학년, 여) .....	52
10. 복싱 타격훈련 중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중학교 2학년, 남) .....	53
11. 시상식 중 폭죽에 맞아 눈 부상 (고등학교 2학년, 여) .....	54
12. 야구 놀이 중 안면 부상 (고등학교 2학년, 남) .....	55
13. 체험학습 중 도시락을 먹다가 사망 (특수학교(중) 2학년, 남) .....	56
14. 자전거를 타다 안면 부상 (특수학교 3학년, 여, 정신지체2급) .....	57

### IV. 교육훈련 요인 .....59

1. 이어달리기를 하다 사망 (초등학교 4학년, 남) .....	60
2. 뽕틀을 하다 넘어져 새끼손가락 부상 (초등학교 4학년, 남) .....	61

3. 단체줄넘기를 하던 중 넘어져 대퇴골 골절 (중학교 1학년, 남) .....	62
4. 장난 중 책에 맞아 왼쪽 눈 실명 (중학교 2학년, 남) .....	63
5. 양궁 훈련 중 꽂혀있는 화살에 부딪혀 눈 부상 (중학교 3학년, 남) .....	64
6. 육상훈련 중 넘어져 무릎 부상 (중학교 3학년, 남) .....	65
7. 유도경기 중 공격을 방어하다가 십자인대 파열 (고등학교 1학년, 남) .....	66
8. 방과 후 인공암벽 수업 중 추락하여 허리 부상 (고등학교 1학년, 남) .....	67
9. 배드민턴을 치던 중 갑작스런 무릎 통증 (고등학교 2학년, 남) .....	68
10. 뜨거운 기름으로 인한 부상 (고등학교 2학년, 여) .....	69
11. 축구공을 밟고 넘어져 새끼손가락 부상 (고등학교 2학년, 남) .....	70
12. 상대 선수와 부딪혀 무릎 십자인대 파열 (고등학교 3학년, 남) .....	71
13.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 부상 (고등학교 3학년, 여) .....	72
14. 말타기 놀이 중 넘어져 무릎 탈골 (고등학교 3학년, 여) .....	73
15. 럭비 경기 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무릎 부상 (고등학교 3학년, 남) .....	74
16. 태권도 훈련 중 넘어져 팔 부상 (고등학교 3학년, 남) .....	75
17. 배드민턴 라켓에 맞아 오른쪽 눈 실명 (고등학교 3학년, 여) .....	76
18. 팔씨름 시합 중 오른팔 골절 (고등학교 3학년, 여) .....	77

## V. 위험행위 요인 .....79

1. 학생 간 부딪혀 눈 부상 (초등학교 1학년, 남) .....	80
2. 하교 중 장난으로 눈 부상 (초등학교 3학년, 남) .....	81
3. 장난 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청각장애 (초등학교 3학년, 남) .....	82
4. 운동장에서 뛰어가다 넘어져 목이 찢리는 부상 (초등학교 3학년, 남) .....	83
5. 수업 중 학생 장난으로 눈 부상 (초등학교 5학년, 남) .....	84
6. 복도에서 뛰어가다 삼각자에 눈이 찢려 부상 (초등학교 5학년, 남) .....	85
7. 장난 중 넘어져 치아파절 (초등학교 5학년, 남) .....	86
8. 축구를 하던 중 넘어져 허리 부상 (초등학교 6학년, 남) .....	87
9. 동료 선수가 던진 부메랑에 맞아 눈 부상 (초등학교 6학년, 남) .....	88
10. 장난에 의해 날아온 돌에 맞아 눈 부상 (초등학교 6학년, 남) .....	89
11. 마루운동 중 매트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 (초등학교 6학년, 여) .....	90
12. 교탁 위의 유리가 깨져 발 부상 (중학교 1학년, 남) .....	91
13. 교실문 유리가 깨져 눈 부상 (중학교 1학년, 남) .....	92
14. 의자를 뛰어넘다 넘어져 비장 파열 (중학교 1학년, 남) .....	93
15. 버리려고 던진 다트 화살에 맞아 시력 장애 (중학교 1학년, 여) .....	94
16. 창문에서 추락하여 발목 골절 (중학교 2학년, 남) .....	95

17. 자전거를 타고 등교 중 넘어져 부상 (중학교 2학년, 남) .....	96
18. 복도 밖 난간에서 추락하여 두 다리 골절 (중학교 2학년, 남) .....	97
19. 열기구 실험 중 알코올 통이 폭발하여 화상 (중학교 2학년, 남) .....	98
20. 비막이용 슬레이트에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 (중학교 2학년, 남) ..	99
21. 창문 밖 발코니에서 추락하여 요추 골절 (중학교 2학년, 남) .....	100
22. 말타기 놀이 중 좌측 다리 골절 (중학교 3학년, 남) .....	103
23. 창문 밖 외벽을 걷다가 추락하여 부상 (중학교 3학년, 남) .....	104
24. 줄넘기를 하던 중 의식불명 (중학교 3학년, 여) .....	105
25.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 (중학교 3학년, 여) .....	106
26. 창문에서 추락하여 요추 골절 (고등학교 1학년, 남) .....	107
27. 난간에서 추락하여 부상 (고등학교 1학년, 남) .....	108
28. 야구를 하다 공에 맞아 왼쪽 눈 장애 (고등학교 1학년, 남) .....	109
29. 사이클 훈련 중 미끄러져 부상 (고등학교 1학년, 남) .....	110
30. 축구를 하다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와 연골 파열 (고등학교 1학년, 남) ..	111
31. 농구 경기 중 충돌로 인한 허리 부상 (고등학교 1학년, 남) .....	112
32.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다리 골절 (고등학교 1학년, 남) .....	113
33. 계단에서 넘어져 손 장애 (고등학교 1학년, 남) .....	115
34. 발코니에서 추락하여 척추 부상 (고등학교 1학년, 남) .....	116
35.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고등학교 1학년, 남) .....	117
36. 기왕증으로 인한 사망 (고등학교 1학년, 여) .....	118
37.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십자인대 부상 (고등학교 2학년, 여) .....	119
38. 학생 간 장난으로 발목 골절 (고등학교 2학년, 남) .....	120
39. 난간에서 떨어져 척추·발목 부상 (고등학교 2학년, 남) .....	121
40.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부상 (고등학교 2학년, 여) .....	122
41.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무릎 부상 (고등학교 2학년, 남) .....	123
42. 학생 간 다툼으로 비장 파열 (고등학교 2학년, 남) .....	124
43. 젓가락에 찔려 각막 부상 (고등학교 2학년, 남) .....	125
44. 졸업여행 중 난간에서 추락하여 요추 골절 (고등학교 3학년, 남) .....	126
45. 보건실 이동 중 발목골절 (고등학교 3학년, 남) .....	127
46. 교실 앞문에 부딪혀 전방십자인대 부상 (고등학교 3학년, 여) .....	128
47. 달리기를 하다 스탠드에 부딪혀 치아파절 (고등학교 3학년, 남) .....	129



제1부

학교안전사고 조사 방법론





## I

학교안전사고 조사방법에 관한 선행연구<sup>1)</sup>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은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부 연구<sup>2)</sup>를 통해 제안된 새로운 통계체계에 기초한 사고발생통계를 2012년부터 수집하여 왔다. 그러나 단순한 통계코드에 대한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 技術的 分析)과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 定量的 分析)만으로는 사고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한편 이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농작업재해 현황 및 원인통계의 구축 방안 연구”에서 도입된 농작업 재해의 분석기법인 로직트리기법과 농작업 안전시스템을 학교안전사고 원인분석에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적용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로직트리기법과 학교안전시스템은 심층적 분석(profound analysis, 深層的 分析)과 정성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 定性的 分析)에 기초한 학교안전사고 원인 분석의 시간적·공간적 분석 기법으로서 이번 사례집에서는 공간적 분석 기법인 학교안전시스템 요인 분석만을 적용하였다. 향후 예산과 인력의 확보를 통해 시스템 요인 분석 외에도 시간적 요인 분석 기법인 로직트리기법을 함께 활용하여 사고 사례집을 발간한다면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유익하고 내실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 1. 로직트리 분석에 의한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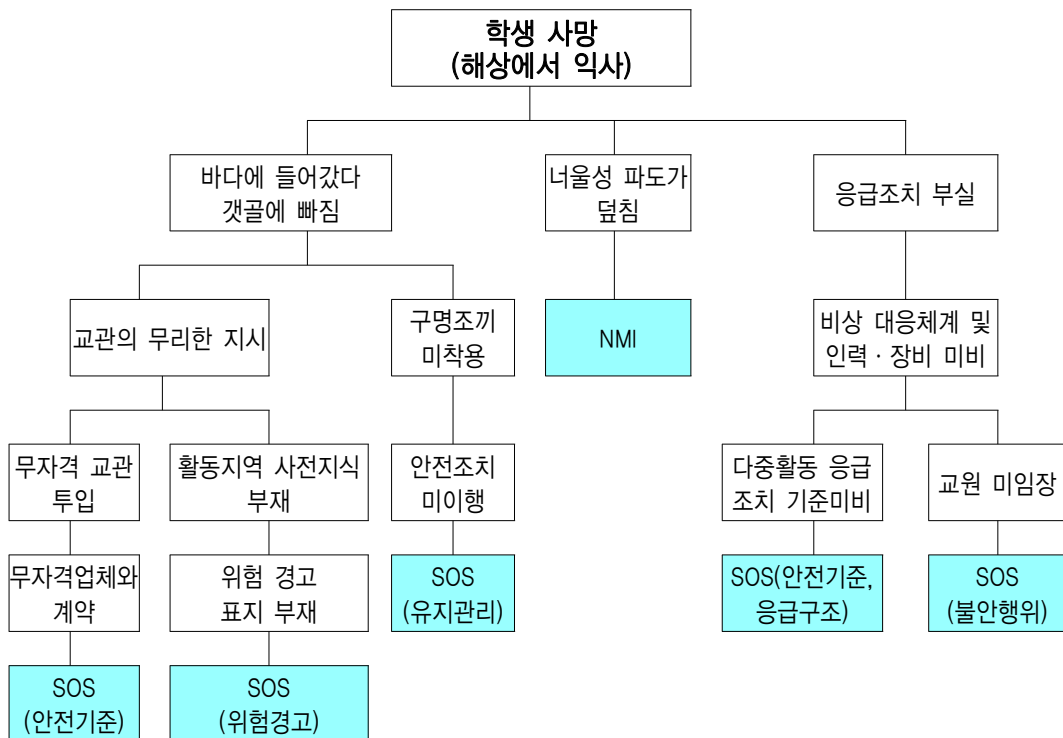
사고조사의 과정이 막막한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 분명한 도구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로직트리 분석법(logic tree analysis)이다. 로직트리란 발생한 사고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들을 거꾸로 추적하여 근본적 원인을 찾아나가는 기법이다. 로직트리의 장점은 논리적

1) 「학교안전사고 통계분석 및 예방정책 수립 방안 연구」 (남윤신 외, 2014,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 「학교안전사고 통계체계 개선 및 학교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양희산 외, 2010,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으로 사고하며, 다양한 사실들을 누락 없이 수렴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고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오류 나무 기법(fault tree analysis)이라고도 부른다.

로직트리를 이용한 사실 해병대캠프 익수사고 분석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학교 수련활동의 일환으로 사실 해병대 캠프업체에서 주관한 병영체험활동 중 발생한 익수사고는 무자격자와의 계약체결(안전기준),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표지 부재(위험경고), 구명조끼 미착용(유지관리), 다중활동 응급조치 미비(안전기준, 응급구조), 교원 미임장(불안행위)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 2. 학교안전시스템에 의한 원인 분석

로직트리 분석에 의하여 도출된 원인을 공간적으로 재분류하는 것이다. 즉, 안전기준, 유지관리, 위험경고, 교육훈련, 불안행위, 응급구조의 6개 요인<sup>3)</sup>으로 분류

3) 남윤신(2014)에 의하면 사고 발생 원인은 6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지만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 모형 이론(차우규 외 2017)에 의하면 사고 요인은 안전기준, 물적관리, 인적관리, 교육훈련, 위험행위의 5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를 파악하기 쉽게 하였다.

안전기준	유지관리	위험경고	교육훈련	불안행위	응급구조
무자격 업체 선정 다중활동 응급체계 미비	구명조끼 미착용	갯골, 너울성 파도 경고 미부착	무리한 활동 실시	교원 미임장	응급구조대 미대기

### 3. 로직트리 분석과 학교안전시스템 분석을 통한 예방정책의 제안

이상의 로직트리 분석기법에 의해 완성된 로직트리와 시스템 요인 평가를 통해 제안될 수 있는 예방정책은 다음과 같다.

- (안전기준) 수련활동 운영업체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시 준수 의무화, 다중활동 시 응급구조 체계를 사전에 구축토록 의무화
- (유지관리) 구명조끼 착용 습관화
- (위험경고) 지자체에서는 갯골, 너울성 파도 등의 해상위험 요인에 대한 경표 표지 설치 및 활동 금지 안내
- (교육훈련) 학생의 신체적 발달단계를 고려해 무리한 활동 자제
- (불안행위) 외부 위탁활동이라도 담당 교원은 활동 과정에서 임장 필요
- (응급구조) 활동 시 응급구조대 대기

## II

###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학교안전사고 원인분석과 예방모형이론<sup>4)</sup>

이 이론은 안전사고 예방이론에 관한 선행 연구인 농촌진흥청(2009)의 “농작업 재해 현황 및 원인통계의 구축방안 연구”와 남윤신 외(2014)의 “학교안전사고 통계분석 및 예방정책 수립 방안 연구”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계승하면서, 「학

4) 「무과실책임주의에 기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모형 수립을 통한 학교안전정책 선진화 방안 연구」(차우규·표석환, 2017, 한국방재학회) 발췌

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취하는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여 학교안전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에 관한 이론 체계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이론적 기초

사고는 왜 발생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매우 단순하지만 다양한 답변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고는 정상적인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일탈함에 따라 신체 피해를 수반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결국 사고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초래한 원인을 찾아 이러한 상태 변화를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사고 예방 정책의 기본 논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상성에서 비정상성을 초래한 요인을 찾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법원의 판결로부터 찾는다. 학교안전사고를 예로 든다면 학교안전사고<sup>5)</sup>의 법적 책임은 피해학생과 학부모, 사고를 유발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교장 포함), 학교, 교육당국, 국가, 제3자 등이 부담한다. 결국 법원 판결은 신체손상 등의 비정상성을 초래한 책임을 통상 ‘부주의(不注意)’로 알려진 ‘과실(過失)’이라는 주관적 원인의 경중에 따라 그 범위를 산정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고는 외견상 사고 관계자의 과실(부주의)이 초래하는 비정상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사고의 예방은 사고 책임 주체들의 과실(부주의)을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sup>6)</sup>

## 2.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목표는 사고 요인 제거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사고 요인 분석은 학교안전사고를 발생케 한 직접 요인을 찾아내는 것으로 이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은 학교안전사고를 유

5)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학교안전법 제2조)

6)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고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사고와 같은 일반적인 안전사고와는 별개로 취급하며 이는 학교안전사고 분류에서 후술한다.

발한 과실(부주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공평·타당하게 분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은 학교안전사고의 책임관계자를 국가, 교육당국(교육청), 학교, 교직원, 사고 유발학생 및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 그밖에 관련 제3자 등으로 분류한다. 법원이 부과하는 책임<sup>7)</sup>은, 국가는 학교안전과 관련한 법령이나 제도에 관한 미비에 대한 과실, 교육당국 및 학교(교직원)는 법령이나 제도의 불이행에 관한 과실(학생에 대한 보호·관리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과실), 학생은 위험한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과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3. 무과실책임주의에 기반한 사고 발생 원인 모형

학교안전사고를 초래한 과실(부주의)의 원인 분석에 기초하여 예방정책을 마련하려면 법적 책임의 합리적인 분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법적 책임은 사고 당사자에게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이로 인한 부담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고 발생 원인 모형에 따라 제시된 예방대책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정책적 활용도가 미미할 것이다.

근대 민법의 3원칙 중 하나인 과실책임주의는 과실 없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를 때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과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근대의 과실책임주의는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가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무과실책임주의’를 통해 보완되었다. 이러한 무과실책임주의는 기업이 초래한 위험으로 인하여 근로자 및 시민이 입은 피해를 과실책임주의에 의해서는 공평·타당하게 배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도입된 법원칙이다. 무과실책임주의는 「광업법」 제9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3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등으로 입법화되어 있다.

무과실책임주의는 기업 등의 횡포로부터 근로자 및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이 원칙이 국가책임의 영역으로 확산된 것이 2007년 시행된 학교안전법이다. 학교안전법 시행 전에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하여 국·공립학교의 경우 「국가배상법」의 국가배상책임(제2조), 사립학교의 경우 「민법」의 사용자배상책임(제756조)을 부담하는데 모두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학교의 과실이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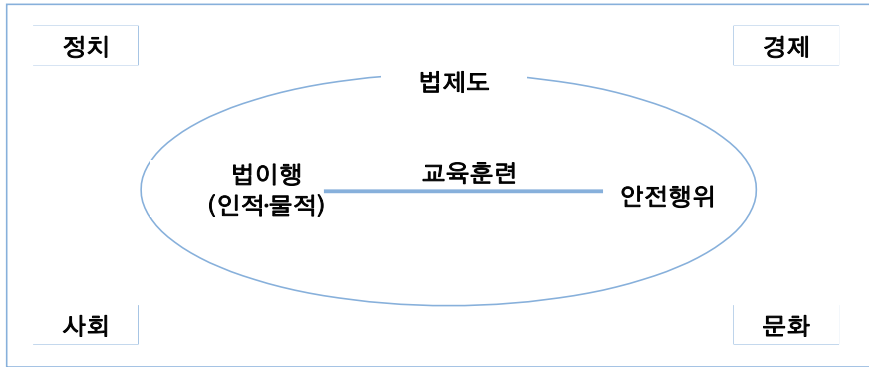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국가배상법」, 「민법」, 학교안전법 등이다.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안전법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규정(제2조)하면서, 장해·사망 시 「국가배상법」을 준용(제37조 내지 제40조)하고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제44조)하며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으면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책임을 면한다(제45조).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의 피해학생이든 사고를 유발한 학생이든, 교사든, 교장이든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모든 보상 책임은 학교안전공제회가 국가 및 학교법인 등을 대신하여 인수하므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국가배상법」과 「민법」과 달리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4. 사고 발생 원인 모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은 과실<sup>8)</sup>을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있다. 학생 외에도 국가, 교육당국 및 학교(교직원) 등 책임관계자의 과실을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인식토록 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과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법령이나 제도의 불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당국 및 학교(교직원)는 학생에 대한 보호·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제도의 불이행 사항을 인식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위험한 행동이 초래하는 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핵심 요소는 법령 제도의 완비, 인적·물적 관리의 이행, 위험한 행동의 지양을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교육·훈련 등으로 체계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핵심 요소의 근저에는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가치관, 정치·경제적 환경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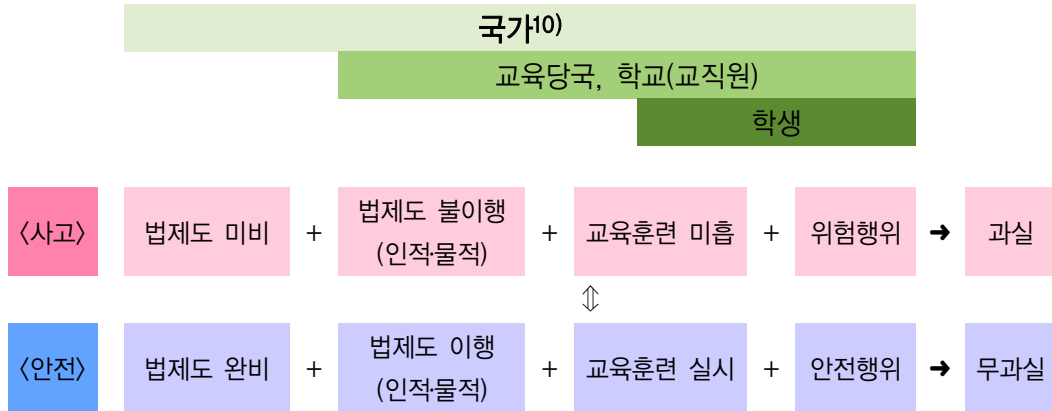
8) 사고 요인에 관한 핵심적 쟁점은 인적 결함(human error)인 부주의(과실)에 대한 것으로, 인적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고전적 입장과 인적 결함을 사고 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effect)로 보는 현대적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Human error" is often cited as cause of occupational mishaps and industrial accidents. Human error, however, can also be seen as an effect (rather than the cause) of trouble deeper inside systems." (Sidney W.A. Dekker(2003), Accident are Normal and Human Error Does Not Exist: A New Look at the Creation of Occupational Safety, international journal of occupational safety and ergonomics (Jose) 2003. vol. 9, NO. 2, pp. 211-218.)



결국 학교안전사고는 법제도의 미비와 법제도의 불이행, 교육훈련의 미흡, 학생의 위험한 행동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인들은 책임주체들의 과실로 외화(外化)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학생 개인은 위험한 행동과 교육훈련의 불이행의 책임을, 교육당국 및 학교(교직원)은 이에 더하여 인적·물적 관리에 관한 법제도 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무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 하는 학교안전법의 취지상 국가는 책임 주체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법제도 미비를 포함한 모든 과실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은 이러한 책임 주체별 과실 상태를 개선하여 무과실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의 핵심 요소에 대한 불이행과 이행으로 인한 사고와 안전의 관계 및 주체별 책임 범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sup>9)</sup>

9) 이 그림에 따른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원인	대책
안전기준	무자격 업체 선정 다중활동 응급체계 미비	업체 자격계약기준 마련 응급구조 체계 구축
물적관리	갯골, 너울성 파도 경고 미부착	지자체 위험 경고 표지 설치
인적관리	무리한 활동 실시 교원 미임장 구명조끼 미착용	발달단계 적합활동 실시 위탁활동 교원 임장 구명조끼 의무 착용
교육훈련	부당한 지시 거부 교육 미흡	부당한 지시 거부 교육 필요
위험행위	강요된 지시 이행에 의한 위험 노출	강요된 지시 거부로 안전 확보



## 5. 사고 예방 정책 모형

학교안전사고는 법제도 미비, 법제도 불이행, 교육훈련 미흡, 위험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안전사고는 학생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2008), 그 밖의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학교 안전사고 피해는 개입된 요인이 복합적일수록 중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학교 안전사고는 단순 위험 행위 요인에 의한 사고와 위험 행위 등을 포함한 복합 요인에 의한 사고로 이원화할 수 있으며, 전자는 성장기 불완전한 의식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적 사고(natural accident)로, 후자는 다중 요인이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발생한 구조적 사고(systemic accident)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전자는 의식·문화적 변화를 통한 안전사고 감소를 지향함으로써 인적 안전(personal safety), 후자는 안전 지원 체제 강화를 통한 교육환경 안전(safe education surroundings)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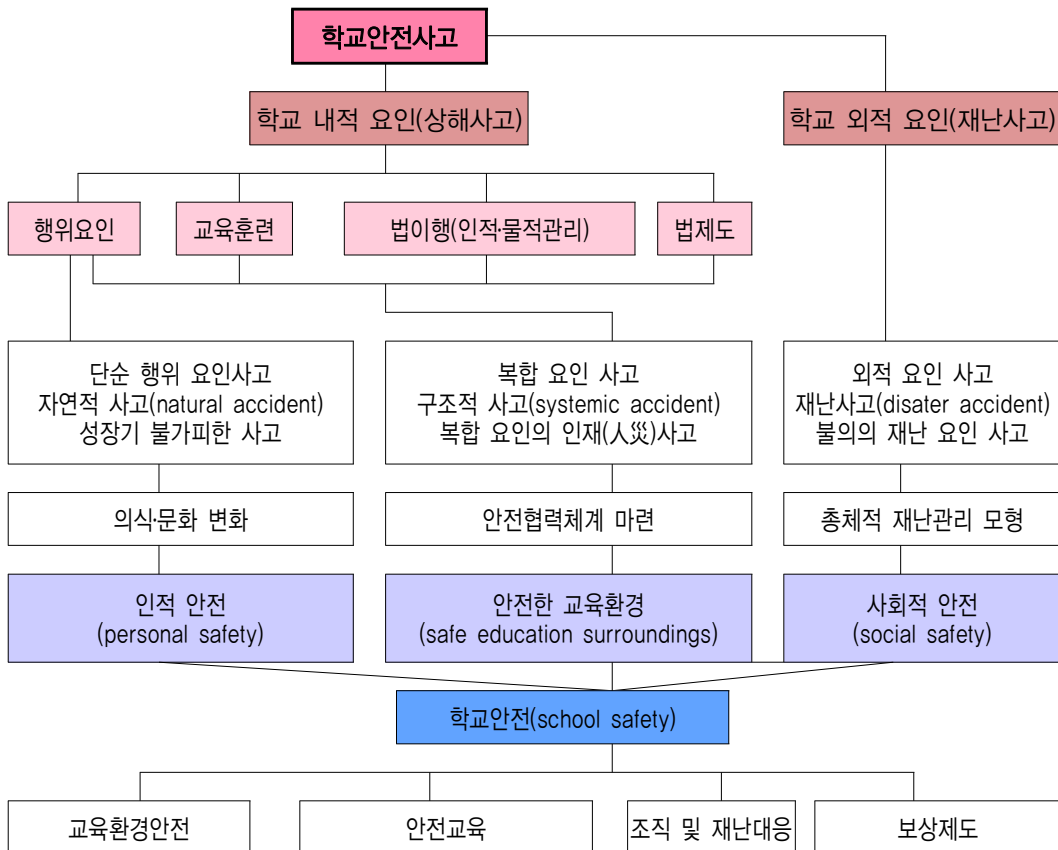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재난사고(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도 학교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나, 사고 요인이 외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연적 사고와 구조적 사고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sup>11)</sup>의 절차로 구성된

10) 학교안전공제회는 고의·중과실 외에는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의 구조를 취한다고 볼 수 있음(학교안전법 제44조).

11) 미국은 1979년에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을 설치하면서 전국주지사협의회(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NGA)에서 연방재난관리청의 향후 정책적 방향으

다. 학교에서의 재난관리는 평상시의 재난안전교육, 조직체계 구축, 비상대비 훈련과 유사시 매뉴얼에 따른 대응과 사후 복구 등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결국 일반적인 학교안전사고에는 총체적 재난관리 모형과는 달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상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사고 유형별 예방 대책을 통한 학교안전 구현을 위한 업무체계(Framework)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로 총체적 재난관리 모형(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 CEM)을 제시하였다. 지금 미국은 국가재난대응체계(National Response Framework, NRF)를 통하여 총체적 재난관리 모형(CEM)을 따르고 있다 (하규만(2010), 미국의 국가재난 대응체계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제16권 제1호).

## 6. 사례 연구집의 구성과 주요 내용 설명

본 사례 연구집은 2007년 이후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한 1천만원 이상 중대 사고 100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5가지 사고 원인에 따라 사고를 분류하였고, 사례별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성		주요내용															
2.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 (초등학교 1학년, 남)		○ 사고 명칭과 사고학생 학년과 성별															
<b>◆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9.8. 13시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교실 앞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이용하다 난간을 잡고 있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척추가 골절된 사고</li> <li>○ 2013.7.1.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65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1급,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하원칙에 따른 사고 발생 개요</li> <li>○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내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형 차트를 활용한 학교안전사고 원인 시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위험 요인에 대해 기본 배점으로 5점을 부여하되, 주요 요인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배점합계는 100점으로 함</li> </ul> </li> <li>※ 방사형 차트는 사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편의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배점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음</li> </ul>															
<b>◆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사고 요인</th> <th>예방 방안</th> </tr> </thead> <tbody> <tr> <td>물적 관리</td> <td>미끄럼틀 바닥에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 불량 미끄럼틀 손잡이 마모</td> <td>충격흡수를 위해 바닥을 모래, 고무바닥재, 우레탄 등으로 시공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td> </tr> <tr> <td>인적 관리</td> <td>초등 저학년이 혼자서 놀다가 발생한 사고</td> <td>저학년 학생의 경우 휴식시간이라도 담임 임장 필요</td> </tr> <tr> <td>교육 훈련</td> <td>놀이시설 이용 시 위험 상황 대처 능력 미흡</td> <td>추락 위험 시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필요</td> </tr> <tr> <td>위험 행위</td> <td>놀이 기구 이용 중 실수로 인한 낙상 사고</td> <td>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해 스스로 조심하는 자세 배양</td> </tr> </tbody> </table>		구분	사고 요인	예방 방안	물적 관리	미끄럼틀 바닥에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 불량 미끄럼틀 손잡이 마모	충격흡수를 위해 바닥을 모래, 고무바닥재, 우레탄 등으로 시공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인적 관리	초등 저학년이 혼자서 놀다가 발생한 사고	저학년 학생의 경우 휴식시간이라도 담임 임장 필요	교육 훈련	놀이시설 이용 시 위험 상황 대처 능력 미흡	추락 위험 시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필요	위험 행위	놀이 기구 이용 중 실수로 인한 낙상 사고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해 스스로 조심하는 자세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가지 사고발생 원인별 사고 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방안을 기술</li> </ul>
구분	사고 요인	예방 방안															
물적 관리	미끄럼틀 바닥에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 불량 미끄럼틀 손잡이 마모	충격흡수를 위해 바닥을 모래, 고무바닥재, 우레탄 등으로 시공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인적 관리	초등 저학년이 혼자서 놀다가 발생한 사고	저학년 학생의 경우 휴식시간이라도 담임 임장 필요															
교육 훈련	놀이시설 이용 시 위험 상황 대처 능력 미흡	추락 위험 시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필요															
위험 행위	놀이 기구 이용 중 실수로 인한 낙상 사고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해 스스로 조심하는 자세 배양															



이 사례집에서 학교안전시스템 사고 원인 별로 제시된 사고 요인과 예방 방안을 예를 들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사고 요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장소별 놀이지도 매뉴얼 미비</li> <li>■ 수련활동 무자격업체 선정</li> <li>■ 다중응급체계 미비</li> <li>■ 발코니로 나가 실족하여 발생한 사고</li> <li>■ 5개학교 공동 통학로 이용</li> <li>■ 신체이상 징후 학생 관리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지도 매뉴얼 마련 및 보급 필요</li> <li>■ 수련활동업체 자격 계약기준마련</li> <li>■ 응급구조체계 구축</li> <li>■ 건물외벽 발코니 안전기준 마련</li> <li>■ 안전한통학로 기준 마련</li> <li>■ 요보호학생 보호체계기준 강화</li> </ul>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시설바닥 단단한 재료로 시공</li> <li>■ 놀이공간 주변 철제 배수로 설치</li> <li>■ 낮은창틀 높이에도 안전봉 미설치</li> <li>■ 강당입구가 미끄러운 대리석 구조</li> <li>■ 알코올이 가득 찬 램프 전도 사고</li> <li>■ 동절기 낮은 온도로 집중력 저하</li> <li>■ 철제 배수로 덮개 파손 및 어두운 조명</li> <li>■ 운동장바닥 돌출 요철로 인한 사고</li> <li>■ 복도·계단 장난 경고 표시 미부착</li> <li>■ 갯골, 너울성파도경고미부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시설바닥 충격흡수 표면재 시공</li> <li>■ 놀이시설과철제 배수로 구분 설치</li> <li>■ 안전봉설치 필요</li> <li>■ 바닥 미끄러지지 않게 마감처리 필요</li> <li>■ 알코올 절반 이하로 채워 전도 대비</li> <li>■ 동절기 양궁 훈련장 적정 온도 유지</li> <li>■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조명 점검</li> <li>■ 운동장위험 요인 수시 점검/관리</li> <li>■ 복도·계단 장난 금지 경고 부착</li> <li>■ 지자체위험 경고 표지 설치</li> </ul>
위험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멍조끼미착용</li> <li>■ 복싱 훈련 보호장비 헤드기어 미착용</li> <li>■ 행사진행및 안전관리 요원 미배치</li> <li>■ 과학교사 이석 시 위험 행동</li> <li>■ 축구 경기 중 경기 과열로 인한 사고</li> <li>■ 야간에 양궁장에서 야구놀이 중 사고</li> <li>■ 사고 후 위급 상황 시 119 신고 지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멍조끼의무 착용</li> <li>■ 복싱 훈련 보호장비 필수 착용 지도</li> <li>■ 행사진행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li> <li>■ 실험활동시 지도교사 입장 필수</li> <li>■ 엄격한 반칙 적용 및 경기 과열 방지</li> <li>■ 장소, 시간에 적합한 놀이지도</li> <li>■ 위급 상황 시 119 먼저 신고</li> </ul>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 시 행동, 복장 등 교육 미흡</li> <li>■ 달리기바톤 터치 사전 훈련 불충분</li> <li>■ 부당한지시 거부 교육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사고사례 및 안전교육 철저</li> <li>■ 경기전 바톤 터치 훈련 실시 필요</li> <li>■ 부당한지시 거부 교육 필요</li> </ul>
불안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코올램프 근처에 있다 화상</li> <li>■ 창문 넘는 행위의 위험성 인식 실패</li> <li>■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 발생한 사고</li> <li>■ 한손으로 자전거 핸들 조작 중 사고</li> <li>■ 야구 배트를 휘두르다 발생한 사고</li> <li>■ 야간에 바닥 착지 중 발생한 사고</li> <li>■ 고등학생에 부적합한 장난에 의한 사고</li> <li>■ 안전봉을 넘어가 발생한 사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실습시 위험 대비 자세 유지</li> <li>■ 위험행위 자제를 위한 판단력 배양</li> <li>■ 추락 가능 장소의 위험성 인식 강화</li> <li>■ 자전거 핸들의 안전한 조작 철저</li> <li>■ 야구배트 동작 시 주위 안전 확보</li> <li>■ 야간 위험 가중되므로 주의 강화</li> <li>■ 연령과 장소에 적합한 놀이 판단력</li> <li>■ 과도한 모험심 억제 및 위험 인식</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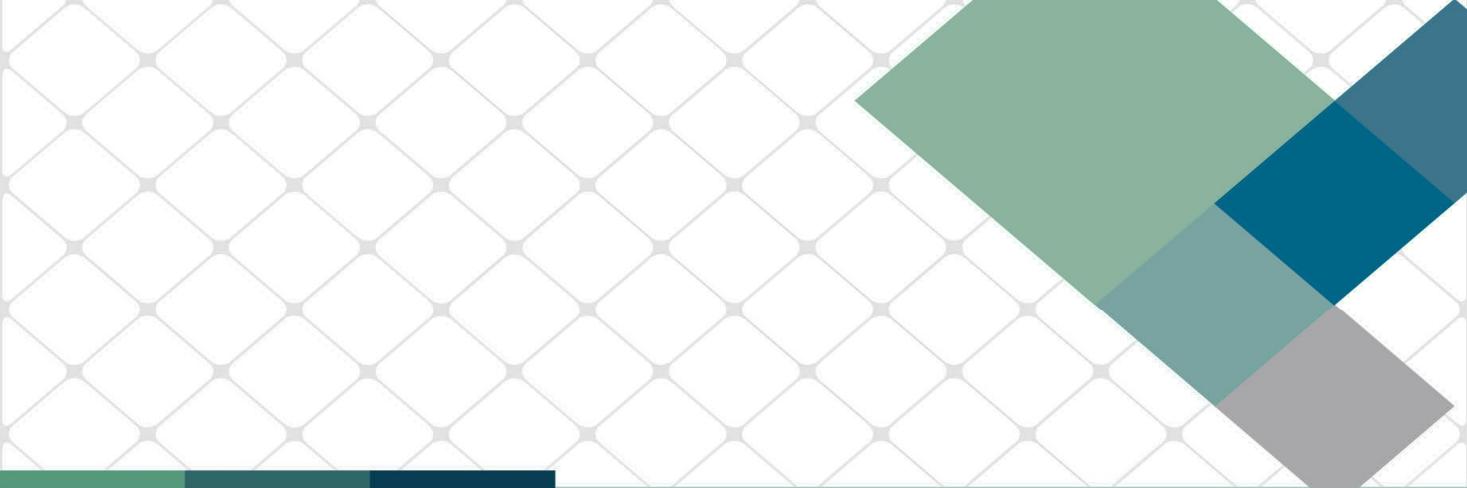


## 제2부

## 학교안전 중대사고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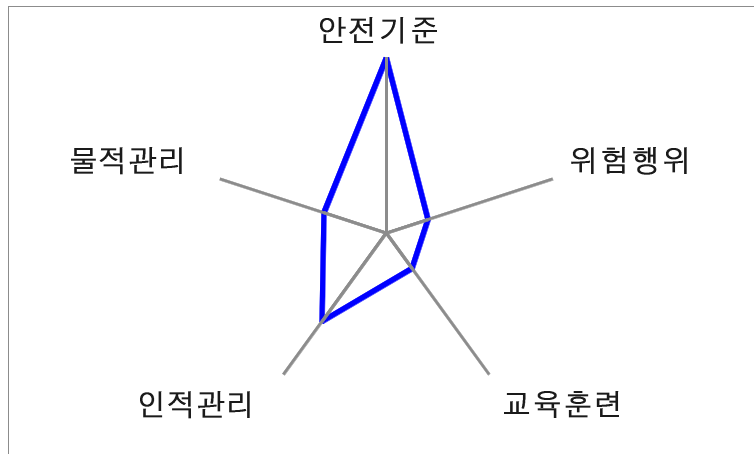
# I . 안전기준 요인

## 01 | 병영체험활동으로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사망

(고등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3.7.18. 17시 20분경 병영체험활동에 따라 실시한 IBS해상훈련 종료 후 교관이 수십 명의 학생들을 인솔하여 부당한 지시에 따라 백사장해수욕장에서 바닷물에 들어가던 중 80여명이 큰 파도에 휩쓸렸고 구조되지 못한 5명의 학생은 당시 실종되었다가 19일에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통해 실종학생 5명이 순차적으로 사체로 발견된 사고
- 2013~2015. 학교안전공제회 유족급여 15억원(1인당 3억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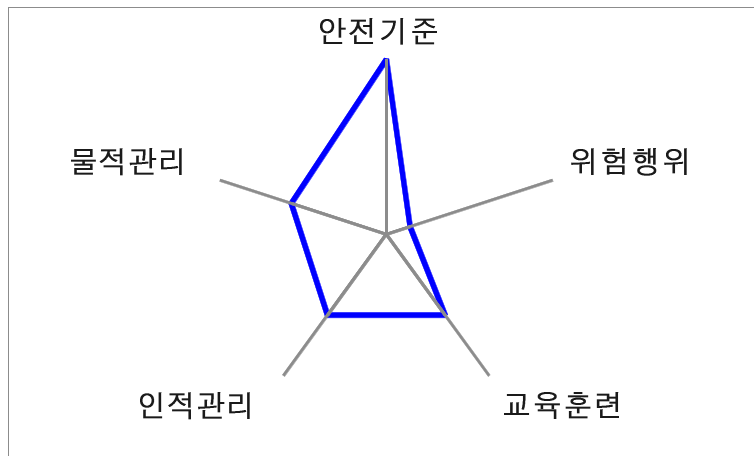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무자격 업체 선정 다중 응급체계 미비	자격, 계약기준 마련 응급구조 체계 구축
물적관리	갯골, 너울성 파도 경고 미부착	지자체 위험 경고 표지 설치
인적관리	무리한 활동 실시 교원 미임장 구명조끼 미착용	발달 단계별 적합한 활동 실시 위탁활동 교원 임장 구명조끼 의무 착용
교육훈련	부당한 지시 거부 교육 미흡	부당한 지시 거부 교육 필요
위험행위	강요된 지시 이행으로 위험 노출	강요된 지시 거부로 안전 확보

※ 이 사고 후 학교안전법 신설로 외부 위탁 교육활동 안전기준 마련(제8조의 2)

## 02 | 난간을 통해 교실로 들어가려다 추락하여 부상 (고등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4.30. 8시경 시험공부를 위하여 3층 자율학습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동료 학생들의 장난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자, 3층 옆 교실에서 창문 발코니로 넘어 가려다 다리를 헛디뎈 추락하여 흉요추 파열 및 척추 손상 등의 치료를 받은 사고
- 2013.10.17.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1심 판결금 217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8급과 9급의 중간 준용, 노동력 상실률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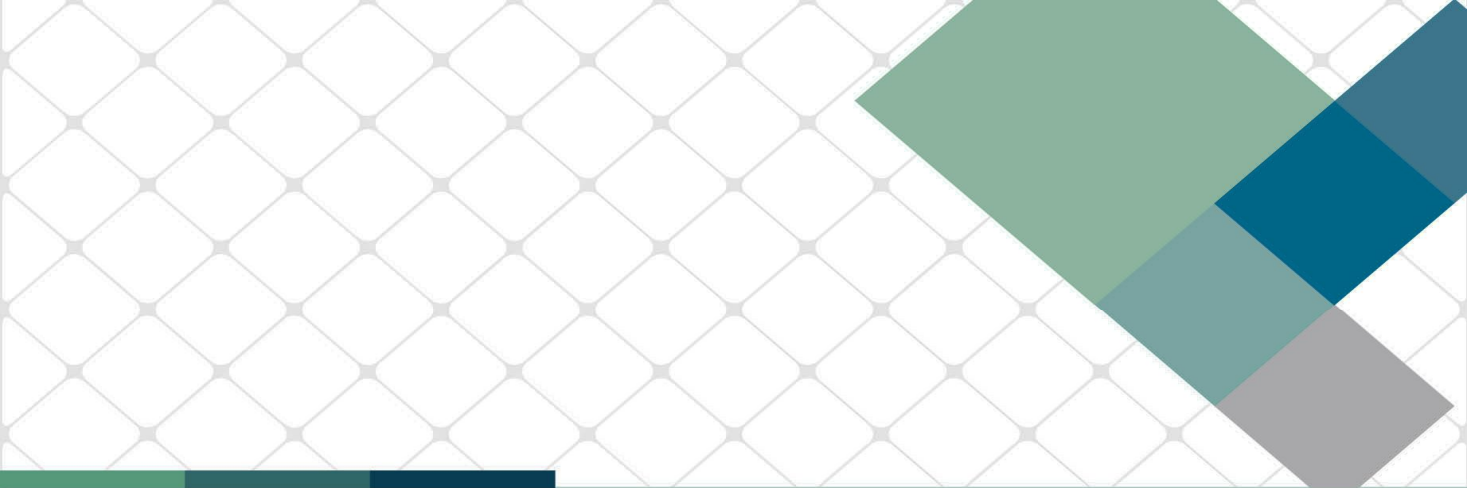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창문이 낮음에도 안전봉 미설치 추락 위험 경고 표시 미설치	안전봉 설치 필요 경고 표시 부착 필요
교육훈련	추락 위험성 시설 올라가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실시 미흡	위험성 인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위험행위	과도한 장난과 피해학생의 위험 인식 실패로 인한 사고	과도한 장난 자제 및 위험성 인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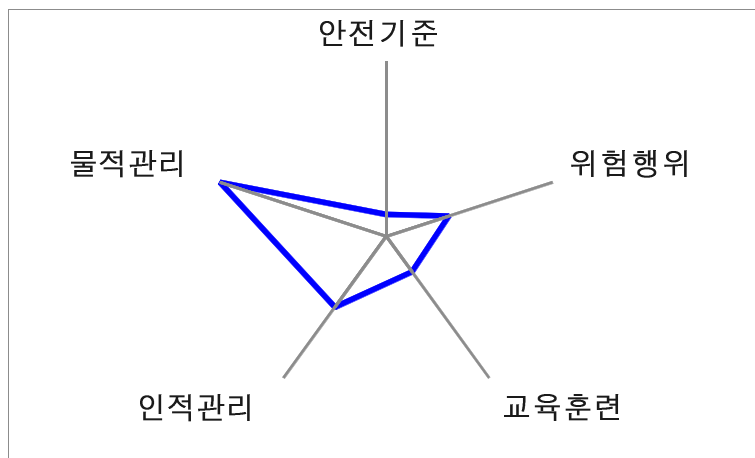
## Ⅱ . 물적관리 요인

## 01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이마 및 손, 치아 부상

(초등학교 1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5.16. 10시 29분경 바깥놀이 수업 중 학생이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있었고, 같이 있던 친구가 미끄럼틀에 올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왔다는 이유로 아래로 밀어 떨어트림
- 피해학생은 미끄럼틀 아래로 떨어지면서 미끄럼틀 아래에 설치된 배수로 철제 그레이팅에 얼굴이 부딪쳐 이마 부분이 10cm가량 찢어졌고, 떨어지면서 손을 바닥에 짚는 과정에서 왼쪽 손목 골절 및 치아 일부 파절
- 2013.12.19.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34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4급 추상장해, 노동력 상실률 5%)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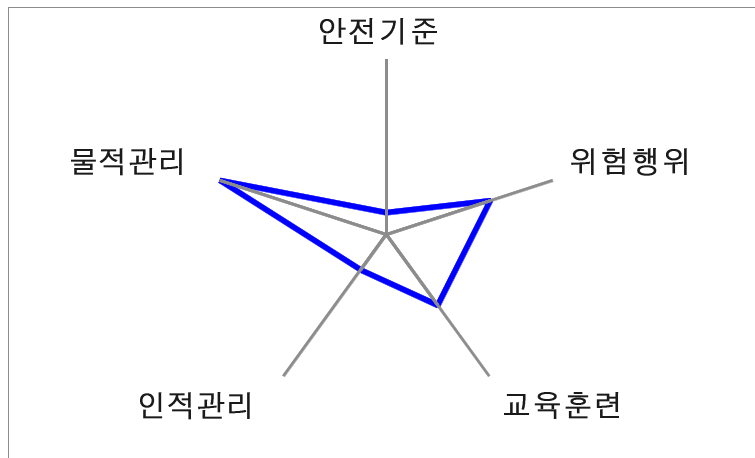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추락 대비 완충 매트 또는 모래가 아닌 단단한 바닥으로 시공 놀이 공간 주변 철제 배수로 설치	추락 위험이 있는 놀이시설은 바닥에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 놀이시설과 철제 배수로 구분 설치
인적관리	담임교사의 보호관리 의무 이행 미흡	저학년은 보다 세심한 보호관리 필요
교육훈련	추락 위험 시설에서의 안전행동 요령 교육 실시 부족	위험성 인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위험행위	위험한 장난으로 인한 사고	위험 행위를 자제할 수 있는 판단력 배양

## 02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

(초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9.8. 13시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교실 앞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이용하다 난간을 잡고 있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척추가 골절된 사고
- 2013.7.1.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65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1급,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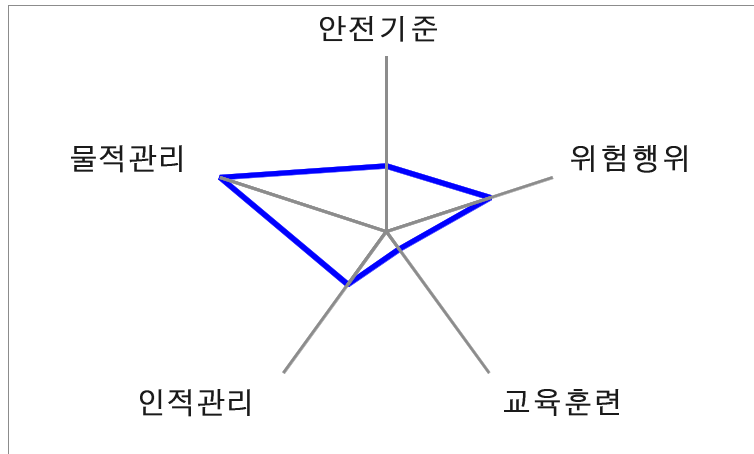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미끄럼틀 바닥에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 불량 미끄럼틀 손잡이 마모	충격흡수를 위해 바닥을 모래, 고무바닥재, 우레탄 등으로 시공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인적관리	초등 저학년이 혼자서 놀다가 발생한 사고	저학년 학생의 경우 휴식시간이라도 담임 입장 필요
교육훈련	놀이시설 이용 시 위험 상황 대처 능력 미흡	추락 위험 시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필요
위험행위	놀이 기구 이용 중 실수로 인한 낙상 사고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해 스스로 조심하는 자세 배양

## 03 | 등교 중 교통사고로 사망

(초등학교 1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9.3. 8시 23분경 학교 방문자가 학교 내 경사진 비탈면에 차량을 주차 후 제동장치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고 차량에서 이탈하였고, 차량이 후진을 하며 등교하던 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
- 2012.11.23.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화해권고 결정금액 48백만원 지급 (자동차 보험사가 지급한 240백만원 중 교육청 책임 금액)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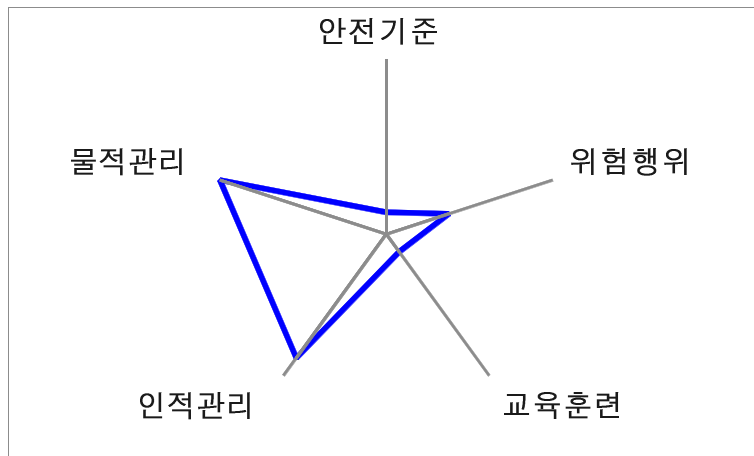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불분명	보도와 차도 구분 설치 기준 마련
물적관리	보도와 차도가 선으로만 구분 경사지 주정차금지 경고 표시 미설치	보도와 차도 구분 설치(펜스 및 보도블럭) 교내 경사지 주정차금지 경고 표시 설치
인적관리	외부 방문객 차량 관리인 미배치 등교 시 보행로 이용 지도 부족	외부 방문객 차량 관리인 배치 등교 시 학교 내 보행로 이동 지도 강화
위험행위	차량 제동장치 조작 미숙	차량 제동장치 조작 철저

## 04 | 강당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

(초등학교 1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2.5.1. 11시 25분경 1학년 학생들이 본교 신관 5층 강당(소극장)에서 ‘즐거운 생활’ 교과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강당의 출입구 맨 앞에서 인솔하는 담임교사의 지도에 따라 줄서서 계단을 내려와 3층에 있는 교실로 이동함
- 교실로 향하던 중 줄의 끝부분에 있던 학생이 강당 문을 닫아 학생 3명이 강당 안에 남게 되어 강당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노후화된 출입문 손잡이를 당황한 1학년 학생들이 열기에는 불가능
- 3명의 학생 중 A가 여닫이 창문틀에 올라가 밖으로 구조를 요청하였고, 주차장에 있던 6학년 학생들이 A를 발견하고 구조하기 위해 강당으로 뛰어가던 중 창문틀에 있던 A가 5층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 2012.7.18. 학교안전공제회 유족급여 241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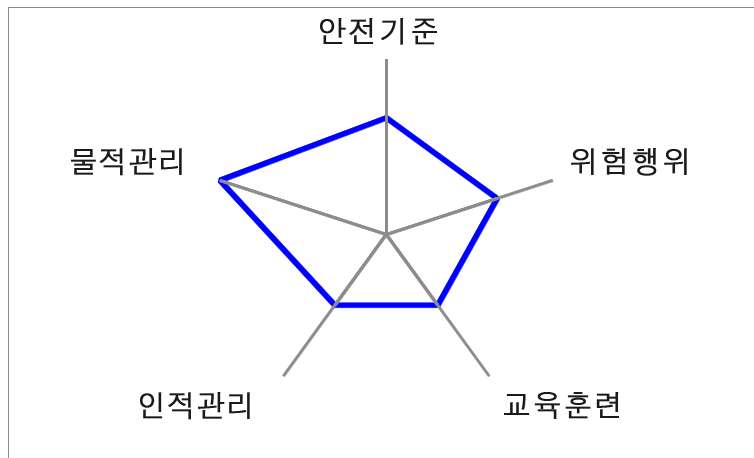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출입문 손잡이 노후화로 학생 감금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인적관리	학습 장소 이동 시 인원 파악 미비로 낙오된 학생들 발생	저학년 이동 시 보조 교사 활용 등 인원 파악 철저
교육훈련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미흡	위험 상황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필요
위험행위	위급한 상황 시 불필요한 행동	위급 상황 시 판단능력 제고

## 05 |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

(초등학교 2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3.6.25. 13시 57분경 방과 후 영어교실 시작 시간을 기다리며 3층 다목적실 연결통로에서 창틀에 앉아 친구들의 훌라후프 시합을 구경하고 있던 중 갑자기 뒤로 넘어가 1층으로 추락하여 의식을 잃은 후 다음날 사망한 사고
- 2013.10.2. 학교안전공제회 유족급여 265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건축법상 하자는 없으나, 학교시설의 특수성 미반영	난간 높이가 낮은 창틀에 철제빔 설치 의무화 필요
물적관리	낮은 창틀 높이에도 안전봉미설치 창틀 벽체 추락 위험 경고 미부착	안전봉 설치 필요 경고 표시 부착 필요
인적관리	통행이 빈번한 장소 관리감독 미비	CCTV 설치, 교사 입장 등 감독 강화
교육훈련	창문 등 추락 위험 시설의 위험성 교육 실시 미흡	위험성 인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위험행위	추락의 위험 인식 실패	추락 위험성 인식으로 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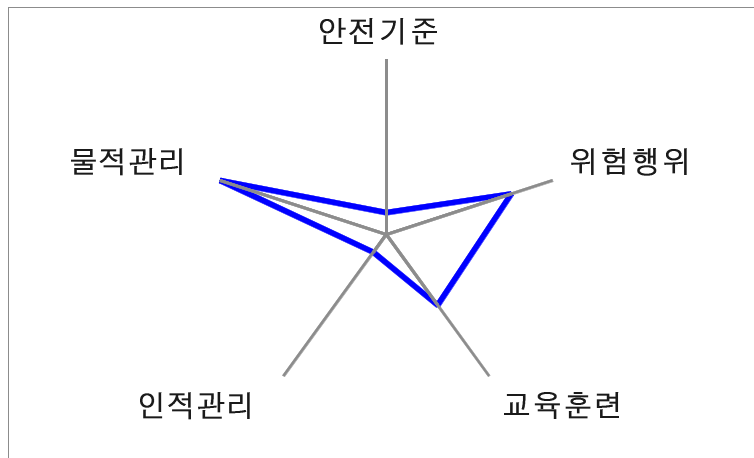


## 06 | 강당 문에서 미끄러져 얼굴 부상

(초등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2.8.27. 9시 45분경 학생이 1교시를 마치고 친구들과 강당으로 놀러가던 중 강당 입구에서 미끄러지면서 강당 문(철제로 만들어짐) 모서리 부분에 얼굴을 세계 부딪쳐 코가 골절되고 왼쪽 얼굴에 열상(裂傷)을 입은 사고
- 2013.9.2.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7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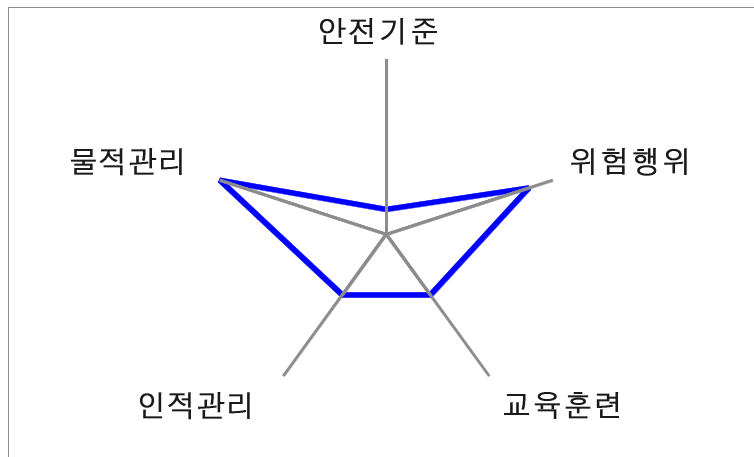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강당 입구가 미끄러져 넘어지기 쉬운 대리석으로 되어 있음 강당 문이 철제로 되어 있고 모서리가 돌출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 마감처리 필요 돌출되지 않은 철제문 설치 필요
교육훈련	실내에서 무리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	안전한 실내 보행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위험행위	미끄러운 바닥에서 빠른 속도로 뛰어 가다 넘어져 발생한 사고	실내 복도나 바닥에서 뛰지 않는 습관 배양



## 07 | 실험 중 알코올램프가 넘어져 목과 가슴에 화상 (초등학교 4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8.10.23. 11시 15분경 과학실에서 열전도 실험을 위해 6명이 한조가 되어 실험 장치를 설치하고 조원 중 한 학생이 점화기를 이용하여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이는 순간 알코올램프가 넘어져 책상 위에 불이 붙음
- 학생이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까이서 바라보다 앞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고 그 후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에 붙은 불을 떼어내면서 가슴 부위의 털옷까지 불이 옮겨 목과 가슴 쪽에 많은 화상을 입은 사고
-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26백만원(2009.9.22), 장애급여 131백만원(2011.10.20, 법원 공탁금)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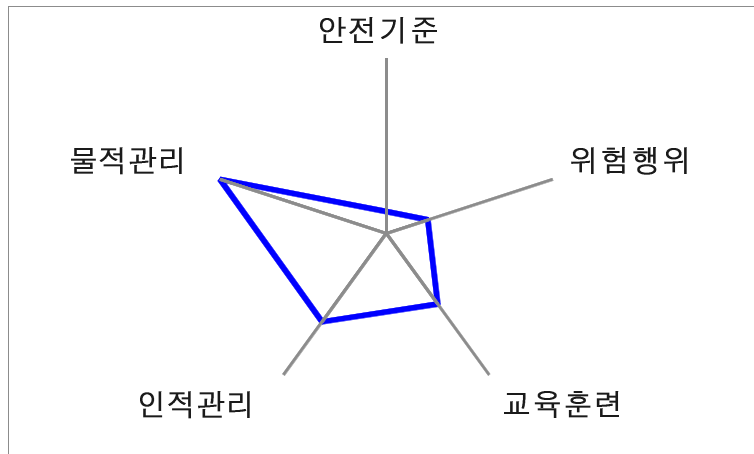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알코올이 가득 채워진 알코올램프 전도로 다량의 알코올 유출	램프의 알코올 절반 이하로 채워 전도 시 쏟아지지 않도록 관리
인적관리	실험 실습 시 위험한 행동이나 복장 등에 대한 통제 미흡	실험 실습 시 위험 행동, 복장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교육훈련	과학실험 시 행동, 복장 등에 대한 교육 미흡	과학실험사고 사례 및 위험성 인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철저
위험행위	알코올램프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 알코올램프 가까이서 바라보다 머리와 옷에 불이 붙은 사고	실험기구 조작 시 조심토록 지도 실험실습 시 위험에 대비한 자세 유지 필요

## 08 | 수련회에서 잠수놀이를 하던 중 부상

(초등학교 5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8.6.26. 14시 50분경 5학년 수련회(남학생 77명, 여학생 72명 계 149명)에 참석하여 2일째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 및 자유시간 13시부터 14시까지 레크레이션 댄스를 한 후, 남학생들은 야외수영장으로 이동하여 수영 준비활동 후 14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수영 활동과 수영장 부표위를 걷는 징검다리 걷기 활동을 시작함
- 수영 활동 중 학생 일부가 잠수놀이를 하여 안전요원이 확성기로 모두 물위로 나오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학생은 그대로 물속에 엎드려 있었으며 입안에서 토사물이 발견되고 의식이 없어진 사고
-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129백만원(2013.4.19), 105백만원(2015)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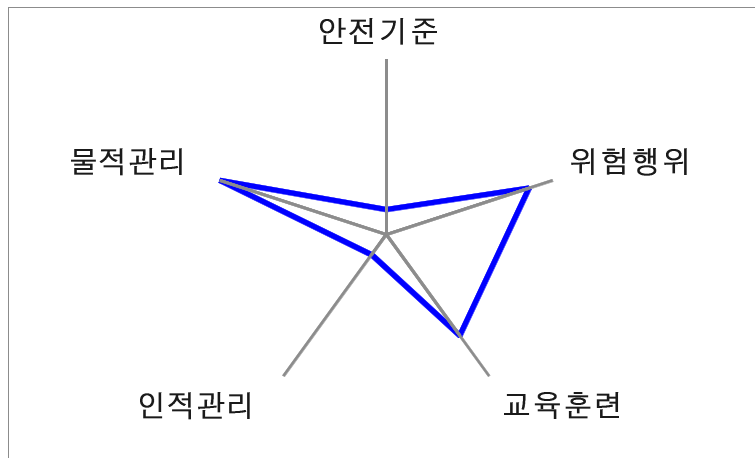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성인풀과 유아풀의 구분 철제 난간에 부딪힌 사고	철제 난간에 인식이 용이한 부드러운 색깔 있는 표식 설치
인적관리	성인풀과 유아풀 경계 근처에서 혼자 물놀이 중 사고	물놀이 중 학생이 고립되지 않도록 보호 관리 철저
교육훈련	수상 안전교육 지도 미흡	수상 놀이 시 안전교육 철저
위험행위	위험 시설물 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 시설물에 대한 주의 철저

## 09 | 체험활동으로 스키 타다 미끄러져 부상

(초등학교 6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12.17. 22시 30분경 1학년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강원도 정선에 있는 스키장에서 실시한 스키캠프에 참가하던 중 중급코스에서 야간스키를 타다가 얼음이 있는 곳에서 미끄러져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
- 2012.1.16.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32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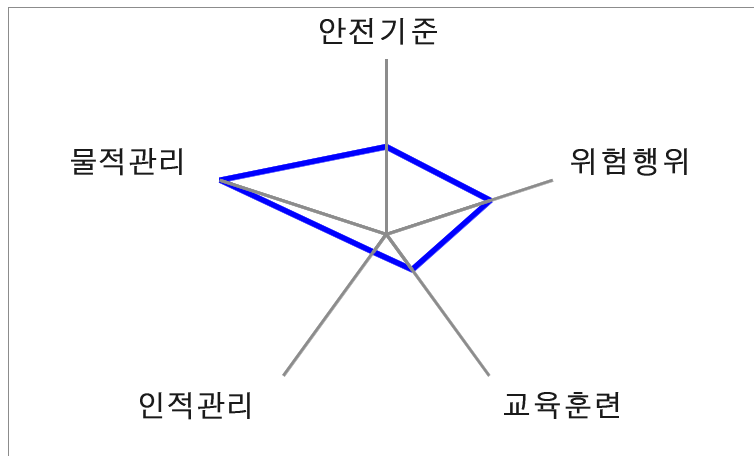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스키장 결빙으로 인한 사고	스키장은 시설물 결함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교육훈련	위험한 운동인 스키 활동 전 예방교육 미흡	위험 활동 시 안전교육 강화
위험행위	야간 스키임에도 무리한 코스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야간 스키의 경우 평소 본인의 실력보다 하향하여 운행토록 지도

## 10 |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

(중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3.4.2. 12시 32분경 4교시 수업 직후 평소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 물 백묵 칠판용 플라스틱 지우개통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 지우개통에 남아있는 물을 비우려고 4층 교실 바로 앞 복도 창문을 엮
- 학생이 지우개통에 남아있는 물을 버리면서 부속품 중 하나인 스프링판이 창밖 층간 발코니에 떨어져 줍기 위해 나가다 비가 와서 미끄러운 난간에서 중심을 잃고 1층으로 추락해 외상성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고
- 2013.6.3. 학교안전공제회 유족급여 209백만원 지급 (과실상계 3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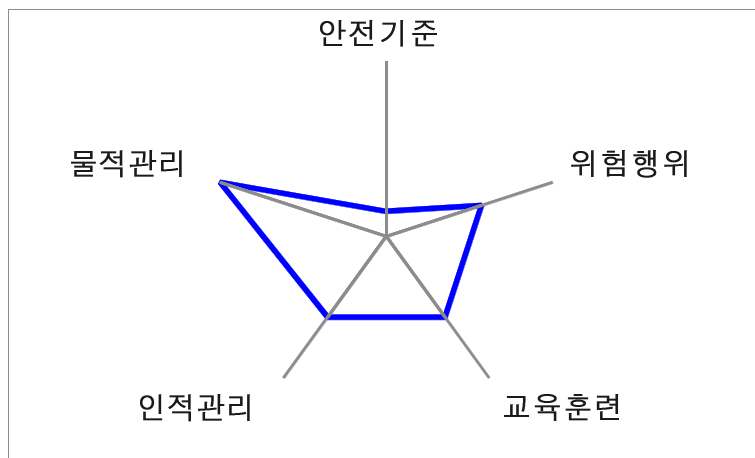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발코니로 나가 실족하여 발생한 사고	건물 외벽 발코니 위험성 제거 등 안전기준 마련
물적관리	창대높이 1.2m 이하 안전바 미설치 창문 밖 추락 위험 경고 미부착	안전바 설치(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 창문 밖 추락 경고 표시 부착 필요
교육훈련	창문, 발코니 등에 올라가는 것의 추락 위험성 교육 미흡	위험성 인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위험행위	창문 밖으로 나가는 행위의 위험성 인식 실패	위험한 행위를 자제할 수 있는 판단력 배양 필요

## 11 낙마하여 머리 부상

(고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12.14. 9시 30분경 승마 수업시간에 학생이 말을 타다 말이 뒷발길질을 하는 바람에 무게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승마장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사고
- 사고 직후 119 이송하여 대학병원에서 CT 촬영 결과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발생 진단
- 2013.7.1.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62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9급, 신경계통 기능 장애)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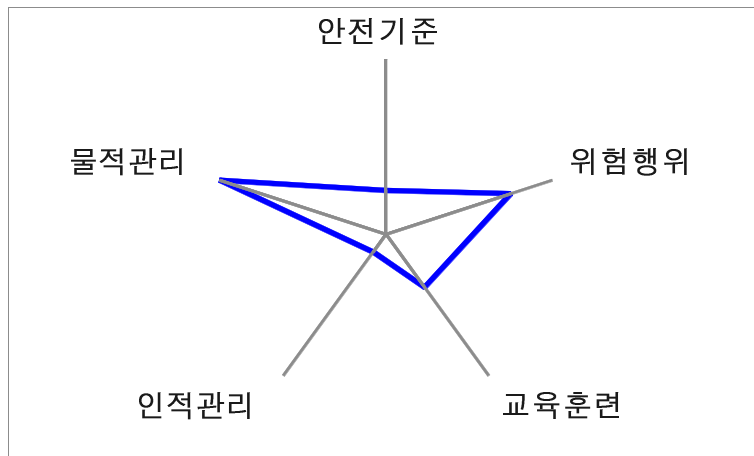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말에 대한 관리 미숙으로 예상치 못한 과민 행동을 말이 보임	말 상태에 대한 세심한 관리로 통제 강화
인적관리	승마교육은 고위험 활동임에도 교사 1인 배치	최소 2인 이상의 교사 배치로 위험 대비 필요
교육훈련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대처능력 제고 교육 강화

## 12 | 자전거로 하교하던 중 배수로에 빠져 비장파열

(고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7.7.29. 23시 10분경 학생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운동장을 지나 학교 후문으로 향하던 중 후문 앞 동편운동장 철재 배수로 덮개가 파손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위를 지나가다 자전거 앞바퀴가 배수로에 빠져 그 충격에 핸들모서리에 복부를 부딪치고 앞으로 굴러 넘어지면서 비장파열 부상을 입은 사고
- 2012.2.1.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화해권고 결정금 56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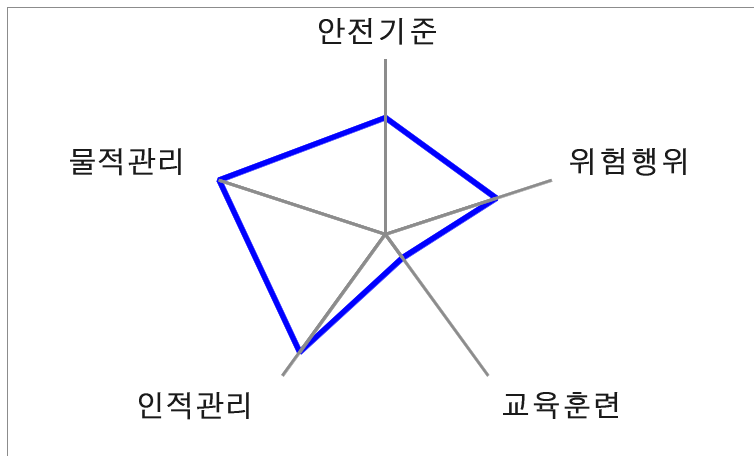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철재 배수로 덮개가 파손되어 있었고, 조명이 없어 어두웠음 시설물 하자 경고 표지 미설치	위험 요소 사전 제거 및 자전거 이용 도로 조명 점검 철저 시설물 하자 경고 표지 설치
교육훈련	야간 자전거 운행 안전교육 미흡	야간 자전거 운행 안전교육 철저
위험행위	야간 자전거 운행 시 위험 인식 실패	야간 자전거 운행 시 위험 대비 안전 운행 철저

## 13 | 등교 중 교통사고로 사망 및 부상

(고등학교 1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9.9.17. 7시 45분경 학교 급식실 신축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15톤 덤프트럭 운전자가 보도가 없는 급경사 도로를 감속하지 않고 내려가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내려와 우측으로 밀리는 바람에 등교 중이던 학생 3명을 치어 1명은 두개골 파열로 사망하고, 2명은 부상을 입은 사고
- 사고 이후 도로에 보차도 구분 공사를 통한 통학로 환경 개선
- 2012.6.29.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66백만원 지급 (자동차 보험사가 지급한 402백만원 중 교육청 책임 금액)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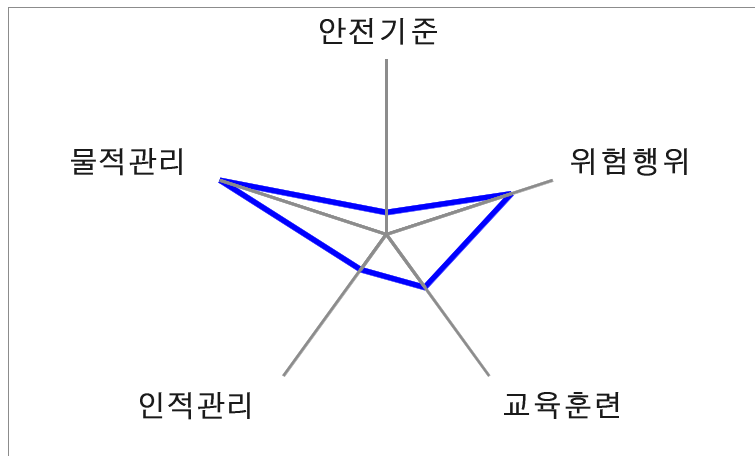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5개 학교가 공동으로 통학로 이용하며 통학로 기준 미비	안전한 통학로 기준 마련 필요
물적관리	급경사 도로이며 보도 미확보 차량과속 방지턱 미설치	경사 조절 및 보도 확보 필요 차량과속 방지턱 설치
인적관리	등하교시 공사차량 운행금지 약정 미준수	등하교시 공사차량 운행금지 약정 준수
위험행위	운전자 제동장치 조작 미숙	제동장치 강화 및 조작 철저

## 14 창문에서 추락하여 뇌출혈

(고등학교 2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10.27. 10시 19분경 체육수업을 위해 학생들이 체육복으로 갱의 후 나간 뒤 학급임원으로서 문단속을 위해 혼자 남아 있다가 추락한 채로 발견
- 상세 원인 불분명하나 창밖을 보다가 무게중심이 창밖으로 쏠려 추락 추정
- 교실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110cm로 조금만 머리를 내밀어도 몸 전체가 창문 밖으로 쏠려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나 안전봉 미설치  
(학교안전법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상 창대 높이가 실내바닥면에서 1.2m 이하인 경우 외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
- 2015.9.8.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26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창문높이가 1.2m 이하임에도 안전봉 미설치 추락 위험 경고 표시 미설치	창문높이가 1.2m 이하인 경우 안전봉 설치 의무화 추락 경고 표시 부착 필요
교육훈련	창문 등 추락 위험 시설물 이용 교육 실시 부족	위험성 인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위험행위	피해학생 신장이 151cm에 불과해 무게 중심이 창밖으로 쏠려 추락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이용 숙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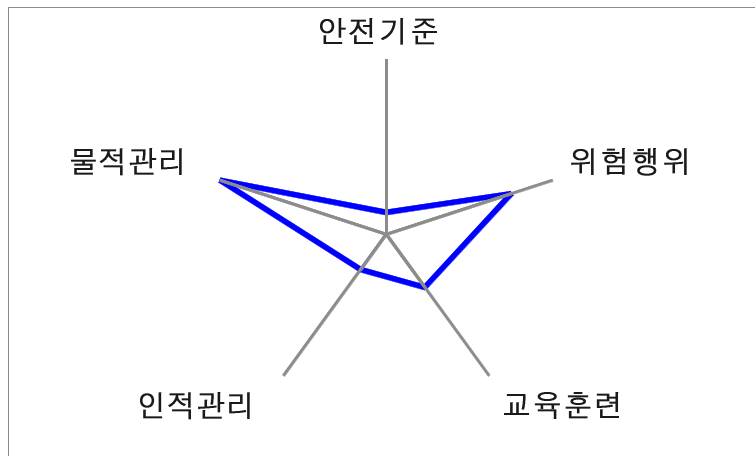


## 15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부상

(고등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2.5.2. 12시 45분경 학생이 점심식사 후 학교 구내매점에 슬리퍼를 신고 음식물을 구입하러 3층 계단을 내려가던 중 물기가 있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무릎반월상관 연골 및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
- 2013.9.13.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3백만원, 장해급여 50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슬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10%, 과실상계 2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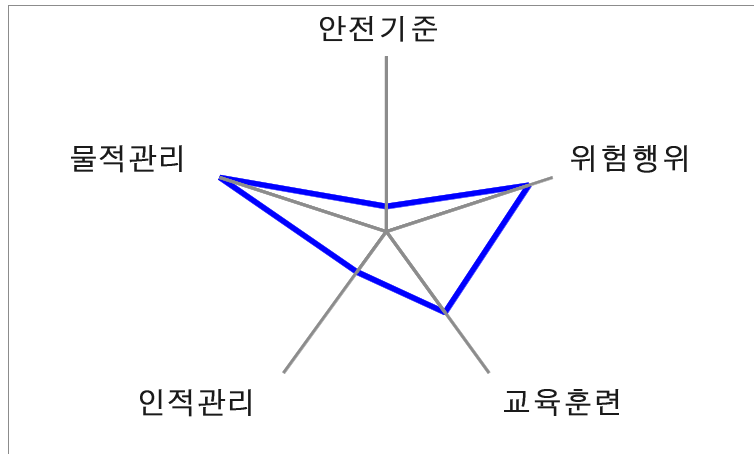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계단 물기로 인한 낙상 사고 계단 미끄러짐 주의 경고 미설치	물기 제거 등 계단 관리 철저 미끄럼 위험 경고판 부착 필요
교육훈련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에서 계단 통행 중 사고 발생	계단 통행 시 안전교육 강화
위험행위	계단에서의 위험성 인식 실패	평상시 조심하는 생활지도 강화

## 16 | 난간에서 추락하여 부상

(고등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3.4.25. 20시경 학생이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 중 잠이 온 나머지 4층 창문 바깥 난간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고 싶은 충동을 느껴서 4층 창문을 통해 난간으로 나가던 도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사고
- 2013.11.1.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62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 6급, 노동력 상실률 70%, 과실상계 5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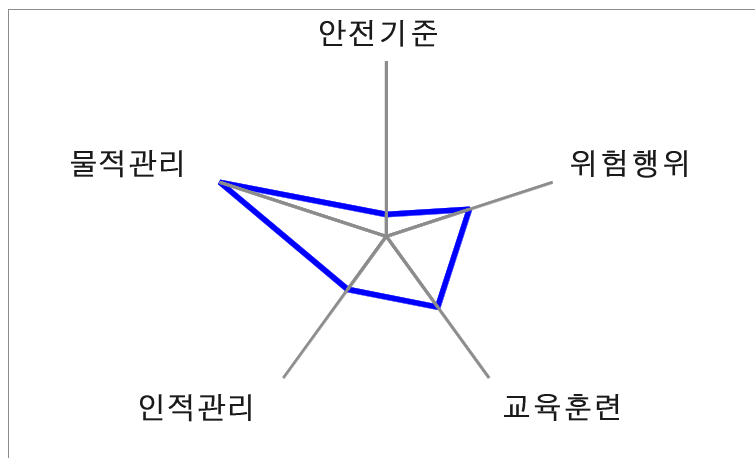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3층으로 창문 높이가 낮거나 넘을 수 있고 안전봉 미설치 창문 아래 벽체에 추락 위험 경고 표시 미설치	안전봉 설치 필요 경고 표시 부착 필요
교육훈련	창문, 발코니 등에 올라가는 것의 추락 위험성 교육 미흡	위험성 인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위험행위	학업 스트레스로 위험 인식 실패로 4층 창문을 넘는 위험한 행동 실시	학업 부담 완화 노력 필요

## 17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고등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2.10.18. 11시경 3학년이 반별로 체력검사를 하였고, 체력 검사 종목 중 50m 달리기를 하다 도착지점 앞 운동장 바닥의 요철에 걸려 넘어진 사고
- 사고 후 무릎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사고 발생 당일 병원에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몇 일후 병원 검사 결과 십자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 시행
- 2013.9.12.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61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다리 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15%, 과실상계 1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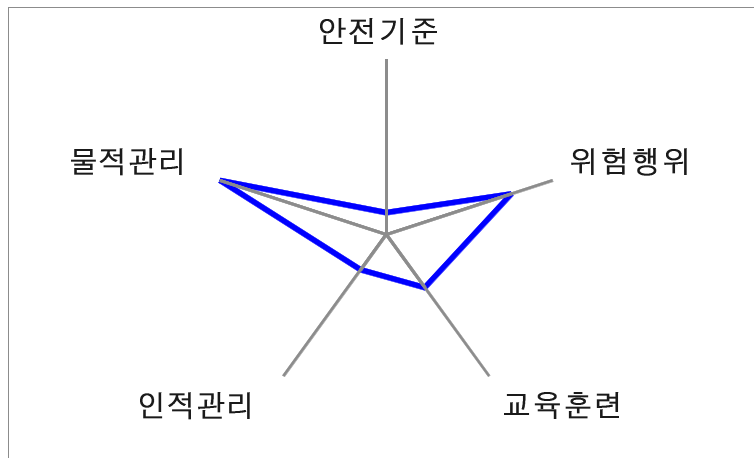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운동장 바닥에 돌출된 요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운동장 위험 요인에 대한 수시 점검 및 관리 필요
교육훈련	돌발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대처능력 저하로 사고 발생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 18 | 창문에서 추락하여 부상

(고등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3.9.11. 15시 18분경 학생이 정규수업 종료 후 방과 후 수업을 위해 3학년 2반 교실로 이동하여 4층 창틀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창문 밖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
-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11백만원(2013.12.26), 장해급여 212백만원(2014)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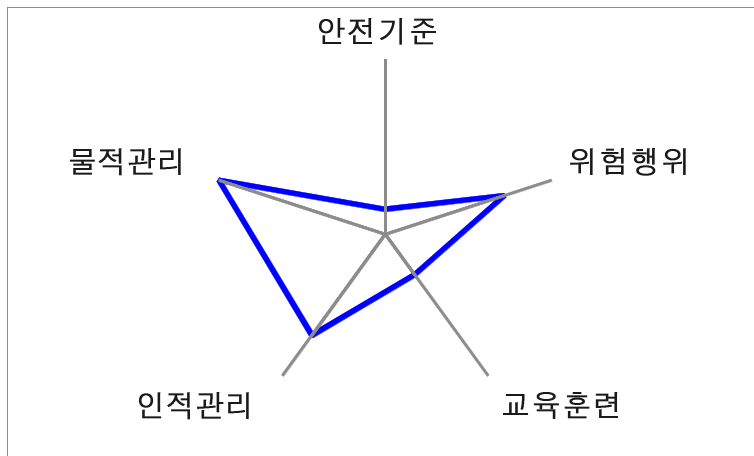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4층이면서 창문에 앉거나 넘을 수 있음에도 안전봉 미설치 창문 아래 벽체에 추락 위험 경고 표시 미설치	안전봉 설치 필요 경고 표시 부착 필요
교육훈련	창문 등 추락 위험 시설에 올라가는 것의 위험성 교육 실시 미흡	위험성 인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위험행위	추락의 위험성 인식 실패	평상시 조심토록 생활지도 강화

## 19 학부모 명예교사가 나무의자 제작 중 눈 부상

(초등학교 학부모,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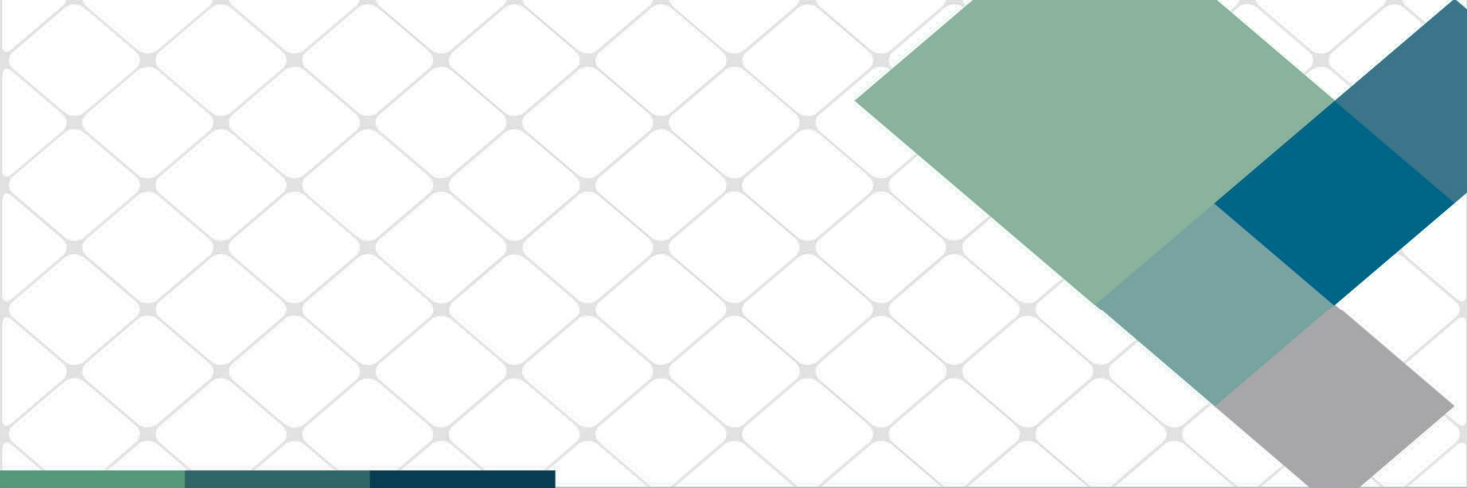
- 2009.9.22. 14시 45분경 학교 문화예술 주기집중교육의 이틀째 날 5-7교시 특별활동시간에 나무를 이용한 실생활에 필요한 다용도 나무의자 만들기 시간에 학부모 명예교사가 연마석의 날이 깨지면서 날의 파편이 왼쪽 이마 부분을 때려 출혈과 함께 망막 파열로 왼쪽 눈의 실명을 가져온 사고
- 2013.4.5.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조정 결정금 198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8급 한눈 시력 상실 장애, 노동력 상실률 5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인적관리	장비 상태 사전 점검 소홀 및 안구 보호를 위한 고글 미착용	장비 사전점검 철저 및 고글 등 보호장구 착용 필수
교육훈련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실시
위험행위	위험한 장비 취급 시 위험성 인식 실패	위험한 장비 취급 시 조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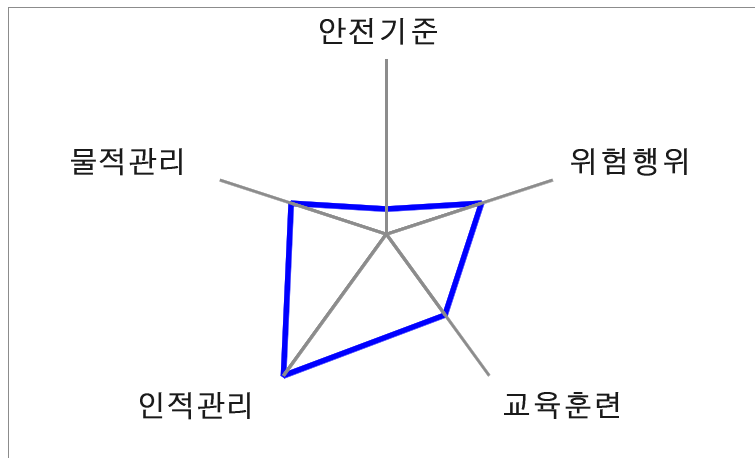
## Ⅲ. 인적관리 요인

## 01 | 특별활동으로 물놀이를 하던 중 사망

(유치원,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2.7.10.부터 8.30.까지 유치원 계획 하에 매주 화요일 금요일 합천에 있는 실내수영장에서 하절기 정규 수업의 일환으로 물놀이 교육을 진행
- 7.13. 2차 교육활동으로 14시 인솔교사 3명과 유치원생 20명이 어린이 풀장으로 이동하여 물놀이 안전수칙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준비운동 및 수영장에 비치된 키판을 나눠준 후 물놀이 실시
- 15시쯤 인솔교사는 아이들을 순서대로 간식을 먹이는 도중 두 명의 원아가 뛰어와 친구가 물에 빠졌다고 알려왔고, 인솔교사는 바로 사고 장소로 뛰어가 사고 원아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및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
- 2012.9.25. 학교안전공제회 유족급여 193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유아의 신장에 비해 깊은 수심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신장이 작은 유아를 고려한 수심 다양화 필요
인적관리	유아를 보호관리할 지도교사가 적었고 안전요원 미배치	보호관리 시 사각지대 요인 파악 및 안전요원 배치 점검 필수
교육훈련	신장이 작았음에도 수심이 깊은 곳에서 활동	수심을 고려하여 놀이 시 주의토록 안전교육 실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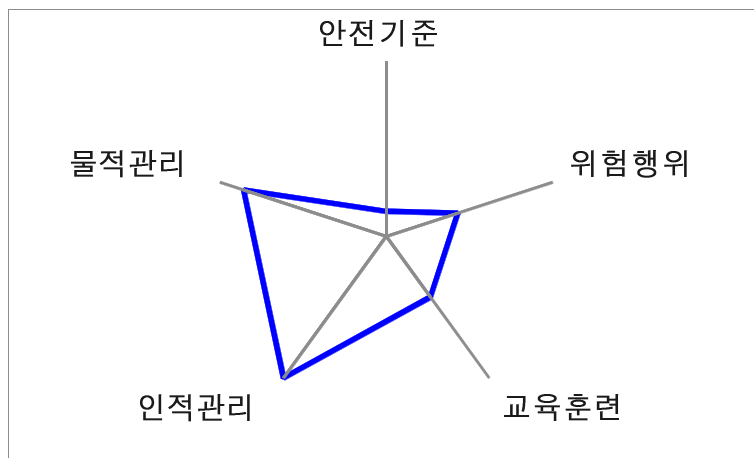


## 02 | 체험학습으로 물놀이를 하던 중 사망

(초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2.8.10. 학생은 담당교사, 방과 후 수업교사 등 교사 6명 및 학부모 1명의 인솔 하에 같은 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재학생 88명과 함께 체험학습에 참여
- 14시 40분경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자연하천에서 뗏목타기 및 물놀이 체험학습을 하던 중 수심 약 110cm의 지역에서 혼자 뗏목 위에서 다이빙을 하며 놀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
- 주변 학생들은 사고 학생을 꺼낸 뒤 안전요원을 불렀고, 교사들은 즉시 119신고 및 응급조치를 한 후 도착한 구급차로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
- 2013.2.20.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247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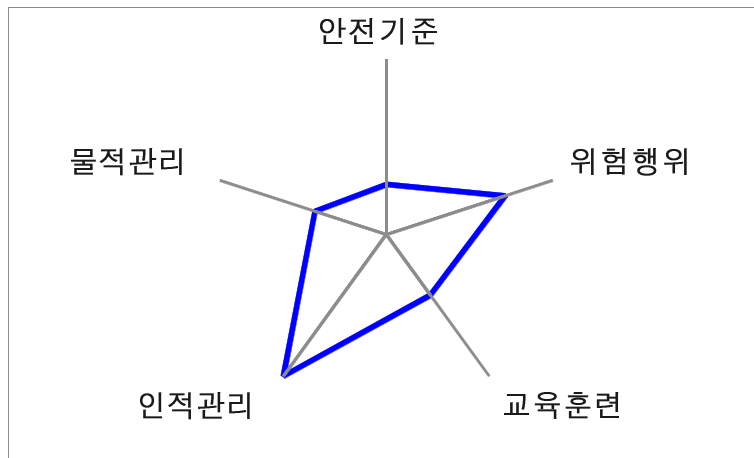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학년별 물놀이 구역 미설치 위험구역 미표시	학년별 놀이 구역 설치 수심별 경고 표시 부착 필요
인적관리	구명조끼와 구명튜브 등 미구비 수심이 깊은 곳에서 2~3차례 놀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지도 미비	구명장비 등 안전용구 지급 필요 위험한 곳에서의 놀이 통제를 통한 안전한 놀이 지도 필요
교육훈련	수상 안전교육 지도 미흡	수상 놀이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위험행위	위험활동 중 개인 행동 중 발생	위험행위 중 단체지침 준수 필요

## 03 방화벽셔터에 깔려 부상

(초등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2.22. 9시 10분경 배드민턴 대회 참가를 위해 하룻밤을 지낸 대학교 기숙사에서 체육관으로 이동 중 사고 외 학생이 호기심으로 방화셔터를 작동시켰고 피해 학생이 그 밑을 지나다 깔려 미만성 뇌손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를 당한 사고
- 2013.7.31.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조정 결정액 135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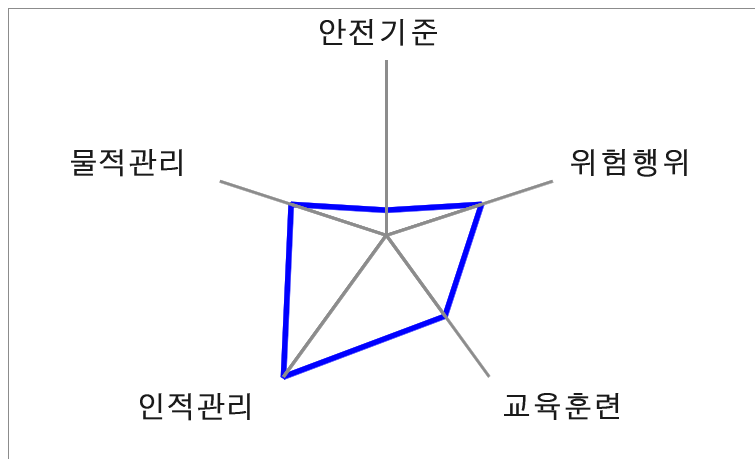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위험한 시설물임에도 누구나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한 구조물	방화셔터 설치 및 작동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물적관리	방화셔터 주변에 위험 표시를 인식이 용이하도록 미설치	방화셔터 주변 위험 표시 인식 용이도록 설치 필요
인적관리	초등학교 2학년의 저학년이 학교 외의 낯선 장소에서 이동함에도 인솔교사가 없었음	학생들이 낯선 곳에서 외부 활동 시 인솔교사가 반드시 입장하여 지도 필요
교육훈련	과도한 호기심으로 위험한 시설물인 방화 셔터를 조작하는 위험한 행동이 원인이 된 사고	교외 행사 방문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임의 접근 및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강화
위험행위	지나친 호기심으로 인한 사고	낯선 곳에서 조심하는 태도 배양

## 04 | 골프 시범 중 날아간 공에 맞아 부상

(초등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8.11.24. 17시 30분경 골프부 라운드 훈련 중 지도교사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 친 볼이 빗겨 나가 학생의 이마를 맞혀 발생한 사고
- 사고 후 지도교사가 학생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 후 검사를 받음. 다음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뇌수술을 받음
- 2012.3.2.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100백만원 지급 (외상 후 스트레스 후 유장해, 노동력 상실률 25%)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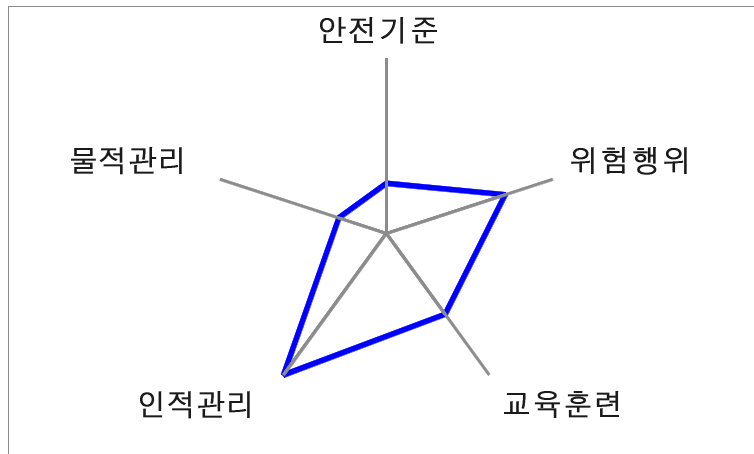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악천후로 골프장이 조기 폐장하여 어수선한 상황	교육활동 장소의 기상여건 고려
인적관리	지도교사 주변 확인 않고 티샷	티샷 시 안전수칙 이행
교육훈련	티샷 시 안전거리 확보 의무사항 미이행	티샷 시 안전거리 확보를 통한 안전 사고 예방

## 05 천식으로 인한 의식불명

(초등학교 4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4.28. 13시 10분경 천식이 있던 학생이 복통으로 보건실을 방문하여 한방 소화제를 처방 받은아 복용 후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던 중 천식 발작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은 사고
- 사고 후 보건교사가 119신고 후 심폐소생술 실시. 구급대원이 심장패치(제세동기)로 심장리듬 확인 후 이물질 제거하고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과 보건교사 심폐소생술하며 병원으로 이동(구급대원은 흉부 압박, 보건교사는 엠부백). 병원 도착 후 기계호흡장치, 심폐소생술, 약물치료 후 심장, 맥박 돌아왔으나 의식 불명
- 2013.3.4.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298백만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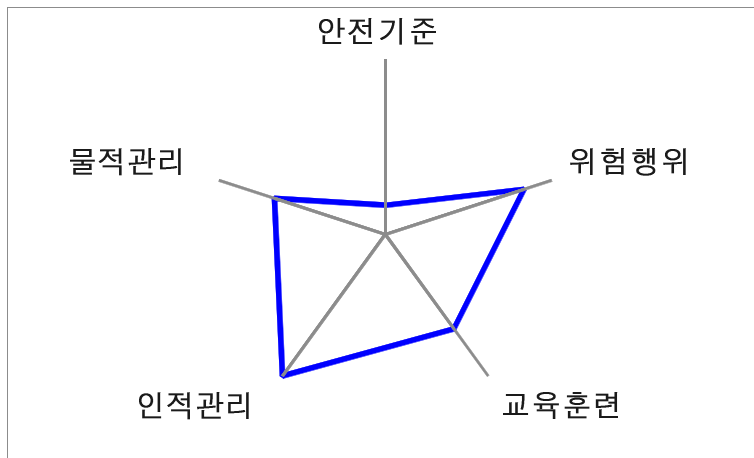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기왕증에 대한 감시시스템 미비	지병 발병 감시시스템 마련 필요
인적관리	기왕증(천식)으로 인한 사고	기왕증 학생 의약품 정보 제공 CPR 실시 또는 자동제세동기 비치
교육훈련	기왕증 복용 적합 약품 미숙지	복용 적합 약품 숙지 교육 실시
위험행위	천식의 질환 학생이 한방약을 복용함으로써 발작이 발생한 사고	기왕증 환자는 복용 가능한 약물에 대해 스스로 숙지 필요

## 06 | 실험 중 알코올 통이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사고 (중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8.19. 9시 50분경 영재원 1학년 학생들이 산출물발표대회 준비를 위해 지도교사에게 과학실에서 자기주도적인 실험활동을 요청
- 학생들이 실험하는 동안 지도교사가 잠깐 자료를 찾기 위해 사무실로 간 사이에 알코올 램프 속의 알코올이 떨어지자 다른 램프를 가져다 사용하였으나 램프에 불이 잘 붙지 않자 한 학생이 알코올을 넣어 충전시키자고 제안, 3층 물상실 구석에 숨겨져 있는 알코올 통을 들고 왔음
- 알코올 통의 콕을 열어 충전시킨 후 통을 치우고 램프에 점화기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잘 붙지 않아 여러 차례 점화하여 불을 붙였는데 잠시 후 알코올 통 쪽에서 소리가 나 돌아보니 알코올통의 콕 쪽에 불이 붙은 것을 본 순간 ‘핑’하고 폭발하면서 학생들 쪽으로 불꽃이 쏟아져 화상을 입은 사고
- 2013.10.7.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18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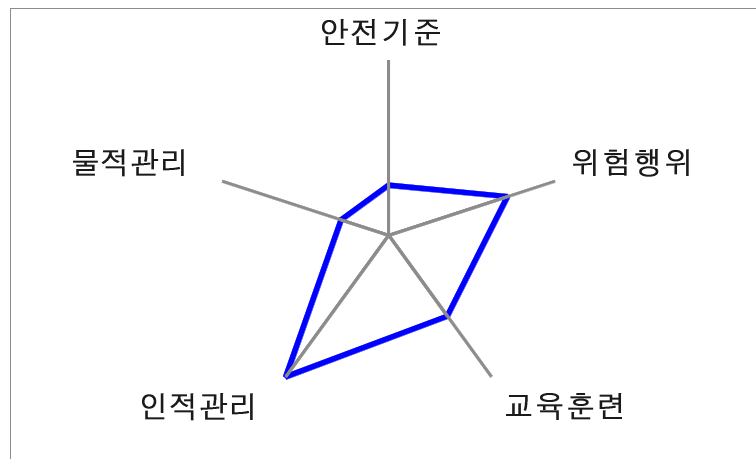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화재·폭발 위험물 관리 미흡	화재·폭발 위험물 잠금장치 보관
인적관리	지도 교사 이석 시 위험 행동	실험활동 시 지도교사 입장 필수
교육훈련	위험물 취급 시 교사 통제 미준수	위험물 취급은 반드시 교사 통제를 따라 시행토록 교육 필요
위험행위	위험물 임의 취급으로 인한 사고	위험물 취급 시 조심 자세 배양

## 07 | 배드민턴을 치던 중 셔틀콕에 맞아 눈 부상

(중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3.10. 12시 20분경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던 중 과학교사가 참여하여 함께 경기를 진행함
- 학생의 키를 넘겨 넘어온 셔틀콕을 과학교사가 받아쳐 학생의 왼쪽 눈 정면으로 맞아 상세불명의 망막장해 상해를 입은 사고
- 2013.12.30.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36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3급 망막장해, 노동력 상실률 1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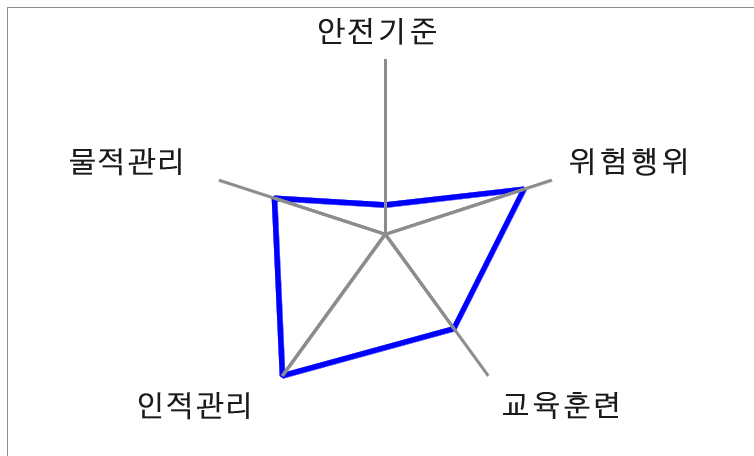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인적관리	중학교 1학년의 저연령임에도 과도한 힘이 가해져 사고 발생	학생의 연령·체격·운동 반응 속도 등을 고려하여 지도 필요
교육훈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사전 교육 미실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사전 교육 필요

## 08 양궁 훈련 중 화살에 맞아 눈 부상

(중학교 1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9.2.26. 21시 20분 경 양궁 훈련시간 화살을 수거하러 가던 중 활을 쓰고 있는 다른 학생들 앞쪽으로 지나다가 날아온 화살이 눈에 쏘힌 사고
- 사고 후 양궁부 주장이 바로 119에 신고 및 코치에게 보고하였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코치와 감독은 연락 받고 바로 학교에 도착.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사고 상황 안내 후 병원 후송
- 2012.1.17.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226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8급 한쪽 눈 실명 장해, 노동력 상실률 5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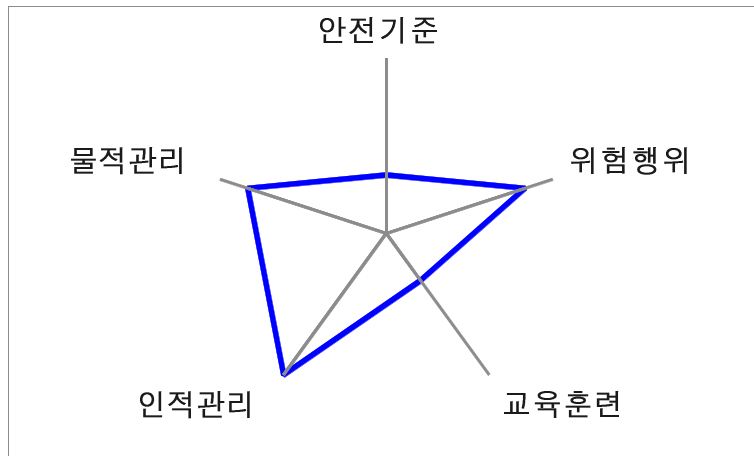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동절기 추위(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7도)와 피로(오후 9시)로 집중력 저하된 상황에서 연습 강행	기온과 피로도를 고려하여 훈련 실시
인적관리	사고 당시 코치와 감독 부재	훈련 시 코치와 감독 반드시 입장
교육훈련	양궁 훈련 시 안전수칙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인한 사고	양궁 훈련 시 보행 및 양궁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교육 철저
위험행위	위험지역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 활동 시 위험성 인식 강화

## 09 야구 방망이에 맞아 입술 열상 및 치아파절

(중학교 2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3.10. 9시 30분경 체육수업 시간 학교 체육관에서 야구와 농구로 나누어 수업을 하던 중 굴러가던 농구공을 주우러 달려가던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야구 놀이를 하던 학생이 나무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같은 반 학생 얼굴 치아 부분을 맞춰 입술 열상 및 앞니 치아 4개가 파절된 사고(사고발생 후 바닥에 떨어진 치아 4개와 부서진 치아 조각을 들고 구급차로 이동,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수술을 받음)
- 응급수술 후 확인 결과 아랫니 3개, 윗니 1개가 빠지고, 아랫니 4개, 윗니 3개가 추가로 흔들려 보철치료, 입술 봉합수술 및 지속적인 신경치료가 필요
- 2012.11.13.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57백만원 지급 (치료비 및 장애급여)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야구와 같은 위험한 운동임에도 펜스와 같은 안전장치 미설치	위험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안전장치 설치 필수
인적관리	성격이 다른 복수의 운동 실시로 인한 동선(動線) 중복	개별 운동 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경계 구분 철저
교육훈련	운동 중 위험요인에 대한 식별 능력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미흡	위험성 식별 능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강화
위험행위	혼잡한 상황에서 야구 배트를 휘두르다 발생한 사고	야구 배트 조작 시 안전거리 확보 등 조치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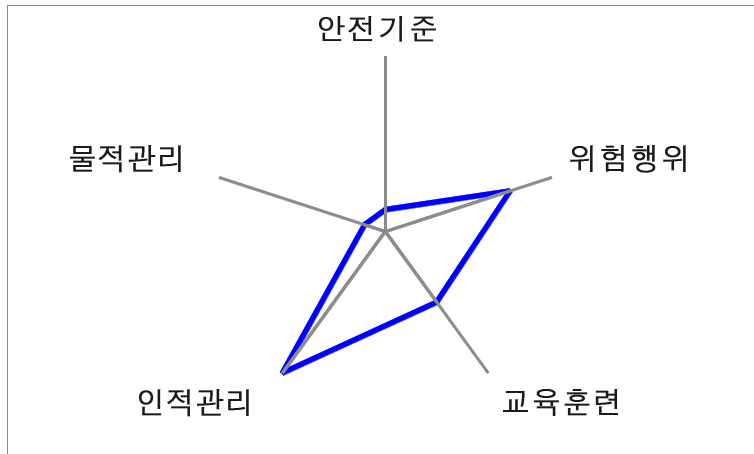


## 10 | 복싱 타격훈련 중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중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7.7.30. 16시 50분경 복싱 타격훈련 중 방어 역할을 하던 학생이 두부 손상을 입었고 휴식 시간에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하고, 사고 당일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응급개두수술을 받은 사고
- 2013.7.23.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91백만원 지급 (중추신경계 장애, 노동력 상실률 22.5%, 기왕증 관여도 1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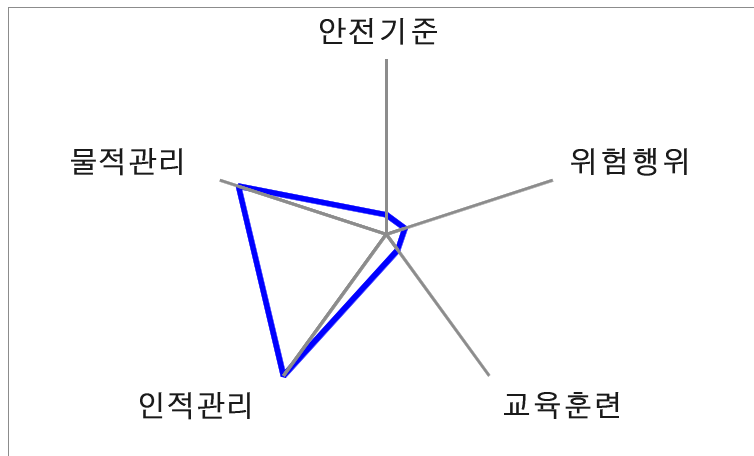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인적관리	피해학생(중2, 158cm, 48kg)은 보호 장비인 헤드기어 미착용	복싱 타격훈련 중에는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토록 지도
교육훈련	훈련 중 지나치게 흥분하여 과도한 힘이 가해져 발생한 사고	과격한 운동 시에는 흥분하지 않고 자제하도록 교육 및 지도 필요
위험행위	체격이 큰 학생(중3, 170cm, 70kg)으로부터 받은 타격의 충격이 원인이 된 사고	격한 훈련 시 타인과 자신의 신체 보호를 최우선하는 자세 배양

## 11 시상식 중 폭죽에 맞아 눈 부상

(고등학교 2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5.20. 16시 30분경 학교축제 합창 시상식 진행 도중 시상식 무대 앞 왼쪽에 설치된 에어컨 주위에 서 있던 피해학생이, 최우수상이 발표됨과 동시에 에어컨에서 에어샷이 발사되어 좌측 얼굴에 맞는 사고로 왼쪽 눈의 망막박리의 상해를 입은 사고
- 2011.9.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204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8급 한 눈 실명 장해, 노동력 상실률 5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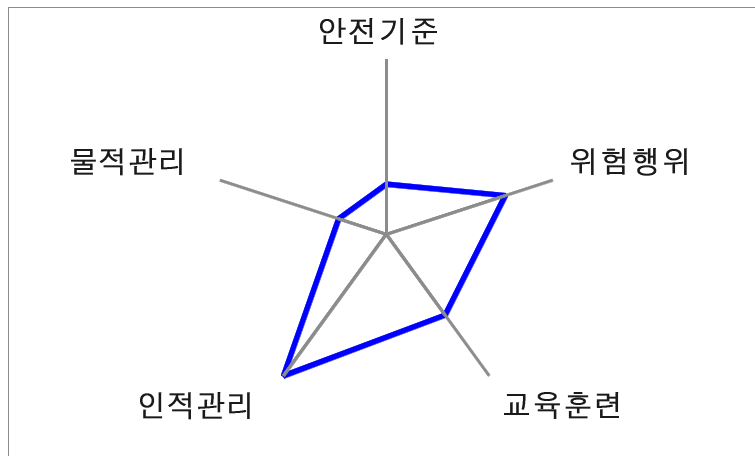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에어컨 주변에 접근금지 펜스 설치 등 안전문제 미흡 에어컨 주변 접근금지 경고 표시 미부착	에어컨 주변 접근금지 펜스 설치 필요 접근금지 경고 표시 부착 필요
인적관리	지도교사 내지 안전요원 미배치	위험 지역 안전요원 배치 철자

## 12 야구 놀이 중 안면 부상

(고등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5.31. 18시 45분경 양궁 선수들이 양궁 훈련장에서 야구놀이를 하던 중 야구배트를 대신한 쇠막대를 휘두르다 놓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 학생의 오른쪽 안구 아래쪽과 코 부위에 부딪혀 안면 피부가 베인 사고
- 2013.6.7.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41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외모에 흉한 모양이 남은 장해, 노동력 상실률 15%, 과실상계 3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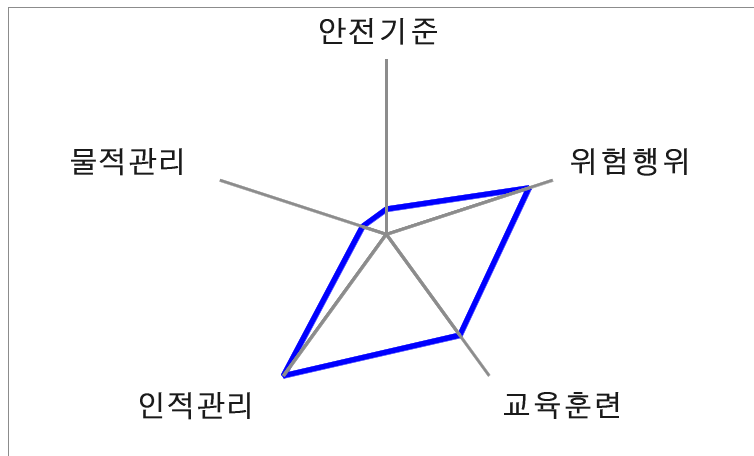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인적관리	야간에 양궁훈련장에서 야구경기를 쇠막대로 하다가 발생한 사고	장소와 시간에 적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교사의 보호관리 필요
교육훈련	양궁 훈련장에 부적합한 야구 놀이를 쇠막대로 하다가 발생한 사고	양궁 훈련장에서의 안전 수칙에 대한 철저한 교육 필요
위험행위	야간의 집중력 저하와 피로 누적으로 인한 위험 인식 실패	집중력이 저하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조심하는 태도 배양

## 13 체험학습 중 도시락을 먹다가 사망

(특수학교(중)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9.27. 12시경 선유도공원에 도착하여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고 전시회를 관람한 후 선유도공원 식당에서 단체로 구입한 도시락(새우볶음밥)과 학생이 가져온 죽을 함께 먹던 중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 등을 두드리는 등 응급처치 결과 작은 양파덩어리를 토한 후 정상호흡을 하였으나, 10분 후 119 도착 시 다시 창백해졌고 뇌사상태가 지속되다가 2011.10.30 사망한 사고
- 2012.2.21. 학교안전공제회 유족급여 26백만원 지급 (기왕증 기여도 4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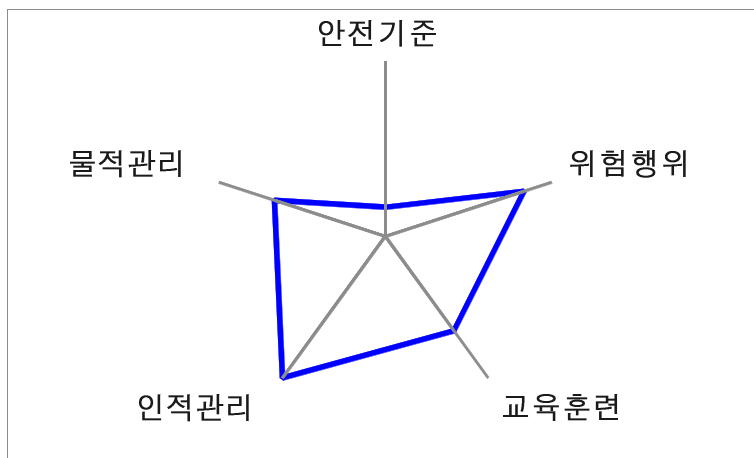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인적관리	학생의 씹는 능력에 적합하지 않은 음식물 제공 장애가 심한 학생에 대한 체험활동 임에도 보호관리 미흡	학생의 신체 능력을 고려한 음식물 제공 필요 장애가 심한 학생의 체험활동 시 학부모, 보조교사 추가 필요

## 14 | 자전거를 타다 안면 부상

(특수학교 3학년, 여, 정신지체2급)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3.22. 13시 55분경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기 학습을 시키기 위해 자전거 보관소에 관리되고 있는 삼륜자전거를 꺼낸 후, 피해학생 등에게 대기를 지시한 다음 한 명의 학생과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버스 주차장과 경사진 차량 통행도로를 거쳐서 운동장으로 이동
- 그러나 피해학생은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경사진 차량 통행도로를 따라 급가속으로 내려와 정면에 마주하고 있는 수위실 옆 창고 벽에 부딪쳐 심한 안면 부상을 당한 사고
- 2013.1.7.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22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자전거 보관소와 교육장소 간 경사로는 사고발생 위험 상존	자전거 보관소는 평지에 두어 안전한 교육 실시 환경 조성 필요
인적관리	특수학교임에도 교사 1인이 지도함으로 인한 보호관리 범위 초과	사고 위험이 있는 수업에는 보조교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
교육훈련	교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자전거 운행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교육 활성화 필요
위험행위	교사의 대기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단독 행동	교사 지시 이행 태도 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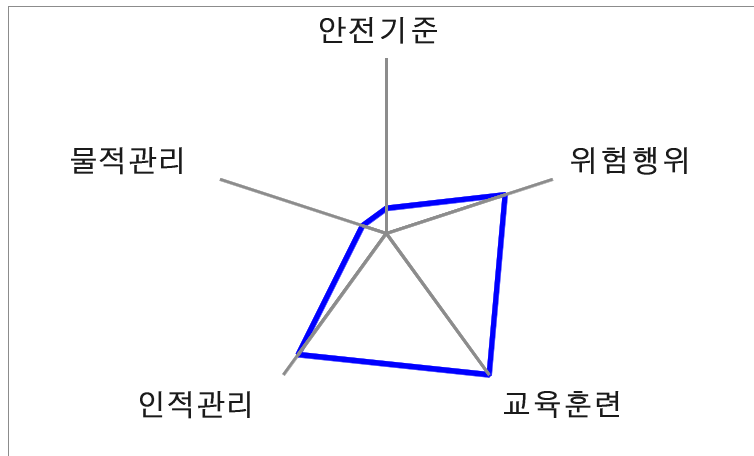
## IV. 교육훈련 요인

## 01 | 이어달리기를 하다 사망

(초등학교 4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2.11.7. 9시 27분경 1교시 합동체육시간에 이어달리기 수업을 하던 중 바톤을 이어받다 떨어뜨려 다시 줍고 있던 피해학생을 이어달리기를 하던 다른 학생이 덮쳐 호흡곤란, 의식 미약 및 팔 경직 등의 증상 발생
- 스포츠 강사는 학생을 보건실로 옮기고 보건교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스포츠강사는 곧바로 휴대전화로 119로 연락하였으나, 구급차 도착 시간까지 15~2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여 교감 차량으로 보건교사와 스포츠강사가 동승하여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송하는 중, 삼거리에서 구급대원에게 학생을 인계하고 보건교사가 구급차에 동승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구급차 안에서 사망
- 2013.2.8. 학교안전공제회 유족급여 265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인적관리	학생 사고 후 위급상황 시 119 신고 지연	위급상황 시에는 119에 먼저 연락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119 지도 하에 적절한 조치 시행
교육훈련	위험한 활동인 이어달리기 바톤 터치에 대한 사전 훈련 불충분	경기 전 바톤 터치 훈련 충분히 실시 필요
위험행위	정지 상태의 학생을 피하지 못한 사고	돌발의 위험 상태 대비 안전 조치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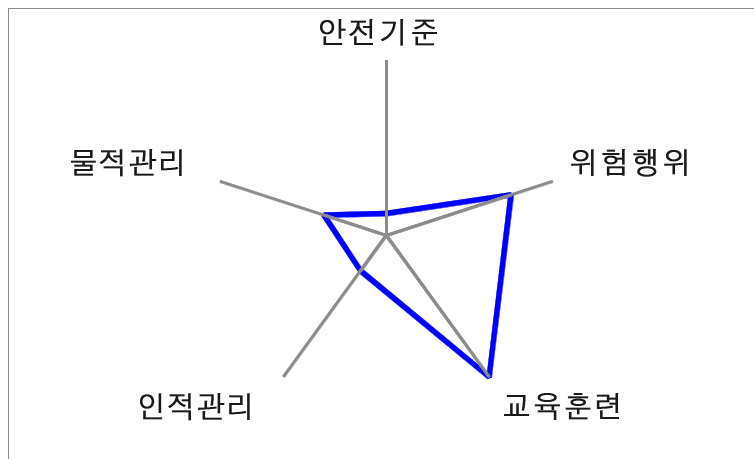


## 02 | 뽀뽀를 하다 넘어서 새끼손가락 부상

(초등학교 4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9.11.6. 13시 50분경 5교시 체육시간에 뽀뽀를 넘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사고
- 2012.3.20. 학교안전공제회 요양 및 장해급여 16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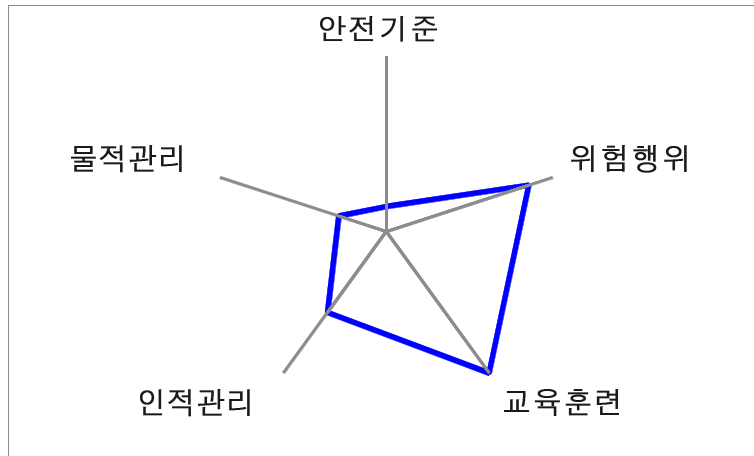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학생들의 신체 조건에 맞춘 뽀뽀 높이 조절 미흡	학생들의 신체 조건에 맞춘 뽀뽀 높이 조절 및 착지 주변 충격 완화를 위한 완충 매트 구비
교육훈련	사전 준비운동 및 위험대처 훈련 미흡	체육수업 전 준비운동 및 위험 대비 안전교육 철저
위험행위	격렬한 운동 시 신체 조절 능력 미흡	격렬한 운동 시 조심할 수 있는 태도 배양

## 03 | 단체줄넘기를 하던 중 넘어져 대퇴골 골절

(중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4.11. 14시경 5교시 체육수업 단체줄넘기에서 두 줄로 서서 줄을 넘던 중, 다른 학생의 발에 스친 줄이 피해학생의 발을 걸어 공중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져 좌측 고관절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함
- 2013.7.5.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56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다리 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15%)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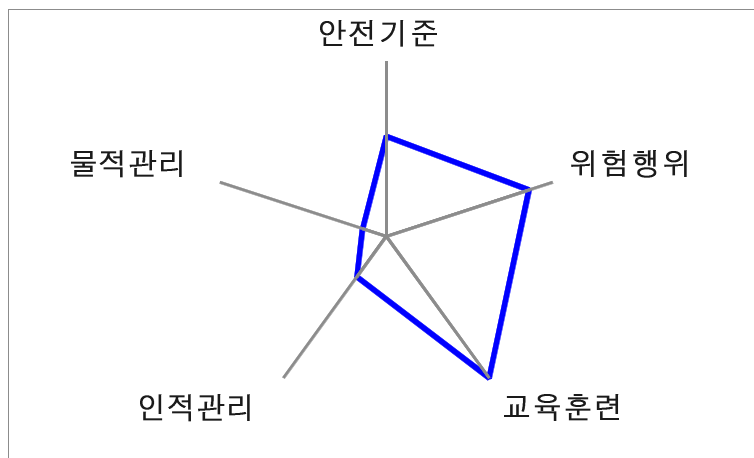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사전 준비운동 및 줄넘기 중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부족	사전 준비운동 철저 및 줄넘기 중 안전 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 강화
위험행위	자신의 신체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신체 동작으로 인한 사고	자신의 신체 능력을 고려한 적절한 신체 동작으로 사고 예방

## 04 장난 중 책에 맞아 왼쪽 눈 실명

(중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3.4.11. 11시 40분경 쉬는 시간에 서로 장난을 치다 피해학생이 A 학생의 팔을 툭 치고 교실로 도망가자 A 학생이 쫓아가면서 들고 있던 책을 피해학생에게 던져 책의 모서리가 피해학생의 안경 렌즈에 맞아 렌즈 파편이 안구를 찔러 안구가 가로로 7mm가량 찢어져 좌측 눈이 실명한 사고
- 2013.11.13.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04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8급 한눈 실명 장애, 노동력 상실률 50%, 과실상계 5%, 배상책임보험금 수령액 86백만원 공제)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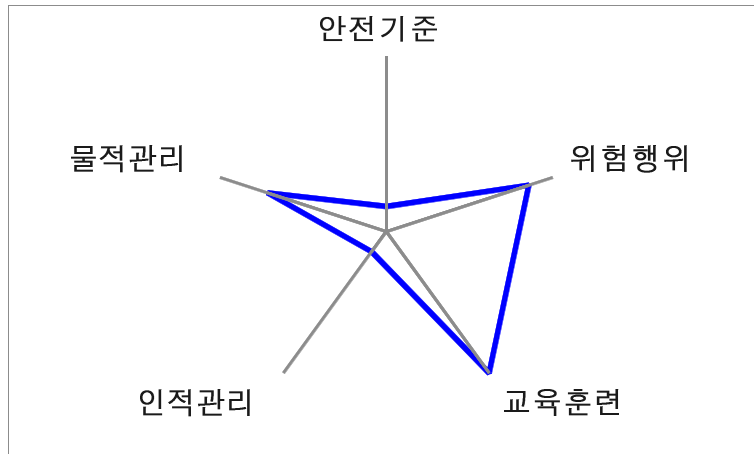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시간과 장소에 적합한 놀이 지도 매뉴얼 마련 필요
교육훈련	위험한 놀이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위험한 놀이 자제 및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위험행위	책을 사람을 향해 집어던지는 행위의 위험성 인식 실패	위험한 행위에 대한 인식 강화로 사고 예방 필요

## 05 양궁 훈련 중 꽂혀있는 화살에 부딪혀 눈 부상

(중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12.6. 15시 10분경 양궁 훈련을 하던 중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화살을 회수하러 가다 본인의 표적지(50m) 전에 1학년 학생의 표적지(30m)에 꽂혀있는 화살을 보지 못하고 화살 뒤끝(노크)에 눈 주위가 찢리는 사고
-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95백만원(2012.12.11, 2013.11.26)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8급 한눈 실명 장해, 노동력 상실률 5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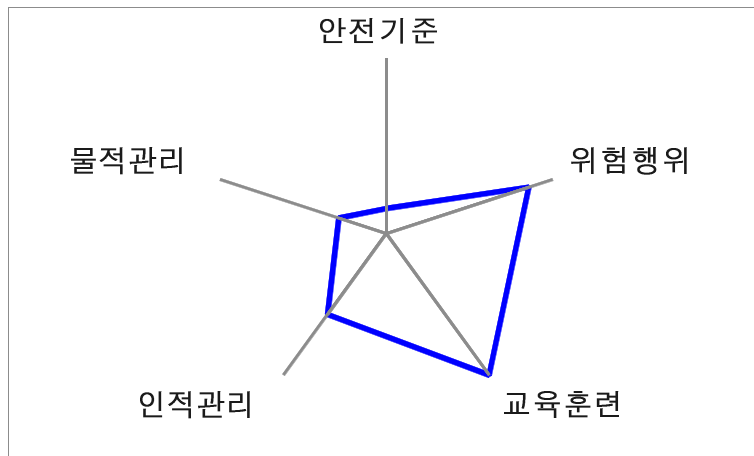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동절기 야외 훈련장의 낮은 온도로 인한 집중력 저하	위험성을 수반하는 양궁 훈련장의 적정 온도 유지 필요
교육훈련	훈련 중 불필요한 잡담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위험 수반 양궁훈련 중 안전 수칙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
위험행위	양궁 훈련 중 불필요한 잡담으로 인한 위험인식 실패	양궁 훈련 중 위험 요소에 대한 조심성 있는 행동 필요

## 06 | 육상훈련 중 넘어져 무릎 부상

(중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9.5.1. 16시 30분 육상 선수가 운동장에서 스피드 훈련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부딪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음
- 사고 후 곧바로 응급처치 실시,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한 후 귀가 조치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우측 슬관절부 염좌 진단 후 통원치료 실시
- 2012.2.2.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10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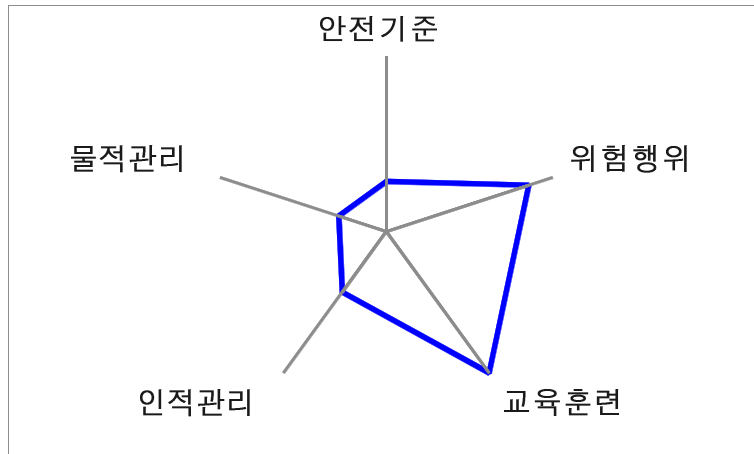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충분한 준비운동과 위험 예시를 통한 안전교육 미흡	격렬한 신체 움직임을 요하는 운동 시 사전 준비운동과 비상 시 대처 능력 교육 철저
위험행위	운동 중 과도한 신체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	운동 중 신체 동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심할 필요

## 07 유도경기 중 공격을 방어하다가 십자인대 파열

(고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9.13. 도지사배 유도대회에 출전하여 1회전 시합에서 상대편 선수에게 안다리 걸기 기술을 하던 중 상대 선수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가 뒤틀리며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
- 2013.3.8.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61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슬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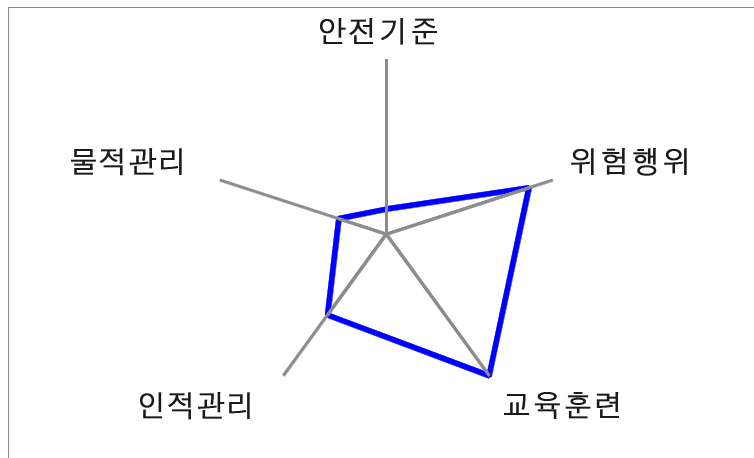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운동 중 과도한 신체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	충분한 준비 운동 및 신체 보호 방법 훈련 철저
위험행위	신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몸놀림으로 인한 사고	지나친 승부욕 자제 및 신체 능력을 고려하여 경기에 임할 필요

## 08 방과 후 인공암벽 수업 중 추락하여 허리 부상 (고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4.17. 17시경 피해학생은 교내 체육관 외벽에 설치된 인공암장에서 실시한 등산반 신입생들의 방과 후 학교 스포츠클라이밍 교육활동에 참가
- 인공암벽 오르내리기의 기본기술, 장비 사용법, 안전 수칙 등을 지도 받은 후 준비운동을 마치고 2회 완등을 하였고, 오후 5시 무렵 3회 도전을 하여 완등을 하고 하강을 하던 중 안전벨트와 로프를 연결하는 비너를 확실하게 잡지 않고 내려오다가 잡기지 않았던 비너가 오픈되면서 안전벨트와 로프가 분리되어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고
- 2013.4.12.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54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1급 척추 기형 장해, 노동력 상실률 20%, 과실상계 3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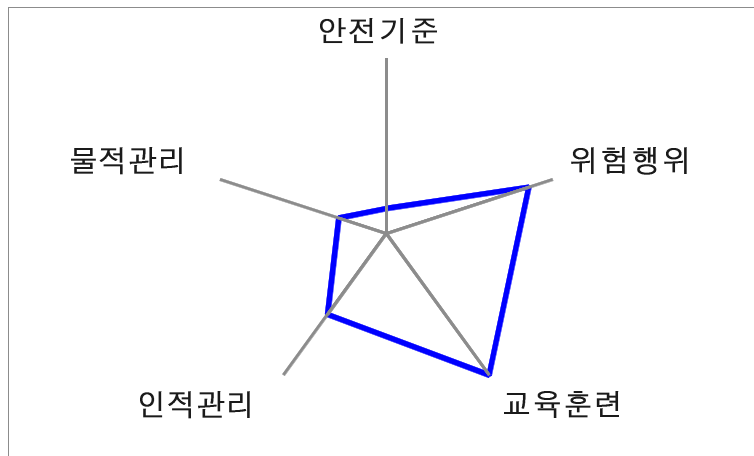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위험 활동 시 장비활용 및 대처능력에 대한 교육 미흡	위험 활동 중 안전교육 철저
위험행위	위험 활동으로 인한 피로도 및 집중도 감소로 인한 사고	위험 활동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한 안전 상태 확보 필요

## 09 | 배드민턴을 치던 중 갑작스런 무릎 통증

(고등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12.20. 9시 15분경 학생이 1교시 체육수업을 위해 교내 체육관에서 준비운동 후 급우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자신의 몸을 넘기는 셔틀콕을 받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 갑작스런 무릎 통증을 호소한 사고
- 2013.2.13.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63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슬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10%, 과실상계 2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충분한 준비운동과 위험 예시를 통한 안전교육 미흡	격렬한 신체 움직임을 요하는 운동 시 사전 준비운동과 비상 시 대처 능력 교육 철저
위험행위	운동 중 과도한 신체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	운동 중 신체 동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심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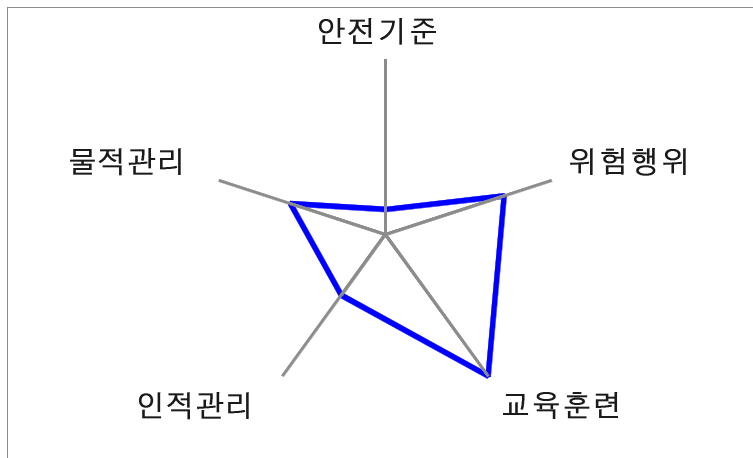


## 10 | 뜨거운 기름으로 인한 부상

(고등학교 2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6.4.28. 13시경 학교 예술제 행사에서 이동식 가스 렌지를 이용해 조리를 하던 중 가스 렌지를 학생 방향으로 당기다가 프라이팬이 떨어지면서 뜨거운 기름이 학생의 무릎에 쏟아져 부상을 입은 사고
- 2012.1.9.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70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추상장해, 노동력 상실률 15%, 과실상계 2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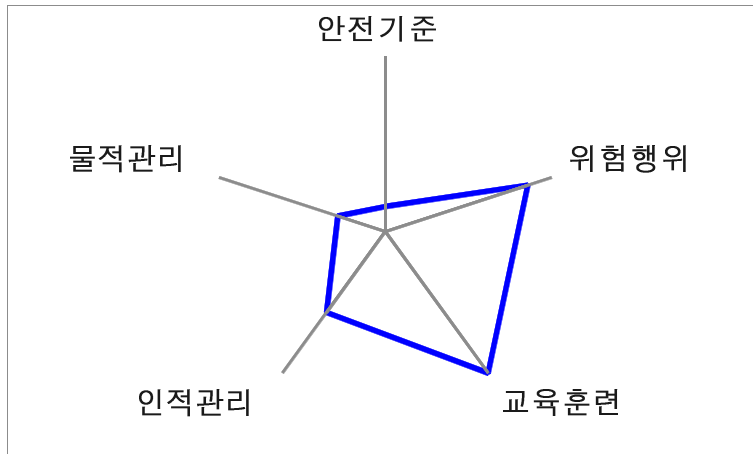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화재·폭발·화상 위험이 있는 조리 기구 안전 상태 미흡	폭발·화재 위험이 있는 교육 기자재 안전 상태 점검 강화
교육훈련	화재·폭발·화상 위험이 있는 조리 기구 사용 미숙	위험성 있는 교육활동 시 사전 안전 교육 강화 필요
위험행위	위험이 수반되는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관리 의무 미흡	위험이 수반되는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관리 강화

## 11 | 축구공을 밟고 넘어져 새끼손가락 부상

(고등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8.24. 12시 50분경 체육수업 전에 스트레칭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후, 축구경기를 진행하던 중 학생이 뛰어가면서 공을 밟고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땅을 짚다가 새끼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사고
- 2012.10.8.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20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4급 제5수지 폐용 장해, 노동력 상실률 5%)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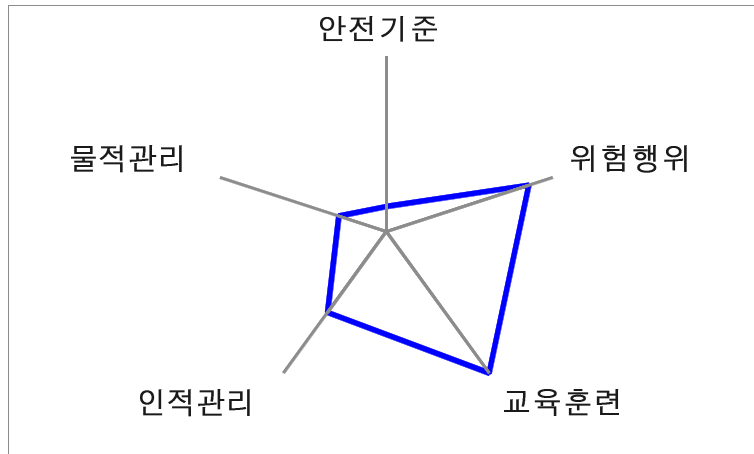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예상치 못한 위험 대비 부족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위험행위	격렬한 신체 활동 시 신체 조절 능력 미흡으로 인한 사고	축구 경기의 경우 과도한 신체동작 자체도록 지도 필요

## 12 상대 선수와 부딪혀 무릎 십자인대 파열

(고등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3.16. 9시 30분경 체육수업 중 축구경기를 하다 평소 축구시합을 관람하며 봐왔던 기술을 흥내 내다 상대 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
- 2012.9.28.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48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슬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10%, 과실상계 2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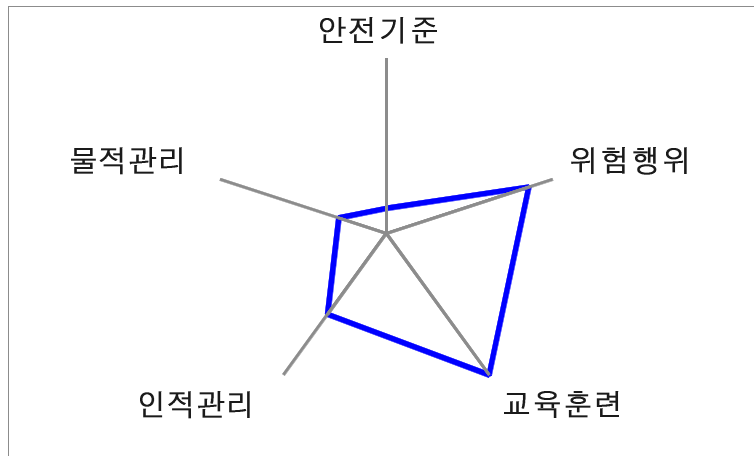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운동 경기 중 신체 능력에 적합한 경기 기술 적용 지도 미흡	운동전 충분한 경기 기술 교육 및 안전 사고 예방 교육 철저
위험행위	신체 능력을 초과하는 경기 기술을 흥내 내다가 발생한 사고	신체 능력에 적합한 경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판단력 필요

## 13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 부상

(고등학교 3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9.4.5. 일요일 8시 50분경 학교장이 허가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등교하던 학생이 본교 본관 건물 3층 계단을 오르던 중 넘어지면서 목 부위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후두 부위에 골절상을 입은 사고
-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조사 의견에 따르면 사고 당시 피해 학생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으며, 무거운 가방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의 무게 중심 동요 시 적절한 대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 2012.10.17.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10백만원, 장해급여 230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6급 언어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70%, 과실상계 2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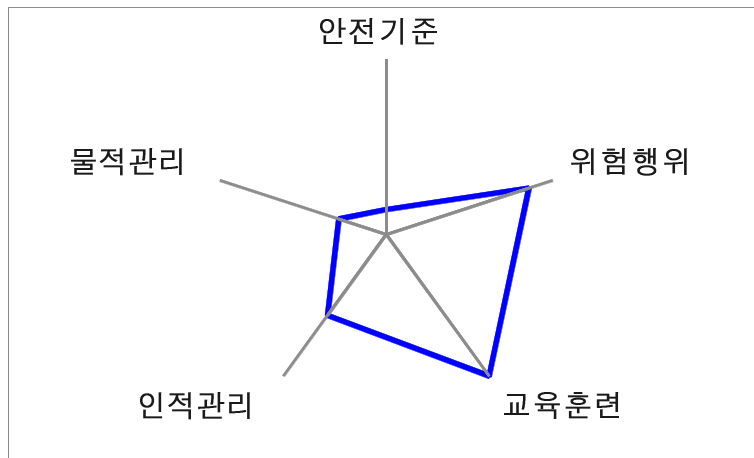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짐	만일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양손을 뺀 상태에서 계단을 통행토록 교육 필요
위험행위	학업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주의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

## 14 | 말타기 놀이 중 넘어져 무릎 탈골

(고등학교 3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6.24. 12시 20분경 친구들과 말타기를 하던 중 올라탄 학생들의 체중을 이기지 못해 넘어지면서 무릎이 탈골된 사고
- 2013.1.11.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72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0급 다리 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30%, 과실상계 3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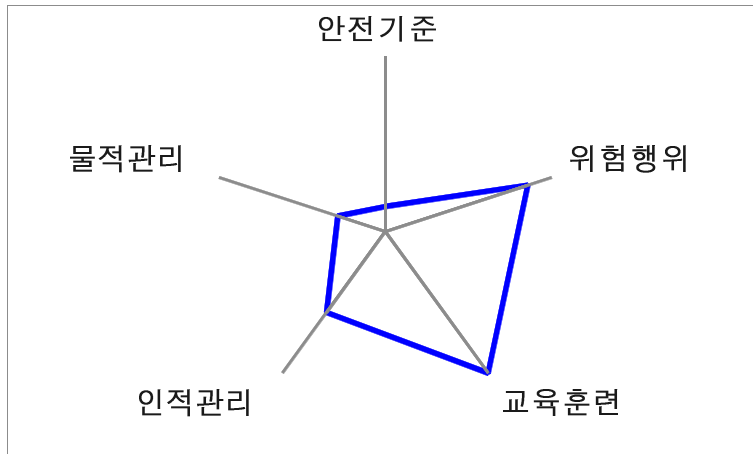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휴식시간 중 위험한 놀이 및 대처능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한 놀이를 자제하고 위험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위험행위	신체발육이 완성된 고등학교 여학생에 부적합한 놀이 중 사고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 실패 방지를 위한 주의력 강화

## 15 럭비 경기 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무릎 부상

(고등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3.24. 13시 45분경 학교 럭비부 선수인 피해학생이 2011년도 전국 춘계 럭비리그전에 출전하여 예선전 경기를 하던 중에 상대편 선수와 심하게 부딪혀 우측 슬관절에 심한 부상을 입은 사고
- 2012.2.22.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60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슬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15%)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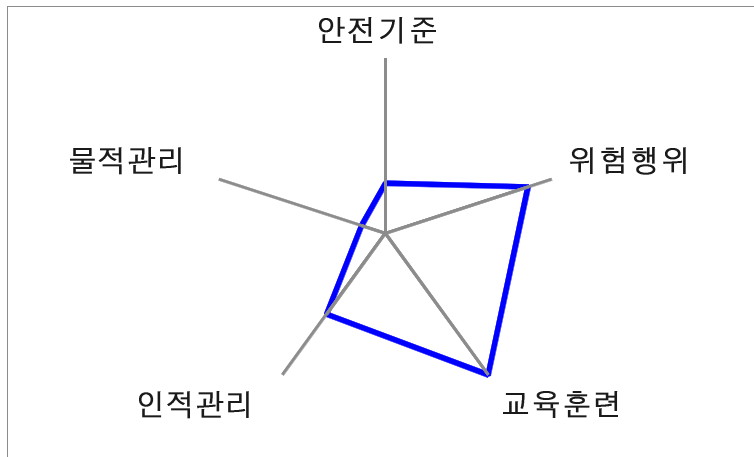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운동 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신체 보호 방법 훈련 미흡	충분한 준비 운동 및 신체 보호 방법 훈련 철저
위험행위	신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몸놀림으로 인한 사고	지나친 승부욕 자제 및 신체 능력을 고려하여 경기에 임할 필요

## 16 태권도 훈련 중 넘어져 팔 부상

(고등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2.2.8. 19시 30분경 태권도부 야간 훈련 중 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밀기 기술을 방어하기 위해 받아치기를 하려고 하다가 상대 학생의 발에 밀려 뒤로 넘어지며 양손으로 바닥을 짚었으나, 한 손에 체중이 실리면서 손목에 부상을 당한 사고
- 2013.5.15.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27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0급 손목 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3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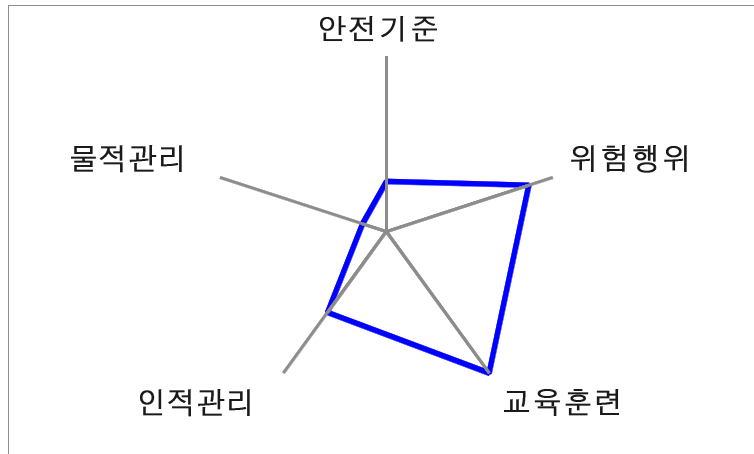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운동 중 과도한 신체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	충분한 준비 운동 및 안전한 낙법 훈련 철저
위험행위	집중력이 저하되고 피로도가 쌓이는 야간 훈련 중 발생한 사고	야간 운동 시에는 충분한 휴식과 준비 훈련으로 집중력 향상과 피로 회복 조치 필요

## 17 배드민턴 라켓에 맞아 오른쪽 눈 실명

(고등학교 3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2.4.12. 9시 13분경 학생이 배드민턴 수업(복식 경기) 중 네트 가까이 날라온 셔틀콕을 치려고 다가서는 순간 반대편 학생이 셔틀콕을 치려고 휘두른 라켓에 오른쪽 눈을 맞아 한 눈이 실명된 사고
- 2013.4.5.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53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8급 한 눈 실명 장해, 노동력 상실률 50%, 과실상계 3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배드민턴 운동 중 과도한 라켓 사용으로 인한 사고	운동 장비 사용법과 운동 규칙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위험행위	지나친 승부욕과 과도한 몸놀림으로 인한 사고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적절한 경기 통제 및 위험성 인식토록 지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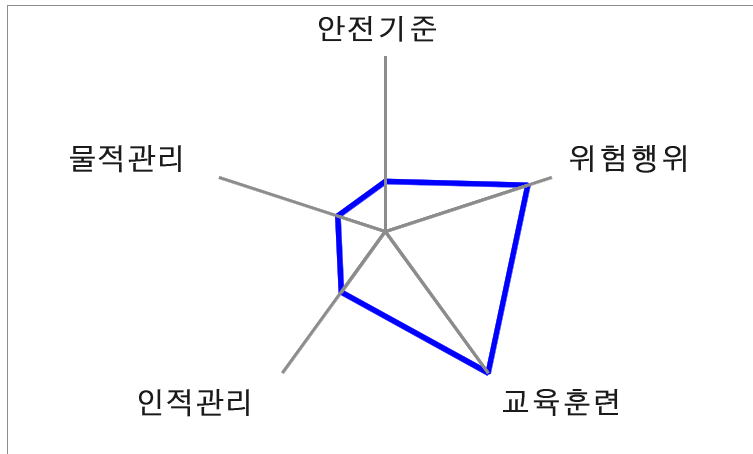


## 18 | 팔씨름 시합 중 오른팔 골절

(고등학교 3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9.5.27. 15시 30분경 체육대회 경기 중 반 대항 팔씨름 대회에서 맞상대로 겨루던 중 상대 학생이 팔을 세계 넘기자 피해학생의 오른쪽 팔이 180도 돌아가면서 골절된 사고
- 2013.8.29.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18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 12급 한 팔의 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3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운동 중 과도한 신체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	충분한 준비 운동 및 신체 보호 방법 훈련 철저
위험행위	신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몸놀림으로 인한 사고	지나친 승부욕 자제 및 신체 능력을 고려하여 경기에 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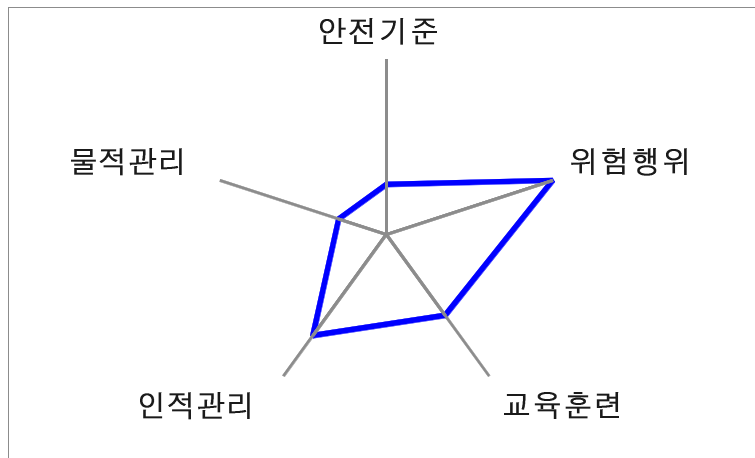
## V. 위험행위 요인

## 01 | 학생 간 부딪혀 눈 부상

(초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11.21. 11시 35분경 운동장에서 놀던 중 다른 학생과 부딪힌 후 다음날 눈동자 움직임에 이상이 발생한 사고
- 2013.3.20.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49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시력 장해, 노동력 상실률 15%)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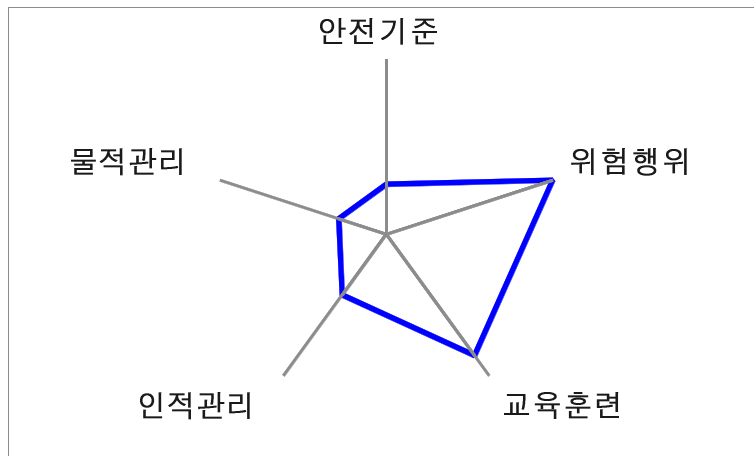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인적관리	휴식 시간에 대한 교사의 보호관리 미흡	저학년의 경우 휴식 시간에 지도 교사 운동장 배치로 보호관리 강화 필요
교육훈련	놀이 중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미흡	놀이 중 안전한 신체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 필요
위험행위	놀이 중 동작 미숙으로 다른 학생과 부딪힌 사고	신체 활동 중 조심할 수 있는 태도 배양 필요

## 02 | 하교 중 장난으로 눈 부상

(초등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9.4.13. 13시 50분경 하교 중 수업준비물로 가져온 반원형 각도기를 부메랑 처럼 던지다 같이 하교하던 피해 학생의 왼쪽 눈에 맞아 외상성 백내장, 각막 혼탁, 각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 2012.2.8.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90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0급 한눈 시력 0.1이하 장애, 노동력 상실률 22%, 과실상계 2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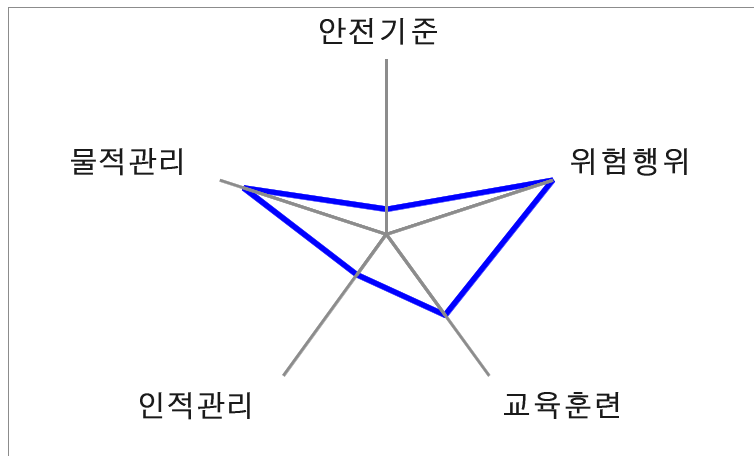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하교 중 불필요한 장난으로 인한 사고	시간과 장소에 적합한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필요
인적관리	하교 시 주의력 산만으로 인한 사고	초등학교 학생은 하교 시까지 교사가 보호관리 필요
교육훈련	학습기자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미흡	학습기자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위험행위	학습기자재의 위험성 인식 실패	학습기자재의 위험성 인식 강화

## 03 | 장난 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청각장해

(초등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11.12. 12시 40분경 학생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3층 교실로 올라와 청소를 하면서 같은 반 친구 2명과 잡기놀이를 하던 중, 도망가는 친구 두 명을 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손잡이 난간을 타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져 두개골 및 귀 연골이 골절된 사고
- 2012.2.23.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39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1급 4호 청각장해, 노동력 상실률 100%, 과실상계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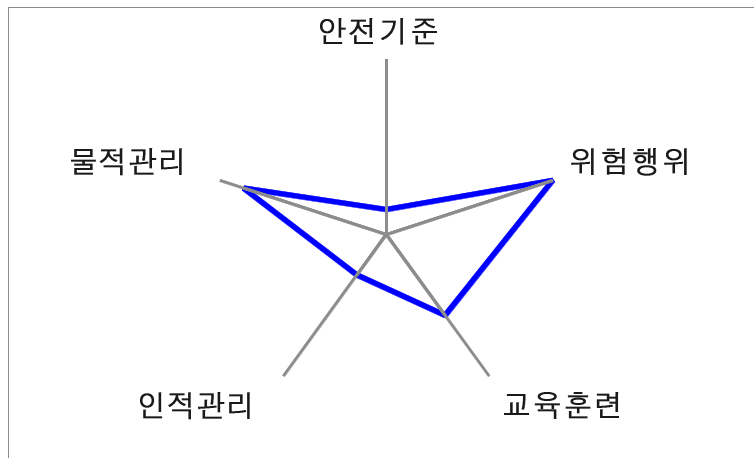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계단 손잡이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학생이 타고 내려옴 계단에서 뛰는 것에 대한 경고 표시 미 부착	계단 손잡이에 미끄럼막이 설치 '계단에서 뛰지 마시오' 경고 표시 부착 필요
교육훈련	계단 난간 등에서 땀 경우 전도 위험성에 대한 교육 미흡	위험성 인식을 위한 사고 사례 및 예방 교육 필요
위험행위	계단 난간에 올라타는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	안전한 계단 통행의 습관화 필요

## 04 | 운동장에서 뛰어가다 넘어져 목이 찢리는 부상 (초등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2.5.2. 12시 45분경 학생이 점심식사 후 운동장으로 뛰어가던 중 운동장에 설치된 학생 신발주머니 고리 앞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찢리는 부상을 입은 사고
- 2012.8.30.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화해권고 결정금 71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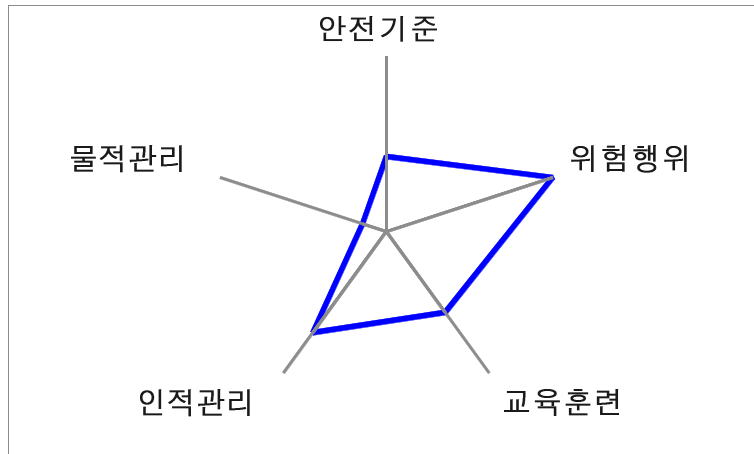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찢림·베임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의 안전관리 미흡	위험 시설물 주변 펜스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
교육훈련	찢리거나 베일 위험이 있는 학교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학교 시설물과 찢림·충돌·접촉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위험행위	위험 시설물 앞에서 뛰다가 발생한 사고	위험한 시설물 주변에서 보행 시 조심하는 태도 배양

## 05 | 수업 중 학생 장난으로 눈 부상

(초등학교 5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9.11.19. 13시 32분경 A 학생이 5교시 정규수업 중 교실에서 볼펜으로 지우개를 찢러 구멍을 내는 장난을 치던 중, 왼손으로 볼펜을 들어 올리다가 볼펜의 뒤쪽 부분으로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학생의 오른쪽 눈을 찢러 각막열상 상해를 입힌 사고
- 2012.10.29.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화해 권고 결정금 20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수업 중 위험한 장난으로 인한 사고	시간과 장소에 적합한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필요
인적관리	수업 중 위험한 장난에 대한 보호관리 미흡	수업 중 불필요한 장난에 대한 교사의 보호관리 강화
교육훈련	학습기자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미흡	학습기자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위험행위	학습기자재의 위험성 인식 실패	학습기자재의 위험성 인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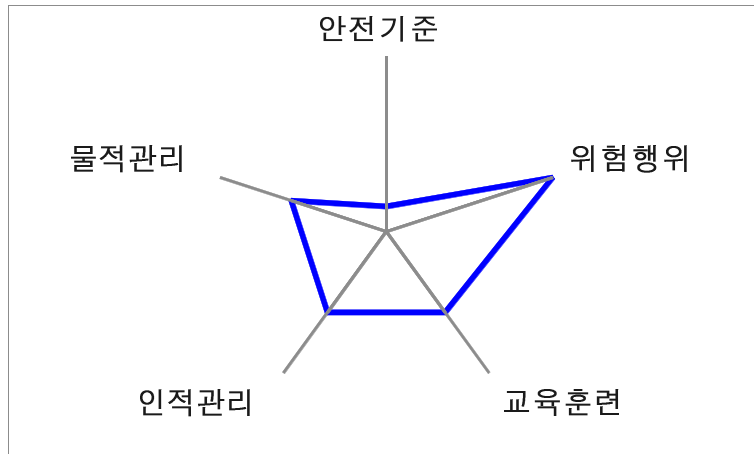


## 06 복도에서 뛰어가다 삼각자에 눈이 찢려 부상

(초등학교 5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9.10.22. 12시 40분경 교실에서 친구들과 놀러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삼각자를 가져다가 흔들고 있던 학생 곁을 지나며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사이 오른 쪽 눈이 찢린 사고
- 2013.2.28.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181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8급 시력 0.02 이하 장해, 노동력 상실률 5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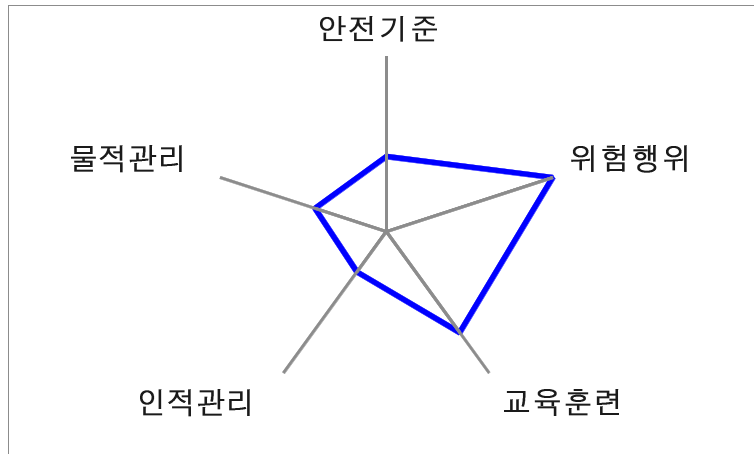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학습 기자재 보관 미비로 인한 사고	찢리거나 베일 위험이 있는 학습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 감독 강화
교육훈련	사고 위험이 있는 교육 기자재를 함부로 가지고 놀다가 일어난 사고	위험성 인식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 교육 필요
위험행위	주의력이 분산되는 시간에 위험한 물체에 대한 위험 인식 실패	보행 시 시야 확보 및 위험한 물체로 행동하지 않는 생활 태도 배양 필요

## 07 장난 중 넘어져 치아파절

(초등학교 5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11.17. 9시 45분경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피해학생보다 체구가 큰 학생이 손목을 맞잡고 돌던 중, 불안감을 느낀 피해학생이 “그만 그만”이라고 소리치는 와중에 회전을 멈추면서 손목을 놓으며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상악 좌우 측 중절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 2013.12.16.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11백만원 지급 (기존 및 향후치료비)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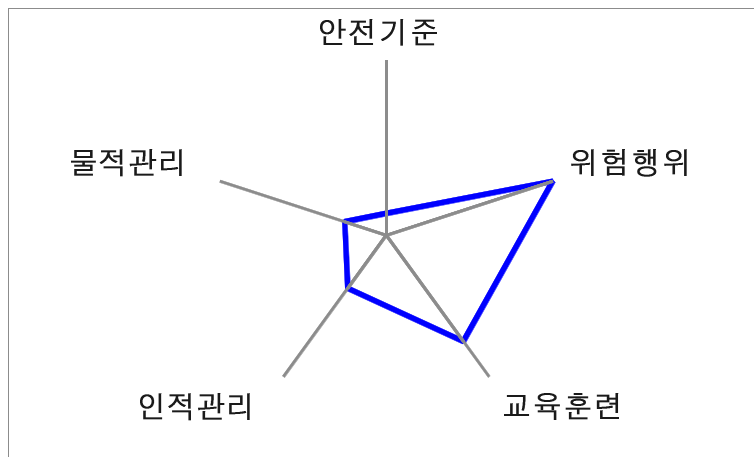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시간과 장소에 적합한 놀이지도 매뉴얼 미비	시간과 장소에 적합한 놀이지도 매뉴얼 마련 및 보급 필요
물적관리	복도와 같은 좁은 장소에서 위험한 장난 경고 표시 미부착	복도에서의 위험한 장난 금지 경고 표시 부착 필요
교육훈련	위험한 놀이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위험한 놀이 자제 및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위험행위	체구 차이가 있는 학생 간에 위험한 놀이로 신체 중심을 잃어 발생한 사고	신체 조건이 다른 학생 간 놀이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08 | 축구를 하던 중 넘어져 허리 부상

(초등학교 6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8.12.22. 14시 15분경 6교시 체육시간에 반대항 축구를 하던 중 학생이 헛발질로 인해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땅에 부딪쳐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고
- 당시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한 학생은 체육담당 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방학을 맞이한 뒤 왼쪽 허리에서 골절조각으로 인해 디스크 수액이 나와 석회화된 사실을 발견하여 수술 시행
- 2012.5.23.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4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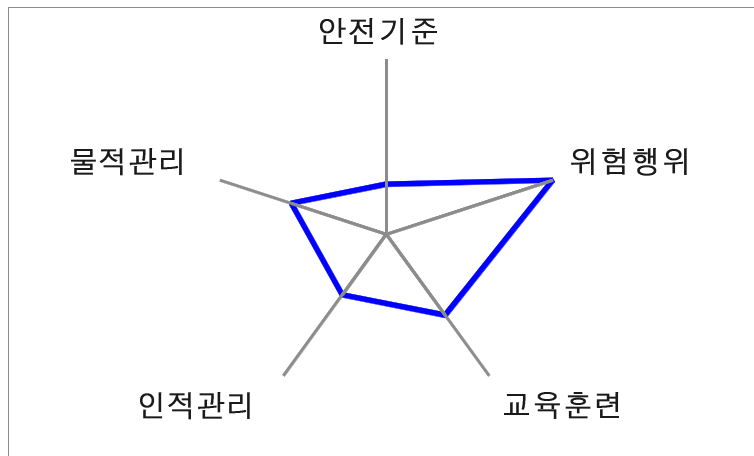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운동 중 과도한 신체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	충분한 준비 운동 및 신체 보호 방법 훈련 철저
위험행위	신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몸놀림으로 인한 사고	지나친 승부욕 자제 및 신체 능력을 고려하여 경기에 임할 필요

## 09 동료 선수가 던진 부메랑에 맞아 눈 부상

(초등학교 6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7.10.23. 16시 40분경 초등학생인 피해학생이 수영부 훈련장소인 여자중학교 운동장에서 체력 강화 훈련을 위한 트랙 돌기를 끝내고 집결하던 중, 운동장에 떨어져 있던 부메랑을 동료 선수가 주워서 순간적으로 날린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눈 주위를 맞아 부상을 당한 사고
- 2012.6.5.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78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0급 한눈 시력 0.1이하 장해, 노동력 상실률 30%, 과실상계 2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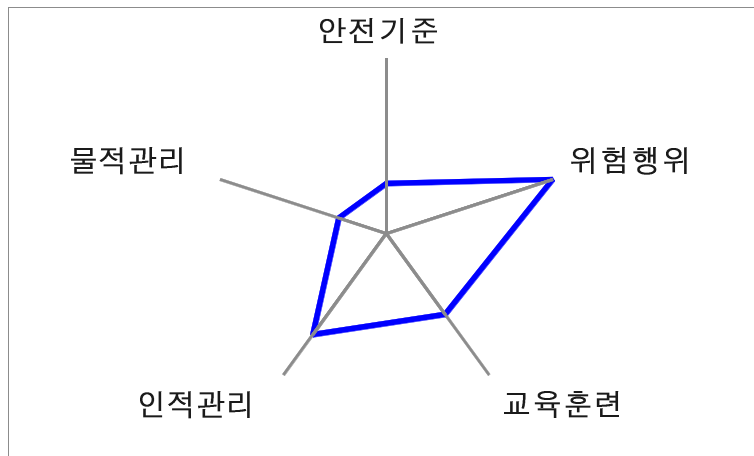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체육 훈련 장소의 정리 정돈 상태 불량	체육 훈련 장소는 안전하고 산만하지 않아야 함
교육훈련	훈련 중 불필요한 행동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훈련 중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
위험행위	훈련 중 불필요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 초래	훈련과 무관한 위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 인식 강화

## 10 장난에 의해 날아온 돌에 맞아 눈 부상

(초등학교 6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9.7.7. 13시 10분경 학생이 배드민턴 수업이 있는 강당에 가지 않고 운동장에서 배드민턴 라켓으로 돌맹이를 쳐서 날리는 장난을 치던 중,
- 같은 시간 발야구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의 왼쪽 눈에 돌맹이를 맞아 좌안 외상성 백내장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
- 2012.6.1.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23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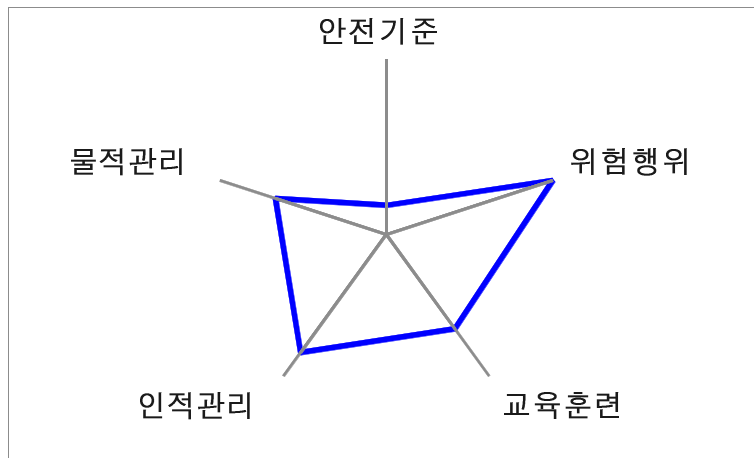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인적관리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미흡	수업 불참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관리 철저
교육훈련	위험한 장난 및 놀이에 대한 위험성 인지 부족	위험한 장난 및 놀이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사고 예방
위험행위	위험한 행위에 대한 인식 미흡	위험 행위에 대한 자제력 배양

## 11 | 마루운동 중 매트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

(초등학교 6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2.1.26. 18시 20분경 중학교 체조체육관에서 체조부 훈련 중 마루운동 스트레칭인 몸 펴 뒤 공중돌아 1회전 동작을 실시하던 중 착지 동작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매트에 부딪치며 뇌출혈이 발생한 사고
- 2012.8.30.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11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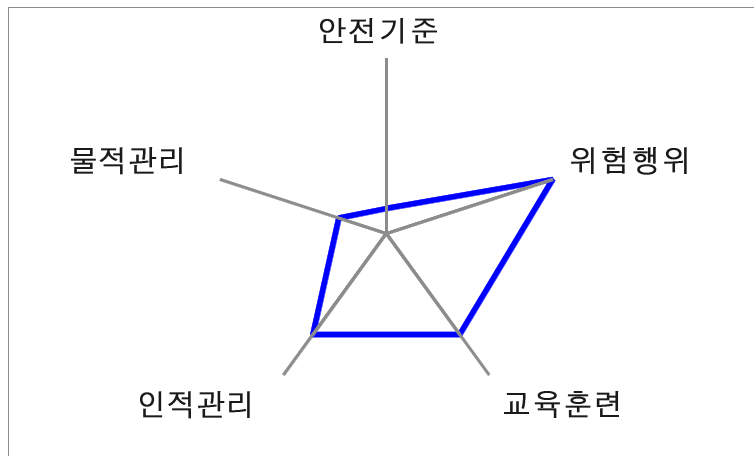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겨울 체육관 온도 저온	훈련장 적정 온도 유지(실내 체육관 18도 이하)
인적관리	저녁 시간에 집중력 부족과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사고	저연령 학생의 피로도 감소를 고려한 훈련 시간 조정 필요
교육훈련	불안전한 체조 낙법으로 인한 사고	충분한 준비운동과 안전한 낙법훈련 철저
위험행위	위험성 인식 실패	위험 행위의 인식과 대처 강화

## 12 | 교탁 위의 유리가 깨져 발 부상

(중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10.21. 13시 10분경 체육대회일 점심시간 중 교실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중 피해학생이 술래를 피해 교탁으로 올라가는 순간 멀티미디어 교탁 위의 모니터 확인을 위한 유리가 깨지며 발 부상을 입은 사고
- 2012.6.26.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34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8급 엄지발가락 폐용 장해, 노동력 상실률 15%, 과실상계 4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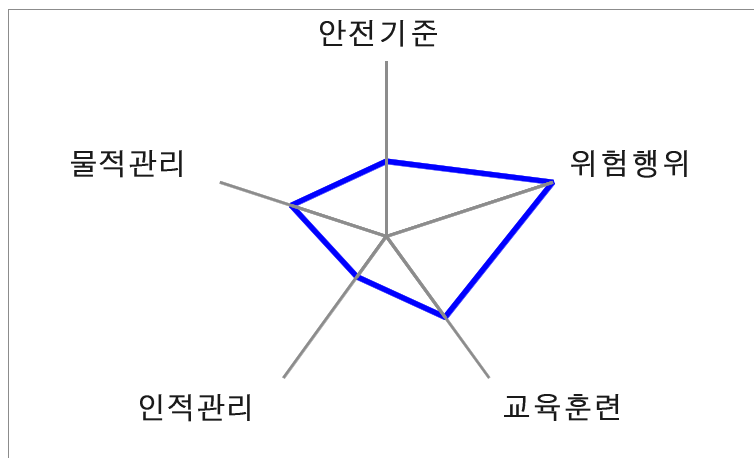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인적관리	저연령의 중학교 학생이 체육대회로 인해 해이해진 상황에서 과도하게 위험한 놀이로 인한 사고	중학교 1학년은 저연령으로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체육대회의 경우 교사의 보호관리 강화 필요
교육훈련	교실에서 위험한 장난으로 인한 사고	위험한 장난이나 놀이를 자제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필요
위험행위	과도한 장난으로 인한 위험성 인식 실패	교실에서의 과도한 장난 자제 태도 배양

## 13 | 교실문 유리가 깨져 눈 부상

(중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10.13. 15시 18분경 쉬는 시간에 교실 앞문을 열고 닫고 하던 중 닫힌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A 학생이 문 유리를 밀자 유리가 깨지면서 튀어나온 유리 파편에 맞은편에 있던 피해학생의 오른쪽 눈이 찔려 각막 열상 및 각막 혼탁의 부상을 입은 사고
- 2013.3.26.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27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3급 한눈 시력 0.6 이하 장해, 노동력 상실률 10%, 배상책임보험금 수령액 9백만원 공제)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깨지기 쉬운 뷰(view) 창문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	시간과 장소에 적합한 생활안전 지도 매뉴얼 마련 필요
물적관리	유리 파손 시 상해 위험 경고 표시 미부착	유리 파손 시 위험 경고 표시로 안전의식 제고 필요
교육훈련	위험한 놀이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위험한 놀이 자제 및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위험행위	파손되기 쉬운 유리창을 밀어 발생한 사고	유리창 파손 위험을 대비한 조심 태도 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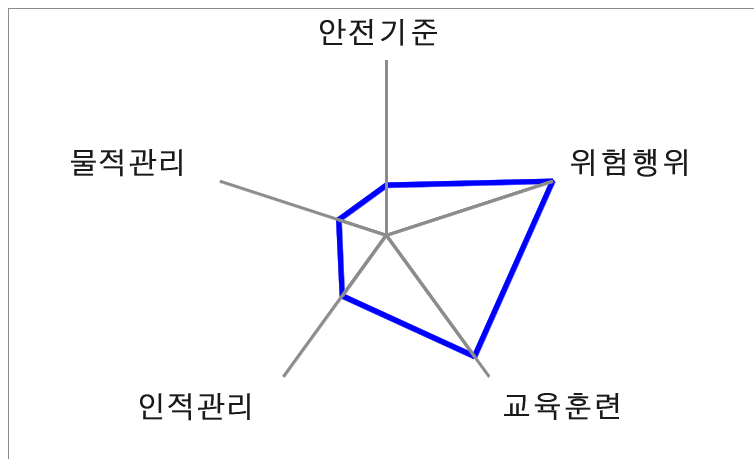


## 14 의자를 뛰어넘다 넘어져 비장 파열

(중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12.17. 13시경 교실입구에서 놓인 의자 2개를 보고 뛰어넘어가려다 한쪽 다리가 의자에 걸려 교실바닥에 넘어져 옆구리에 부상을 입은 사고
- 초기 단순 타박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어지럼증과 구토, 혈뇨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에서 진단 후 대형병원으로 후송 조치
- 2013.6.21.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78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8급 한쪽 신장 상실 장해, 노동력 상실률 50%, 과실상계 3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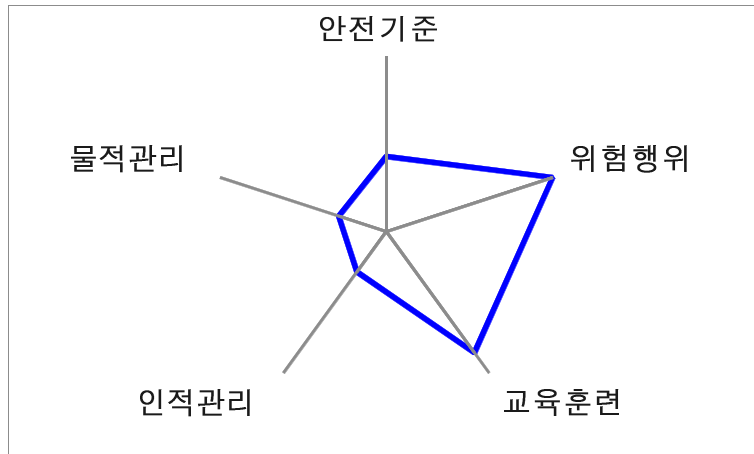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불필요한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	불필요한 위험한 행동은 지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철저
위험행위	위험 요인 인식 실패	평상시 조심하는 행동을 하도록 지도 함으로써 위험 인식 강화

## 15 | 버리려고 던진 다트 화살에 맞아 시력 장애

(중학교 1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11.29. 8시 15분경 친구들과 끝이 뾰족한 다트 화살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들이 위험하다고 버리라고 말리자,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던진 다트 화살이 뒤에서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다른 피해학생의 눈에 맞아 부상을 입힌 사고
- 2012.12.5.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41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3급 한눈 시력 0.6 이하 장해, 노동력 상실률 1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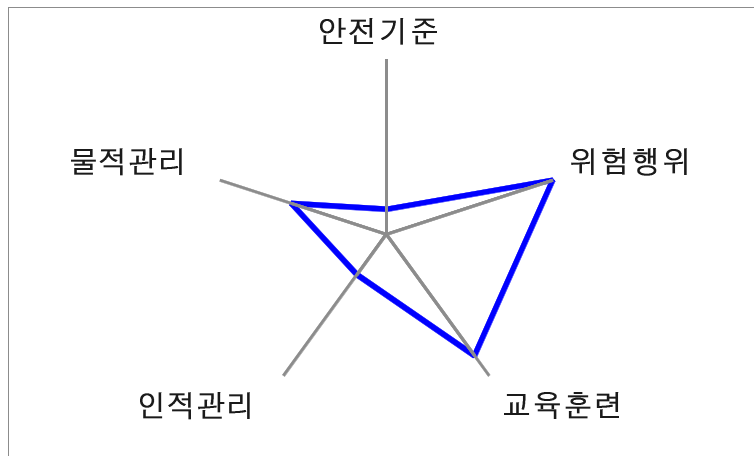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위험한 놀이 도구를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시간과 장소에 적합한 놀이 지도매뉴얼 마련 필요
교육훈련	위험한 놀이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위험한 놀이 자제 및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위험행위	위험성 인식 실패 및 학생에 대한 보호 관리 미흡	중학교 1학년은 저연령이며 충동적 이어서 위험한 장난을 하기 쉬우므로 교사의 보호관리 강화 필요

## 16 | 창문에서 추락하여 발목 골절

(중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5.30. 15시 25분경 학생은 휴식시간에 2층 복도 창문 창틀에 걸터앉아서 동급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운동장에서 방과 후에 있을 육상대회 달리기 연습에 대해 이야기하자 3학년 선배들의 부름에 2층 복도 창문에서 운동장으로 뛰어내리다 우측 다리 발목에 심한 골절상을 입은 사고
- 2012.4.24.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42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노동력 상실률 15%, 과실상계 3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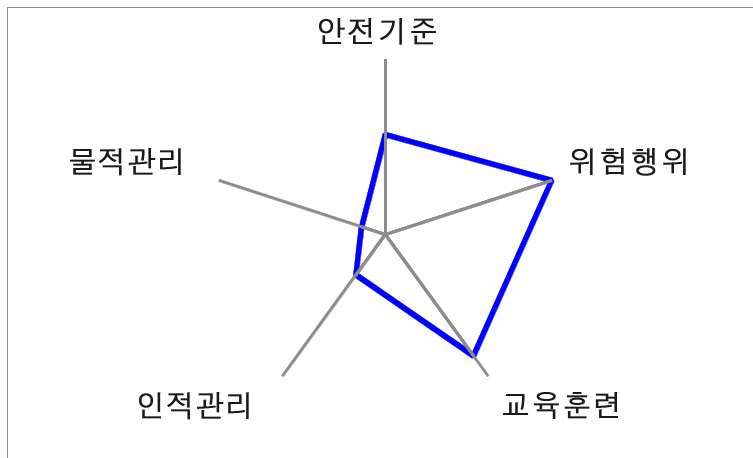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복도 창문 아래 벽체에 추락 위험 경고 표시 미설치	추락 위험 경고 표시 부착 필요
교육훈련	창문 등 추락 위험성이 있는 곳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교육 실시 미흡	발코니, 창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평소 꾸준히 교육 실시 필요
위험행위	복도 창틀에 걸터앉거나 뛰어내리는 위험한 행위로 인한 사고	추락 위험성이 있는 곳에 올라가거나 뛰어내리는 행위의 위험성 인식 강화 필요

## 17 | 자전거를 타고 등교 중 넘어져 부상

(중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6.10. 8시 20분경 자전거를 타고 등교 하던 중 친구에게 인사하기 위해 한손을 드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져 앞 이빨 4개가 손상된 사고
- 2012.5.11.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4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4급 3개 이상의 치아보철 장해, 노동력 상실률 5%, 과실상계 3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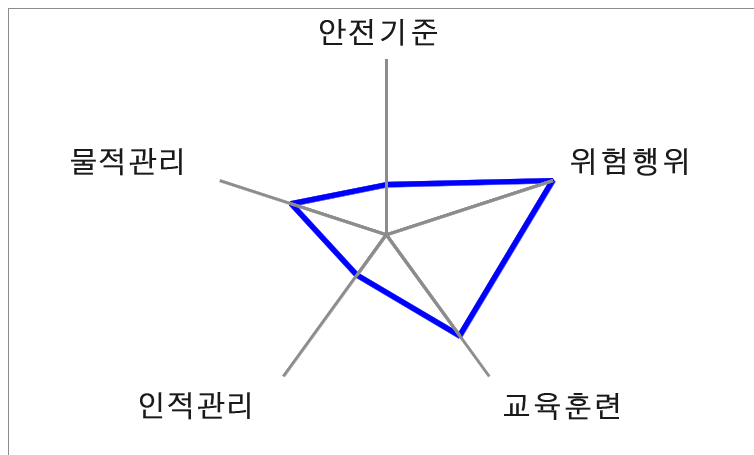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자전거 이용 중 운행 미숙으로 인한 사고	시간과 장소에 적합한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필요
교육훈련	자전거 안전 운행에 관한 예방교육 미흡	자전거 안전 운행에 관한 예방교육 강화
위험행위	자전거 운행 중 한손만으로 핸들을 조작하다가 발생한 사고	자전거 운행 중 양손으로 핸들을 조작함으로써 안전 운행 확보

## 18 복도 밖 난간에서 추락하여 두 다리 골절

(중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10.21. 12시 23분경 점심시간 중 4층 복도 창문 베란다에서 두 다리를 바깥으로 향한 채 앉아 있다가 4층 난간에서 3층 베란다로 미끄러져 추락하여 두 다리가 골절된 사고
- 보건실로 이송하여 상태가 위급함을 확인한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각종 검사를 한 뒤 수술 및 입원치료 실시
- 2012.7.25.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29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다리 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15%, 과실상계 5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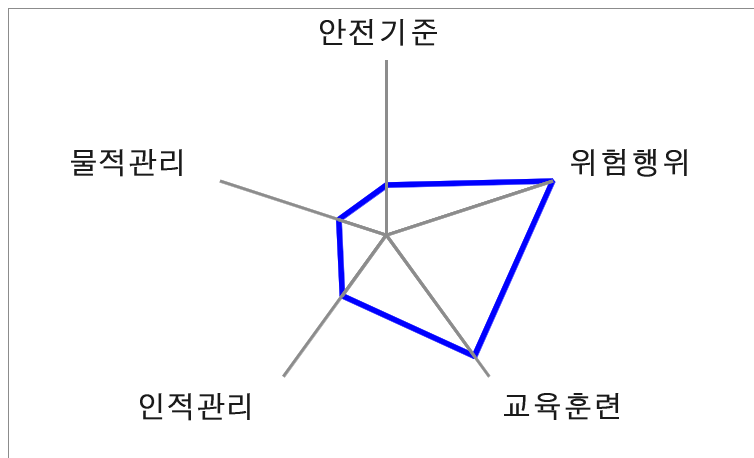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위험한 장소에서 휴식 중 추락	휴식시간 매뉴얼 마련 필요
물적관리	복도 창문 아래 벽체에 추락 위험 경고 표시 미설치	추락 위험 경고 표시 부착 필요
교육훈련	창문 등 추락 위험성이 있는 곳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교육 실시 미흡	발코니, 창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평소 꾸준히 교육 실시 필요
위험행위	위험성 인식 실패	평상시 조심하는 생활태도 형성

## 19 열기구 실험 중 알코올 통이 폭발하여 화상

(중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6.19. 11시 10분경 간이 열기구를 만드는 실험으로서 약 절반의 학생은 지도교사1의 지도 아래 실험 준비 중이었고 또 절반의 학생은 운동장에서 지도교사2의 지도 아래 열기구 실험을 진행
- 탈지면에 알코올을 묻히는 과정에서 솜에 묻은 알코올 양이 적어 열을 발생시킨 후에도 열기구가 상승하지 않자 피해학생은 지도교사가 다른 학생을 지도하는 사이에 알코올을 묻히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플라스틱 알코올 통 내부에 있는 기화된 알코올에 점화되어 플라스틱 알코올 통이 폭발하며 학생 2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
- 학교안전공제회 2명의 학생에 대하여 요양급여 12백만원(2011.4.27), 법원 조정 결정금 13백만원(2013.11.22) 각각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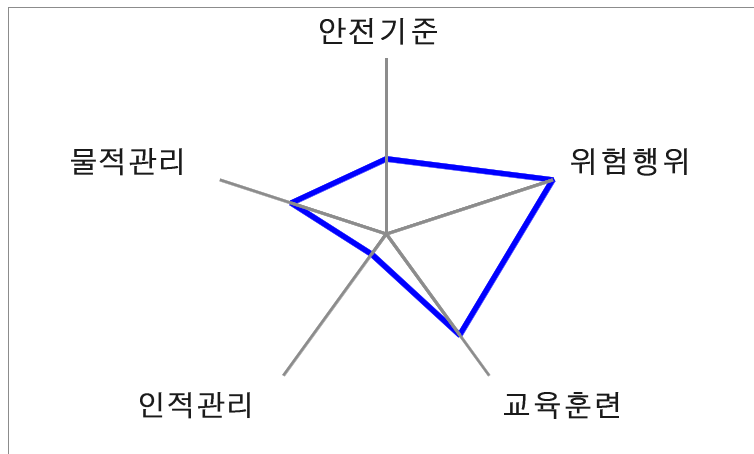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알코올 기화 기체로 인한 폭발 사고 위험성 인식 미흡	실험실 위험물질 관련 안전사고 사례 및 사용방법 안전교육 강화
위험행위	화재·폭발 위험물에 대한 보호관리 부족	지도교사의 지시 하에 실험 및 위험물질을 취급토록 교육 철저

## 20 비막이용 슬레이트에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 (중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3.6.25. 15시 35분경 6교시 후 같은 반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생들과 슬리퍼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 사고 학생 슬리퍼가 창문 밖 학교 건물 북쪽 비막이용 슬레이트에 떨어짐
- 이후 사고 학생이 2층으로 내려가 실내화를 주우러 복도 창문을 통해 비막이용 슬레이트로 내려서던 중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사망한 사고
- 사고 직후 도착한 보건교사 등이 척추사고 등 예방을 위해 환자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산소공급 및 이불로 학생 체온 유지한 뒤 119 구급차로 응급실 후송
- 2013.8.28. 학교안전공제회 유족급여 213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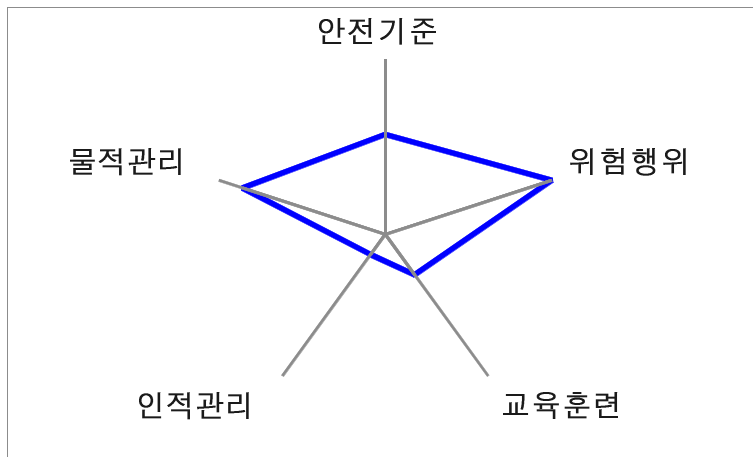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건축법상 적법하나 아크릴 강도 낮음	아크릴 재질 강화 필요
물적관리	아크릴 슬레이트의 재질이 약함을 경고하는 표시 미설치	'뛰어내리지 마시오'라는 경고 표시 부착 필요
교육훈련	창문 등 추락 위험 시설물 안전교육 미흡	창문 등 추락 위험 시설물 사고 사례 및 안전교육 강화
위험행위	2층 높이의 추락 위험 인식 실패	평상시 조심하는 생활지도 강화

## 21 | 창문 밖 발코니에서 추락하여 요추 골절

(중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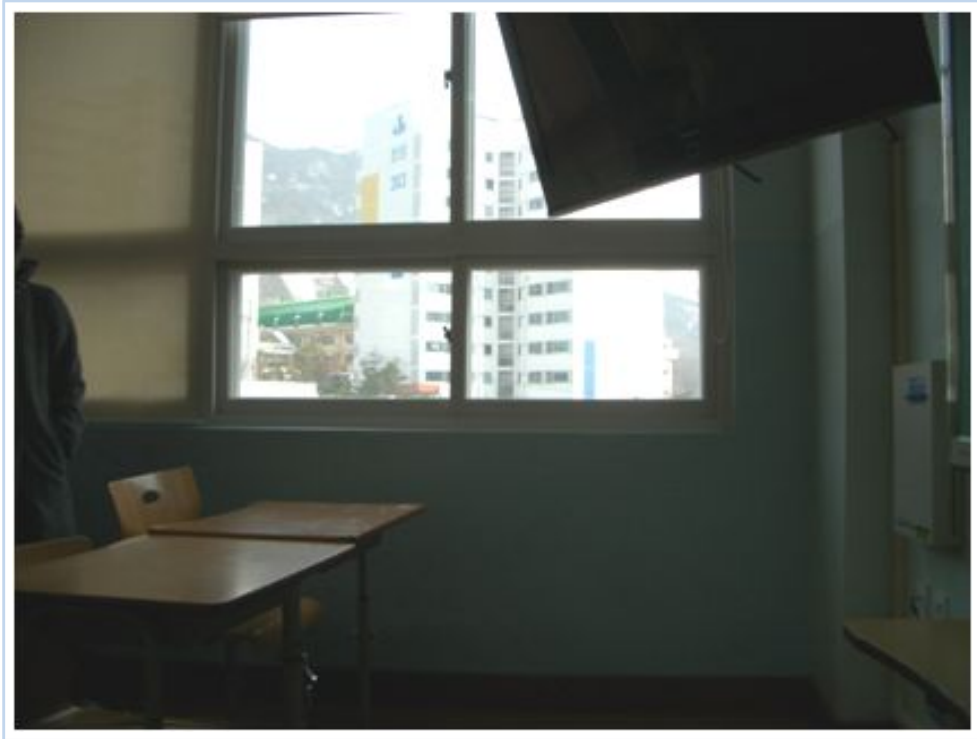
- 2009.10.19. 13시경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와 입고 있던 체육복을 교복으로 갈아입으려 했으나 여학생들이 들어와 3층 창문을 통해 발코니로 나간 후 다시 교실로 들어왔으며, 이후 학생부장이 교내순시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교복 폭을 줄인 것에 대한 적발이 우려되어 재차 3층 창문을 통해 차양으로 나가 숨어있던 중 전날 내린 비로 바닥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져 1층으로 추락하여 요추 및 발목이 골절된 사고
- 2012.10.17.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장해급여 22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4급 국부 신경장해, 노동력 상실률 5%)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발코니로 나가 실족하여 발생한 사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발코니 제거 여부 법적 검토 필요
물적관리	창대 1.2m 이하 안전바 미설치 추락 위험 경고 표시 미설치	창대 1.2m 이하 안전바 설치 경고 표시 부착 필요
교육훈련	창문 등에 올라가는 것의 사고 사례 및 위험성 인식교육 미흡	추락 위험성 인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위험행위	창문 밖으로 나가는 위험한 행위로 인한 사고	위험한 행위를 자제할 수 있는 판단력 배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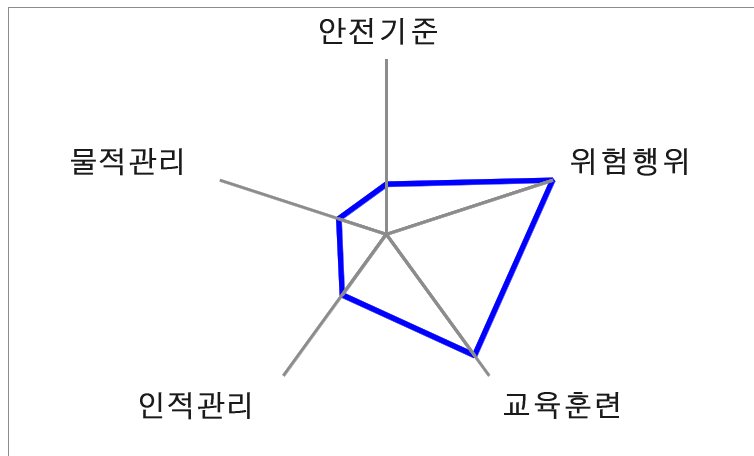


## 22 | 말타기 놀이 중 좌측 다리 골절

(중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8.30. 13시 18분경 학교 교실에서 친구들과 말타기 놀이를 하던 중 위에 올라탄 학생의 몸무게로부터 충격을 받아 좌측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하다가 좌측 다리 무릎 밑부분을 절단한 사고
- 2012.7.12.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277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 5급 발목관절 이상 상실 장해와 12급 관절기능 장애의 경합, 노동력 상실률 90%, 과실상계 2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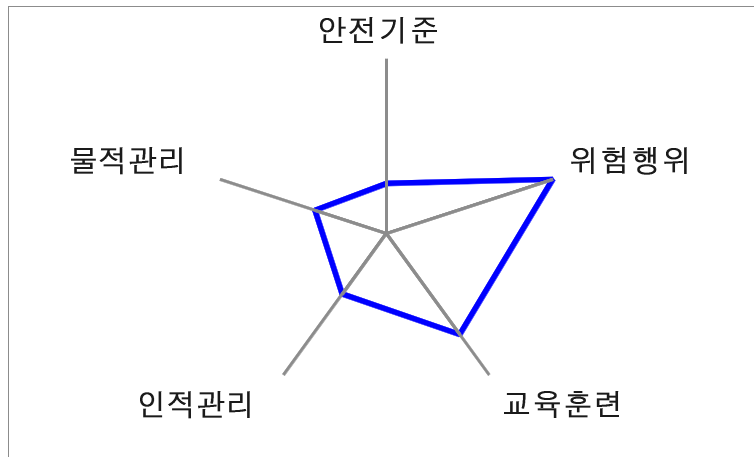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휴식시간 중 위험한 놀이 및 대처능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한 놀이를 자제하고 위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위험행위	교실 내 위험한 놀이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신체 능력을 초과하는 놀이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력 배양

## 23 창문 밖 외벽을 걸다가 추락하여 부상

(중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3.11. 12시 38분경 학생이 점심시간 시작 후 본관 5층 3학년 7반 복도 창문 밖으로 나가 외벽에 붙어있는 폭 60cm 너비의 콘크리트 구조체 위를 왕복으로 오가는 놀이를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  
※ 사고 장소는 외벽 벽체로 발코니는 아님
- 2013.4.5.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9백만원, 장해급여 68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0급 다리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30%, 과실상계 4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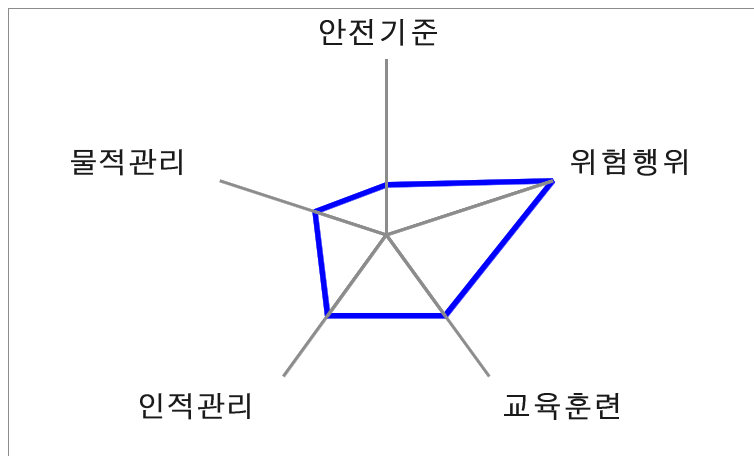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위험한 장소에서 장난 중 추락	휴식시간 매뉴얼 마련 필요
물적관리	창문 아래 벽체에 추락 위험 경고 표시 미설치	경고 표시 부착 필요
교육훈련	창문, 발코니 등에 올라가는 것의 추락 위험성 교육 미흡	위험성 인식을 위한 사고 사례 및 예방 교육 필요
위험행위	추락의 위험성 인식 실패	평상시 조심하는 생활태도 형성

## 24 | 졸넘기를 하던 중 의식불명

(중학교 3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3.26. 13시 30분경 5교시 체육수업 중 체조 및 준비운동을 실시 및 유의 사항 설명 후 졸넘기를 하던 중 맨 앞줄에 있는 학생이 쓰러져 의식을 잃으며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이자, 쓰러진 상태 그대로 옆으로 눕혀 안정을 취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보건 교사를 불러옴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 상황에 바로 119로 전화하여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보건교사가 계속 기도유지 및 응급처치를 실시 후 구급차가 도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지마비
- 2013.9.13.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판결금 330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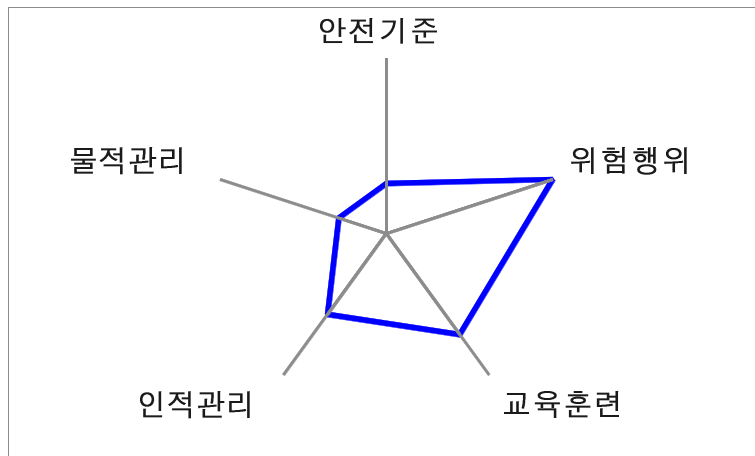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신체 이상 징후 학생 관리 미흡	요보호 학생 보호체계기준 강화
인적관리	상세 불명의 기왕의 병증 사고	교육활동 전후 요보호 학생 안전관리 강화
교육훈련	신체 이상에 대한 위험 인지 및 대처 부족	신체 이상 발생 시 교사 보고토록 안전 교육 강화
위험행위	신체 이상 징후 인식 실패	신체 이상 시 자기 보호 조치 체득

## 25 |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

(중학교 3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2.5.2. 13시 25분경 점심시간에 학생이 4층 창문 난간에서 1층 보도블럭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 사고를 목격한 학생은 사고 학생이 창턱을 밟고 등 뒤로 안전봉을 양손으로 잡고 서 있다가 갑자기 뛰어내렸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자살로 추정
- 2012.8.23. 학교안전공제회 위로금 40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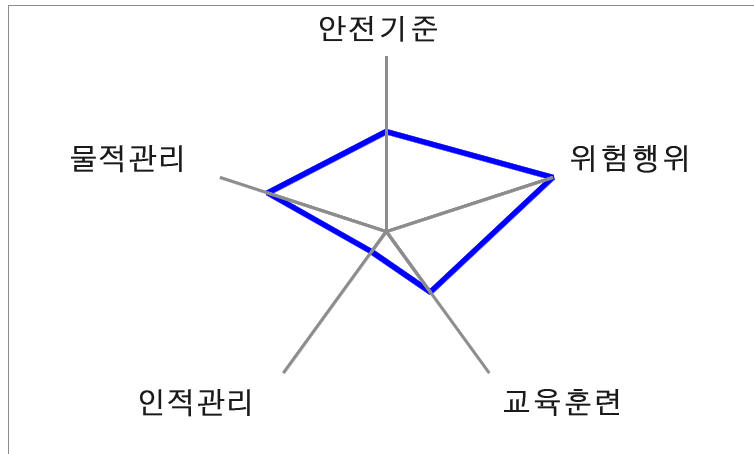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인적관리	자살 의심 학생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자살 위험 노출 학생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교육훈련	생명존중 의식 미흡	자살예방 교육을 통한 생명존중 의식 강화
위험행위	자살로 추정되는 추락 사고	학업, 교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 환경 및 문화 개선 필요

## 26 창문에서 추락하여 요추 골절

(고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5.22. 체육시간이 끝난 후 교실로 들어가 다음 수업 시간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교실 문이 잠겨 있어 옆 반 교실 외부 창문을 통해 교실문을 열 생각으로 창문을 넘다가 2층으로 추락하여 요추 골절상을 입은 사고
- 2012.9.28.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29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8급 척추 운동 장애, 노동력 상실률 50%, 과실상계 3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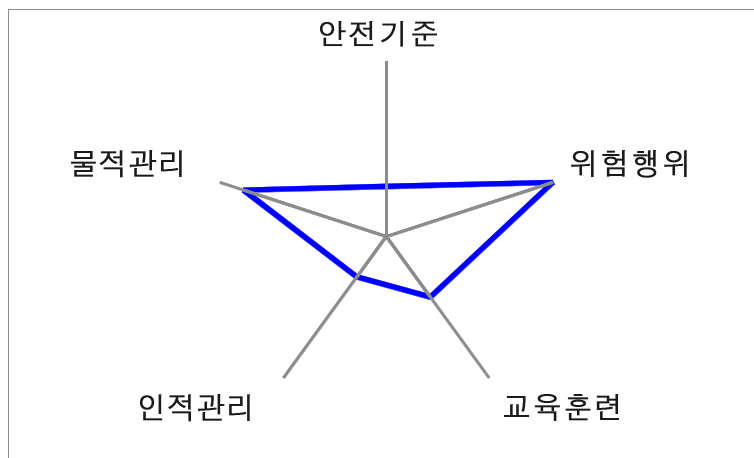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발코니로 나가 실족하여 발생한 사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발코니 위험성 제거 등 안전기준 마련
물적관리	창대 1.2m 이하 안전바 미설치 창문 아래 벽체 위험 경고 미설치	창대 1.2m 이하 안전바 설치 필요 창문 아래 위험 경고 표시 부착
교육훈련	창문 등에 올라가는 것의 사고 사례 및 위험성 인식교육 미흡	추락 위험성 인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위험행위	추락 위험 인식 실패	평상시 조심하는 생활지도 강화

## 27 | 난간에서 추락하여 부상

(고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9.23. 7시 20분경 2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담임교사의 조언도 구하고 수업 시작 전 시험공부를 하려고 평소보다 일찍 등교하였으나, 3층 교실 문이 잠겨 있어 아침 바람을 쐬기 위해 한 층 위인 4층으로 올라감
- 전에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난간에 걸터앉은 경험이 생각나서 난간에 걸터앉아 바람을 쐬려는 순간, 현기증이 나 1층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
- 2013.5.20.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320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5급 한다리 기능 폐용 장해, 노동력 상실률 8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난간 추락 방지 장치가 한쪽 면에만 설치, 출입제한 관리 소홀 추락 위험 경고 미부착	난간에서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및 출입제한 조치 추락 위험 경고 표시 부착
교육훈련	난간 등 추락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교육 미흡	난간 등 추락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위험행위	추락 위험이 있는 난간에 올라가 발생한 사고	위험한 행위를 자제할 수 있는 판단력 배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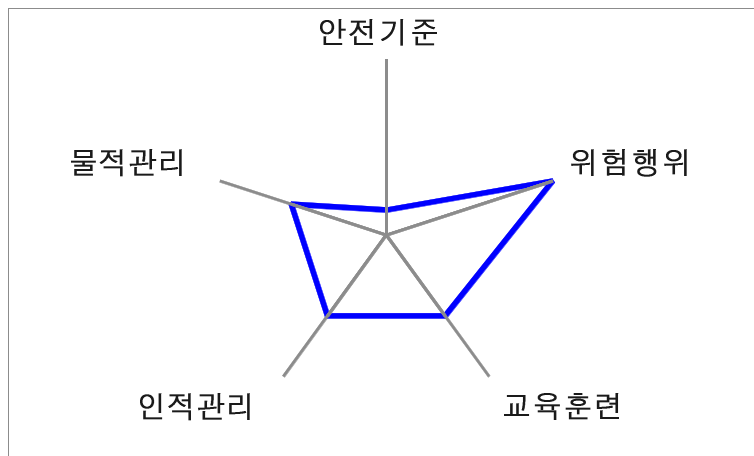


## 28 야구를 하다 공에 맞아 왼쪽 눈 장애

(고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10.26. 18시 10분경 학교 운동장에서 공으로 친구들과 야구를 하던 중 친구가 던진 공을 실수로 받지 못하면서 공이 학생의 왼쪽 눈에 맞아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사고
- 2012.8.14. 학교안전공제회 장애급여 75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애 11급 시력 장애, 노동력 상실률 21%, 과실상계 1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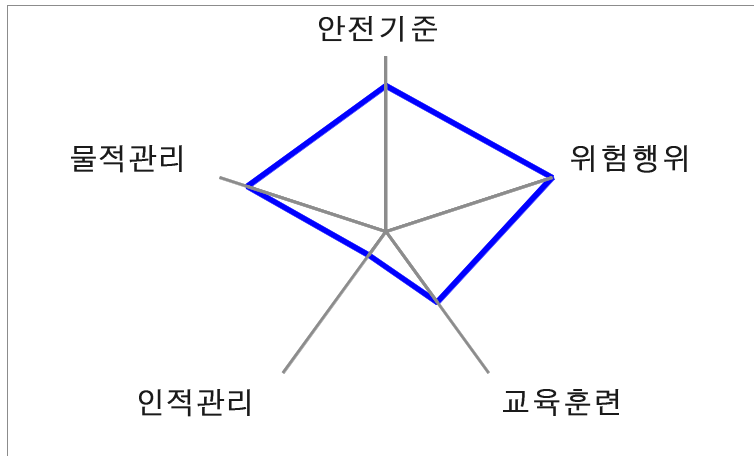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해가 저 어두워진 운동장에서 위험한 놀이 중 발생한 사고	어두워졌을 때는 운동장 사용 제한
인적관리	해가 저 어두워진 운동장에서 위험한 놀이 중 발생한 사고	어두워졌을 때 위험한 운동 실시 제한
교육훈련	놀이 환경에 적합한 운동 인식 실패	놀이 환경에 적합한 운동 교육 실시
위험행위	놀이 환경이 어두워 날아오는 공 인식 실패	어두워진 환경에서는 놀이 자제 필요

## 29 | **사이클 훈련 중 미끄러져 부상**

(고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3.8. 16시경 2011 대통령기 전국 도로 사이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훈련을 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커브를 도는 순간 자전거가 미끄러지며 가드 레일 등을 부딪쳐 허벅지 골절 부상을 입은 사고
- 2013.4.5.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40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다리 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15%, 과실상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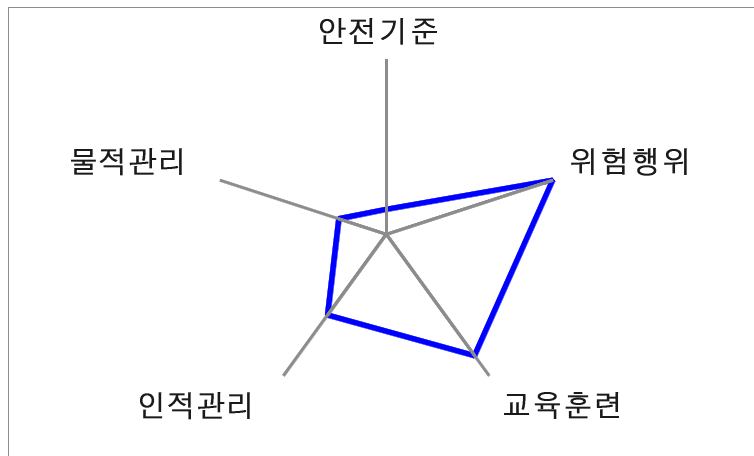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위험한 노면에서 사이클 훈련 실시	사이클 훈련 전용 벨로드롬 등 인프라 구축 필요
물적관리	노면에 흩어진 모래에 자전거가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	노면의 청결상태 확인 철저
교육훈련	미끄러운 노면에 대비한 안전 운행 훈련 미흡	사전 안전교육 및 위험 상황 대처 훈련 철저 시행
위험행위	돌발 위험요인 인식 실패	위험 상황에 대비한 안전 운행

## 30 | 축구를 하다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와 연골 파열 (고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8.25. 12시 50분경 점심식사 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이 꺾이는 사고 후 X-Ray 촬영 상으로는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으나,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MRI 촬영 결과 십자인대와 연골 파열 진단이 내려져 수술을 받음
- 2012.4.12.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52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슬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15%, 과실상계 1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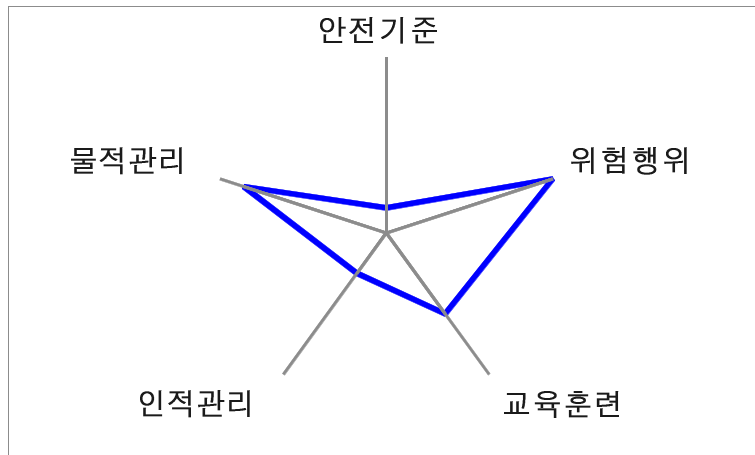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위험 대처 능력 약화 및 지나친 승부욕 발현	위험 대처를 위한 경기 전 몸풀기 및 승부욕 억제 노력 필요
위험행위	경기 중 경쟁이 과열됨에 따른 무리한 신체 활동	경기 중 경쟁 과열 방지를 위한 지도 교사의 지도 강화

## 31 농구 경기 중 충돌로 인한 허리 부상

(고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5.4.13. 18시경 학교 농구장에서 친구들과 농구 경기 중 점프 후 착지과정에서 친구와 충돌하여 넘어져 허리 부상을 당한 사고
- 사고 후 약 8년간 병원 치료를 계속하다가 동사무소 장애인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장애 보상제도를 알게 되어 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급여 보상 신청
- 2013.11.19.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53백만원 지급 (척추 손상 장해, 노동력 상실률(맥브라이드 방식) 32%)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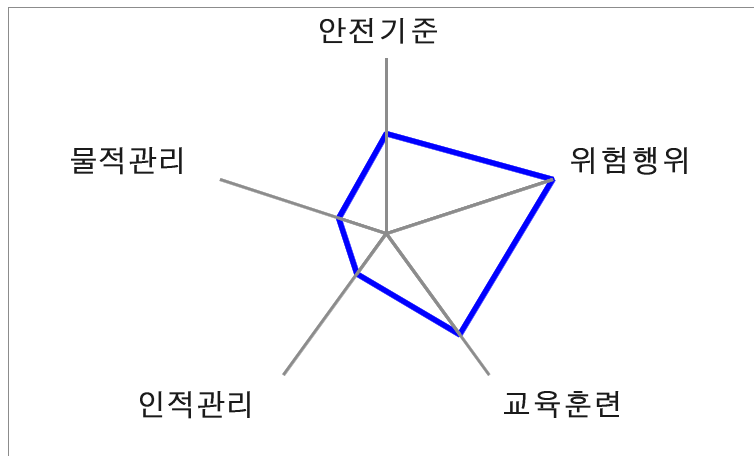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집중력과 시력이 저하되는 야간 운동 중 발생한 사고	야간 운동 시에는 조명 상태 점검 필요
교육훈련	운동 중 과도한 신체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	운동 중 지나친 승부욕 자제 및 야간 운동 위험성 인식을 위한 예방교육 필요
위험행위	불안전한 착지로 인한 사고	착지와 같은 위험한 행동 시에는 조심할 수 있는 태도 배양

## 32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다리 골절

(고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6.1. 19시경 공을 주워달라는 상급생의 부탁을 받고 4층으로 던졌으나 공이 2층 베란다에 떨어지자, 배수통을 타고 2층 베란다에 올라가서 4층으로 공을 올려주고 1층 공터로 뛰어내리다가 다리 골절과 찰과상을 입은 사고
- 2012.11.20.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72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0급 다리 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30%, 과실상계 3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교실 외벽 베란다 출입으로 인한 사고	교실 외벽 베란다 출입 제한을 위한 건축물 변경 검토 필요
교육훈련	추락 위험 시설에서 뛰어내림으로써 발생한 사고	추락 위험이 있는 시설에는 올라가지 않도록 안전교육 강화 필요
위험행위	야간에 상태 확인이 곤란한 바닥에 뛰어 내려 발생한 사고	야간의 사고 위험은 가중되므로 인식 오류 방지를 위한 주의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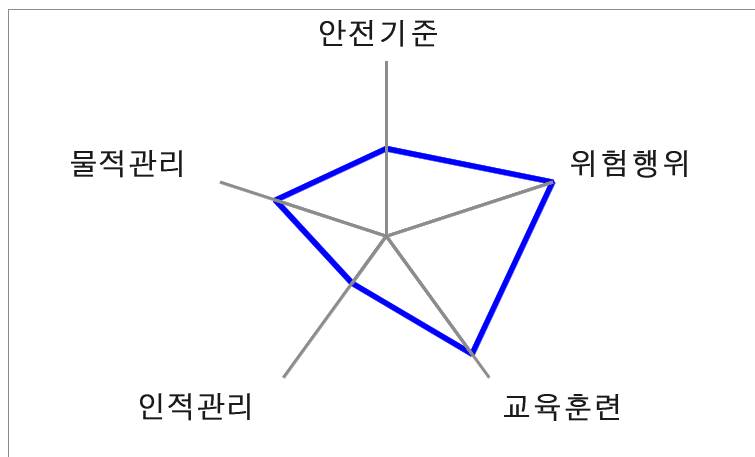


## 33 계단에서 넘어져 손 장애

(고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7.19. 9시 40분경 친구와 쫓고 쫓기는 장난을 3층 복도에서 시작하여 1층 계단까지 하던 중, 달리던 피해학생에 가속도가 붙어 몸의 균형을 잃고 발을 헛디뎠다며 넘어지면서 1층 후문 유리창에 부딪혀 손가락 및 손 부위 신경 손상을 입은 사고
- 2012.5.23.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89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0급 손가락 폐용 및 팔 신경 손상 장해, 노동력 상실률 40%, 과실상계 4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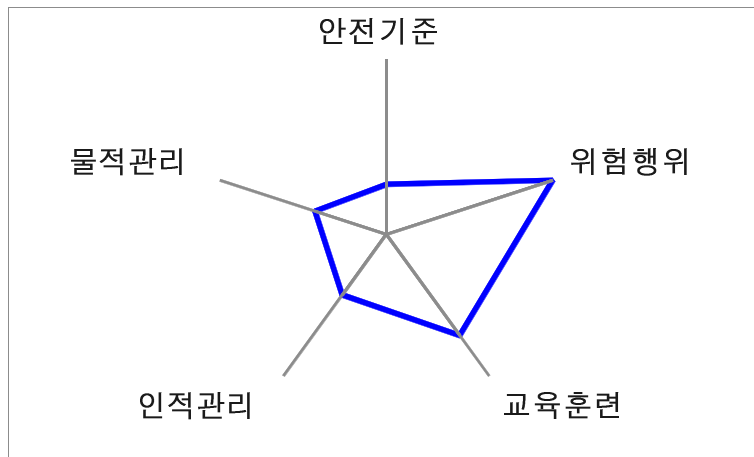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좁은 복도와 계단에서 위험한 놀이를 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시간과 장소에 적합한 놀이 지도매뉴얼 마련 필요
물적관리	사고당일 습하고 바닥에 물기 복도와 계단 같은 좁은 장소에서 위험한 장난 경고 표시 미부착	복도, 계단 건조 상태 유지 필요 복도와 계단에서의 위험한 장난 금지 경고 표시 부착 필요
교육훈련	위험한 놀이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위험한 놀이 자제 및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위험행위	고등학생에 적합하지 않은 장난을 위험한 장소에서 하여 발생	연령과 장소에 적합한 놀이에 대한 판단 능력 필요

## 34 | 발코니에서 추락하여 척추 부상

(고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 2010.11.18. 18시 45분경 학생들이 교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통해 아시안게임 태권도 경기를 시청하다가 A 학생이 화장실을 간다는 말에 B 학생도 따라감.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중 교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친구들을 놀래주기 위해 A 학생이 7자 건물 4층 중앙발코니를 넘어 교실에 들어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B 학생도 같은 방법으로 중앙발코니에서 뛰어내리다 중심을 못 잡고 1층으로 추락하여 심한 척추 부상을 입은 사고
- 2013.6.28. 학교안전공제회 법원 1심 판결금 466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급, 노동력 상실률 10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교실 외벽 베란다 출입으로 인한 사고	교실 외벽 베란다 출입 제한을 위한 건축물 변경 검토 필요
물적관리	창문 아래 벽체에 추락 위험 경고 표시 미설치	경고 표시 부착 필요
교육훈련	창문, 발코니 등에 올라가는 것의 추락 위험성 교육 미흡	위험성 인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위험행위	안전봉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넘어감으로써 위험성 인식 실패	과도한 모험심 억제 및 위험 인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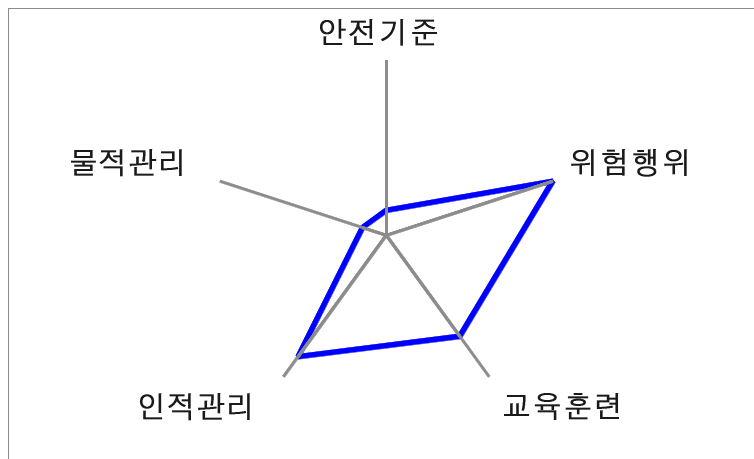


## 35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고등학교 1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3.8.2. 새벽 5시 20분경 기숙사에서 취침하고 있던 학생이 잠결에 일어나 3층 기숙사 베란다에 나갔다가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된 사고
- 기숙사 베란다의 높이 114cm로서 안전바가 있었음에도 추락한 점으로 볼 때, 고의로 베란단을 타고 넘었거나 혹은 몽유병과 같은 무의식 상태에서 베란단을 타고 넘은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미상인 사고
-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10백만원(2013.12.9.), 장해급여 224백만원(2014)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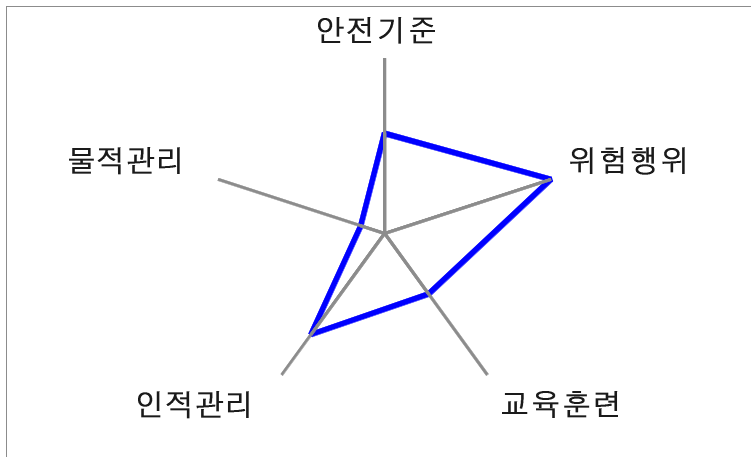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인적관리	사고 당시 사고 학생 혼자 기숙사에서 취침(관리상 미흡)	기숙사에 모두 외박을 하고 혼자 취침 중인 학생 관리 강화
교육훈련	베란다 추락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추락 위험이 있는 베란단에 대한 예방 교육 실시
위험행위	베란다 추락 위험성 인식 실패	베란다 추락 위험성 인식 제고

## 36 | 기왕증으로 인한 사망

(고등학교 1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08.12.19. 7시 43분경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복도에서 뛰다가 ‘악성 부정맥 의증’이 발병하여 갑자기 쓰러진 뒤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한 사고
- 2013.1.14. 학교안전공제회 유족급여 399백만원 지급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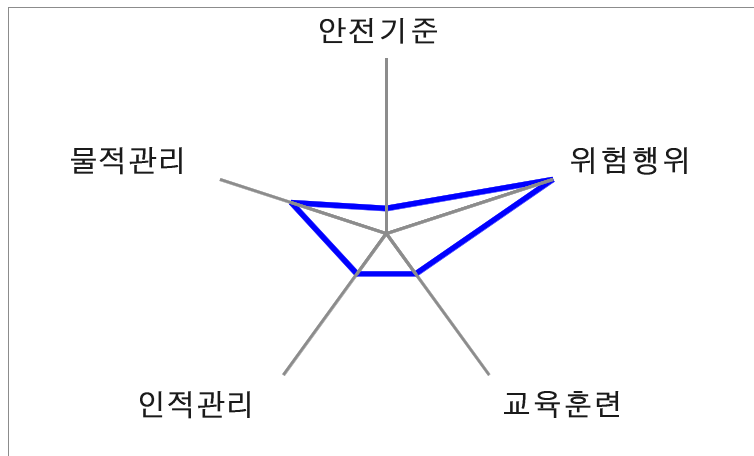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가족력, 기왕증 등에 대한 감시 시스템 미비	지병 발병 감시시스템 마련 필요
인적관리	심폐소생술 미실시	심폐소생술 실시 또는 자동제세동기 비치로 피해 최소화
위험행위	개인의 지병에 의한 사고	과도하게 뛰거나 무리한 동작에 유의

## 37 계단에서 발을 헛디더 십자인대 부상

(고등학교 2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11.16. 15시경 청소시간에 동급생들과 함께 학급 청소를 마친 후 쓰레기 통을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가던 중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더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및 연골판에 부상을 입은 사고
- 2012.9.7.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55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슬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15%, 과실상계 2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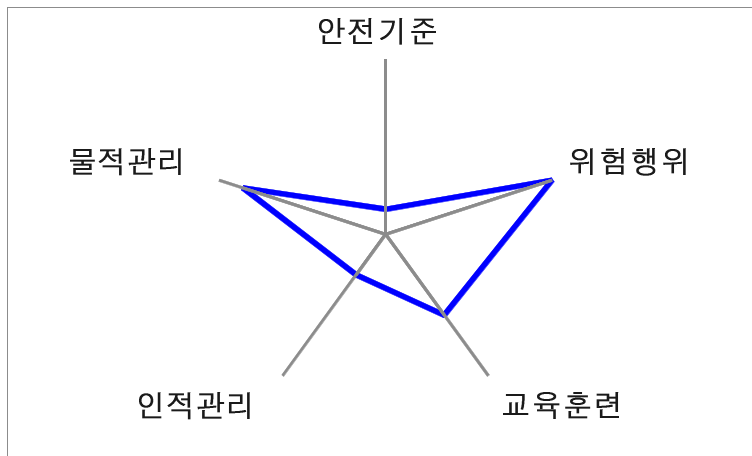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청소 후 계단 물기 제거 등 관리 미흡	청소 후 계단 물기 제거 등 관리 강화
교육훈련	쓰레기통을 들고 계단 통행 중 발을 헛디더 발생한 사고	계단과 같은 위험 시설 이용 시 전도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위험행위	무거운 물건을 휴대하고 이동하다가 무게중심을 잃어 발생한 사고	무거운 물건을 휴대하고 계단을 이동 시에는 주의력 강화 필요

## 38 학생 간 장난으로 발목 골절

(고등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9.9. 16시 14분경 7교시 수업 후 청소시간에 학생 간 서로 장난을 치던 중 친구의 가방을 들고 3층 본관 서편 계단을 통해 달아나다 가방을 찾기 위해 쫓아오는 학생을 피해 창문(약 2m~2.5m 높이)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왼쪽 발목이 골절된 사고
- 2012.12.31.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59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 12급, 좌측 발목관절 기능 장애)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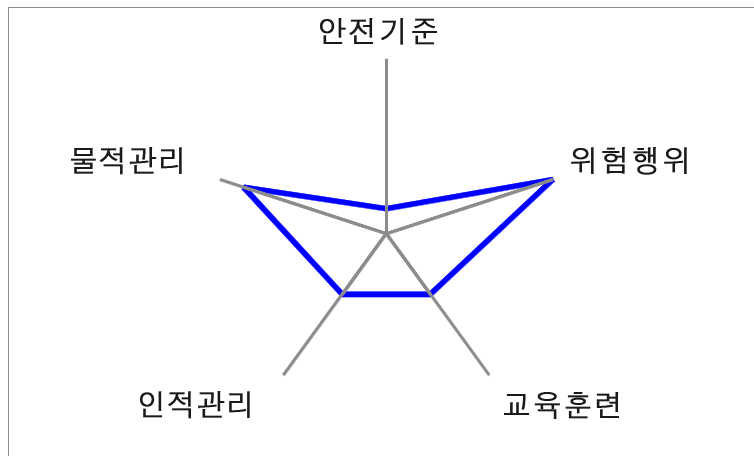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창문 높이가 낮거나 넘을 수 있으나 안전봉 미설치 창문 아래 벽체에 추락 위험 경고 표시 미설치	안전봉 설치 필요 경고 표시 부착 필요
교육훈련	창문 등 추락 위험 시설에 올라가는 것의 위험성 교육 실시 미흡	위험성 인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위험행위	추락 위험 인식 실패	평상시 조심토록 생활지도 강화

## 39 난간에서 떨어져 척추·발목 부상

(고등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10.21. 16시 30분경 학교 가요제 행사 중 강당 뒤쪽 난간 위에 올라가 아래를 보던 중 발을 헛디뎈 강당 아래로 3미터 정도 추락하여 척추와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고
- 2013.3.6.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232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6급 척추 기형 장애와 10급 다리 관절 기능 장애의 경합, 노동력 상실률 80%, 과실상계 3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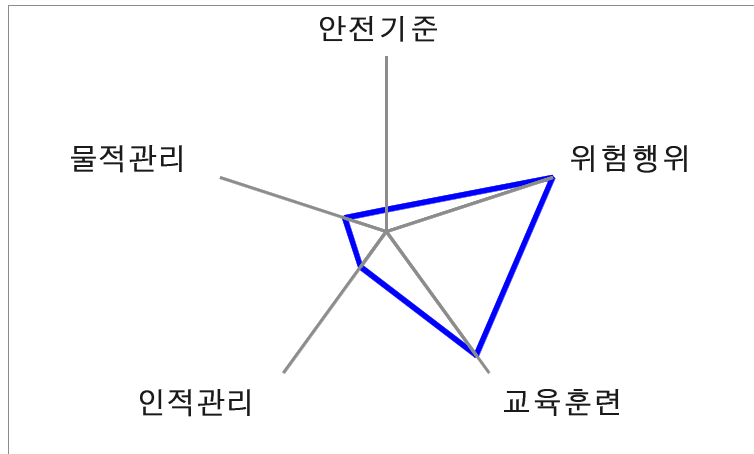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난간에 올라 갈 수 있는 구조로 행사장 설치 올라감 금지 경고 표지 미설치	난간에 올라 갈 수 없도록 행사장 구조 설계 필요 추락 위험 경고 표시 부착 필요
인적관리	행사진행 및 안전관리 요원의 미배치	행사진행 및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 필요
교육훈련	난간 등 추락 위험물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 실시 부족	위험성 인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위험행위	추락 위험성 인식 실패	위험성 판단력 배양 필요

## 40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부상

(고등학교 2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10.28. 13시 5분경 체육특기생이 점심식사를 하러 계단을 내려가다가 1층 마지막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넘어져 2009년에 체육시간에 다쳤던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이 재발한 사고
- 2013.5.16.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63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슬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15%)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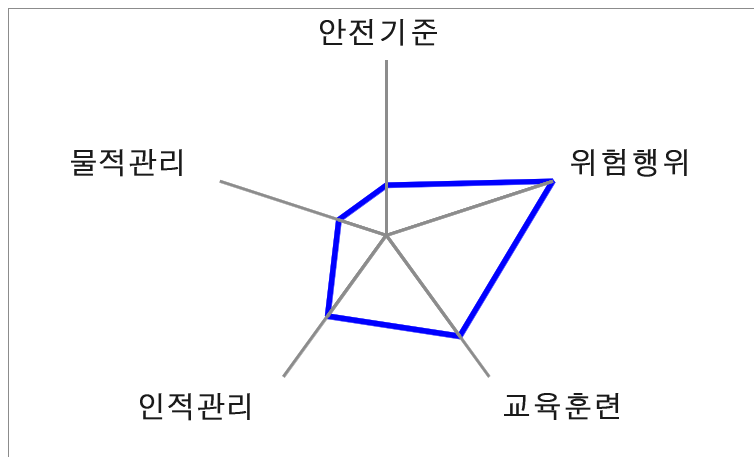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점심시간 중 급히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	계단에서의 보행 속도 및 슬리퍼 착용 금지 등 안전교육 철저
위험행위	과거에 다친 부위에 다시 충격이 가해져 발생한 사고	무릎 부상으로 치료 중인 경우 보다 조심했어야 함

## 41 |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무릎 부상

(고등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7.15. 19시 30분경 축구 연습경기 도중 공격하던 학생이 수비하던 학생과 발이 부딪히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사고
- 사고 후 지도교사가 부축하여 경기장 밖으로 옮긴 후 상태를 살피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 2012.9.19.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58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슬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15%)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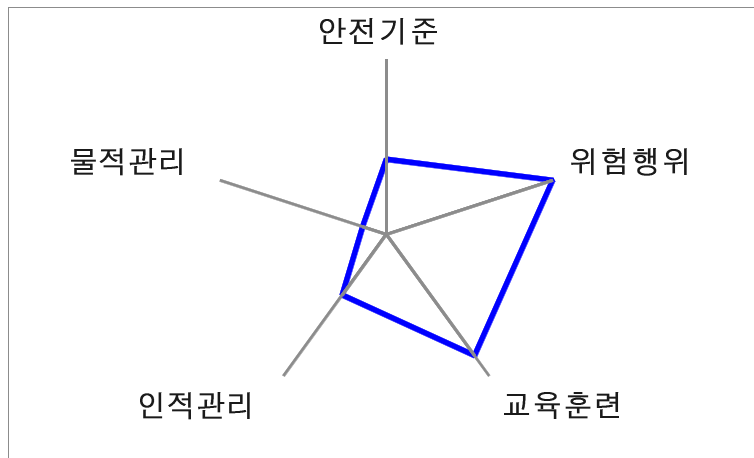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인적관리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한 학생들의 축구 경기 중 몸싸움 등 경기 과열로 인한 사고	지도교사가 반칙 적용을 엄격히 하고 경기 과열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보호 관리 필요
교육훈련	시합 전 사고 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위험한 운동 경기 전 안전교육을 통한 위험 대처 능력 강화
위험행위	과도한 몸싸움으로 인한 사고	격렬한 신체 움직임 수반되는 활동 시 조심하는 태도 배양

## 42 | 학생 간 다툼으로 비장 파열

(고등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1.1.13. 12시 30분경 교실에서 같은 반 피해학생으로부터 ‘성격 장애’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 A 학생이 주먹으로 피해학생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피해학생의 등과 몸통 및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파열상 등을 가한 사고
- 2012.12.28.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4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 12급 비장파열 장해, 노동력 상실률 15%, 과실상계 10%, 공제회 보상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모욕적인 언행에 화가 나 발생한 학교 폭력 사고	학생 간 언어 예절 및 분노 조절에 관한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교육훈련	모욕적인 언행에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발생한 사고	분노 억제 및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생활교육 강화
위험행위	모욕적 언행이 초래한 분노를 과도하게 표출하여 발생한 사고	분노를 과도한 폭력행위로 표출할 경우 결과 예측 및 판단 능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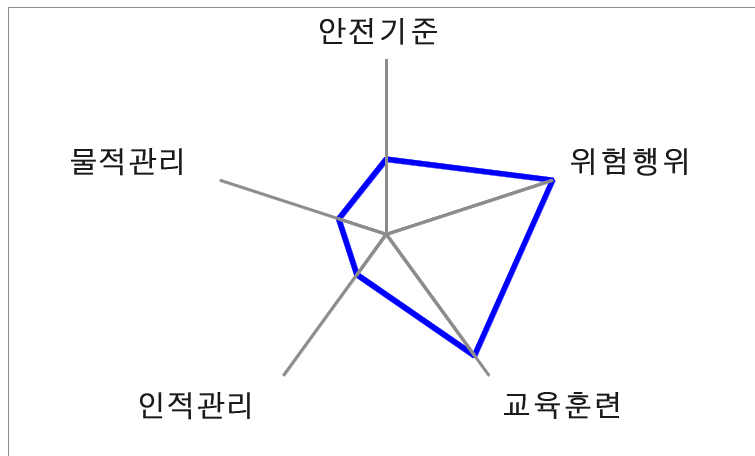


## 43 | 젓가락에 찔려 각막 부상

(고등학교 2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9.2. 12시 40분경 친구들과 젓가락을 던져 나무에 꼽기 놀이를 하던 중 몇 번의 시도에도 젓가락이 잘 꽂히지 않자, 나무의 1m 거리 정도로 다가가서 힘을 주어 던지자 젓가락이 튕겨져 나와 왼쪽 눈이 찔려 각막이 찢어진 사고
- 2012.12.6.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82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0급 한눈의 시력 0.1 이하 장해, 노동력 상실률 30%, 과실상계 3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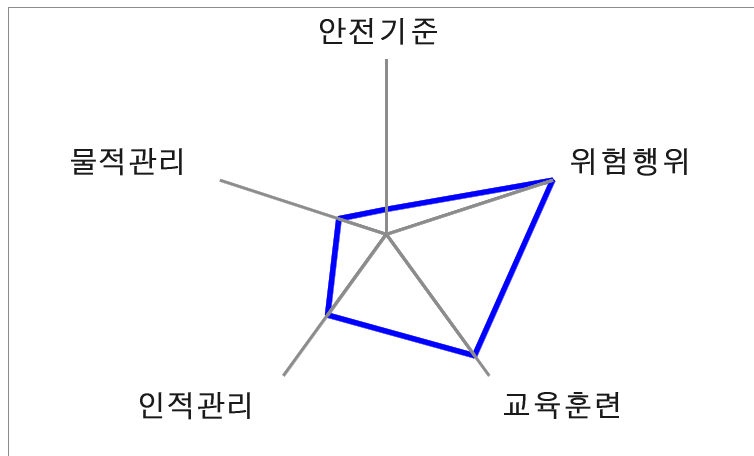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휴식시간 중 위험한 놀이로 인한 사고	위험한 놀이를 자제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필요
위험행위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인한 사고	젓가락을 던지는 놀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44 | 졸업여행 중 난간에서 추락하여 요추 골절

(고등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2.12.4. 새벽 1시 2분경 2층 숙소에서 있던 학생들에게 1층 숙소 친구들이 같이 놀자는 연락이 와서 복도에 계신 선생님의 눈을 피해 몰래 밖으로 나가기 위해 베란다에 이불을 묶고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난간을 넘는 순간 묶여있던 이불이 풀리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추가 골절된 사고
- 2013.10.14.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14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8급 척추 운동 장애, 노동력 상실률 50%, 과실상계 5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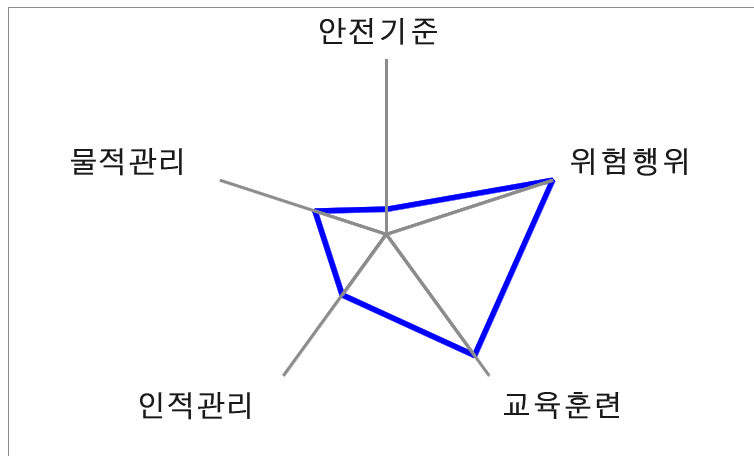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교육훈련	학생으로서 음주나 위험한 행동 금지에 대한 안전교육 부족	음주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필요
위험행위	사고 당시 교사들이 술을 수거하는 등 음주로 인하여 집중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위험한 행동이 유발한 사고	학생으로서 금지되는 음주나 위험한 행동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필요

## 45 | 보건실 이동 중 발목골절

(고등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0.10.21. 10시경 학생이 2교시 수업시간 중 몸이 안 좋아 보건실을 다녀오겠다고 허락받고 보건실에 갔으나, 보건교사가 부재중이어서 1층을 배회하다가 1층 급식실 출입계단 상부에서 반대방향으로 뛰다가 넘어져 양쪽 발목 골절상을 입은 사고
- 2012.2.10.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60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0급 다리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30%, 과실상계 5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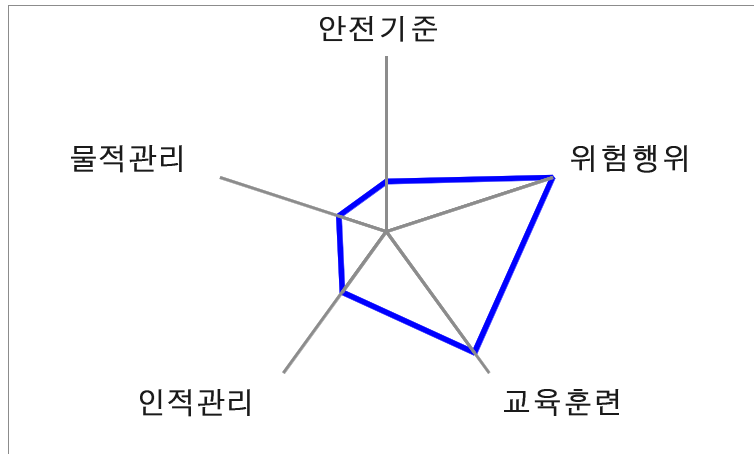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계단에 추락 위험 경고 표시 미설치	경고 표시 부착 필요
교육훈련	계단 등 추락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의 위험활동 금지 교육 부족	위험성 인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위험행위	추락 위험 인식 실패	평상시 조심토록 생활지도 강화

## 46 | 교실 앞문에 부딪혀 전방십자인대 부상

(고등학교 3학년, 여)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2.11.7. 7시 20분경 아침 일찍 등교하여 교실에서 이것저것 사물을 정리하면서 급하게 다니다가 교실 앞문에 우측 무릎을 심하게 부딪쳐 전방십자인대에 부상을 입은 사고함
- 2013.11.5.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51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2급 슬관절 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률 15%)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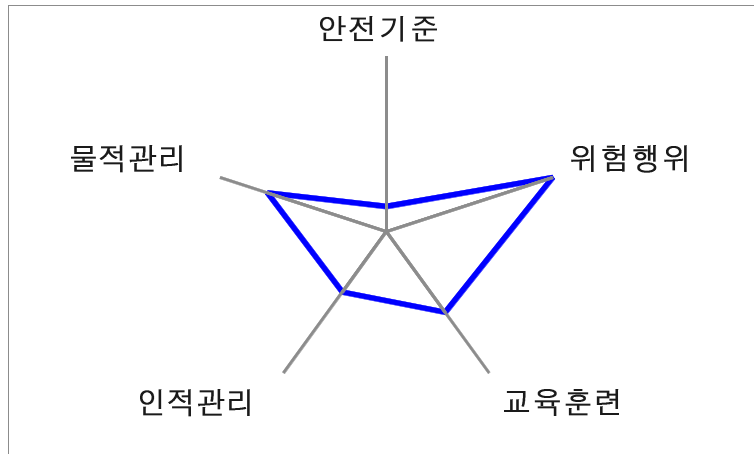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안전기준	보행 중 학교 시설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시간과 장소에 적합한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필요
교육훈련	보행 중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교육 미흡	보행 중 학교 시설물 충돌·접촉 사례를 통한 안전교육 강화
위험행위	조기 등교하여 혼자 교실에 있다가 주의력이 산만해져 발생한 사고	조기 등교하여 혼자 교실에 있는 경우 산만해지기 쉬워 조심성 있는 행동 필요

## 47 달리기를 하다 스탠드에 부딪혀 치아파절

(고등학교 3학년, 남)

### ▣ 사고경위 및 처리경과

- 2012.3.13. 8시 17분경 학생이 체육수업 중 20m 달리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속도를 적절히 줄이지 못하고 정면에 있는 계단식 스탠드에 손을 짚으면서 구강 부분을 스탠드 모서리에 부딪쳐 치아가 파절된 사고
- 2013.11.18.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14백만원 지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 14급 치아파절 장해, 노동력 상실률 5%, 과실상계 30%)



### ▣ 사고요인 및 예방 방안

구 분	사고 원인	예방 방안
물적관리	결승선 감속 여유 공간 부족 및 사고 위험 대비 완충장치 미설치	단거리 달리기 결승선 이후 감속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필요
교육훈련	단거리 달리기 과속 위험 인지 부족	단거리 달리기 과속 위험 사전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
위험행위	운동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달리기 활동으로 인한 사고	운동 장소를 고려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강화



## 학교안전 중대사고 사례 연구집

발행일 | 2017년 9월  
발행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57길 33  
우편번호 04375  
전화 02) 793-5015  
팩스 02) 793-5016  
[www.ssif.or.kr](http://www.ssif.or.kr)  
인쇄처 | 선명인쇄(주) 전화 02) 2268-4743

---